

연구보고서 2000-08

老人의 所得實態 分析과  
所得保障體系 改善方案 研究

石 才 恩  
金 泰 完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인구고령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질적, 양적으로 새로워지고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증가하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어떻게 경제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전자의 과제는 이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후자의 과제인 사회적 부양부담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연금개혁을 통한 노인 소득보장에서의 공적 역할의 축소 및 공·사 역할분담의 재구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6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전자와 후자의 과제를 모두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즉, 우리 나라는 많은 노인들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하며, 아직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금제도는 고급여-저부담의 수급-부담 불균형으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여서 적정 부담-적정급여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부담수준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특성별로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을 분석하고, 소비지출 분석을 통하여 필요 소득수준을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소비지출 분석을 기반으

로 노인의 빈곤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보장실태를 보장 범위와 수준의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소득보장 실태분석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의 적정 역할분담 방안,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방안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공적 소득보장제도별로 개선방안을 재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노인 소득실태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정책구상을 담고 있어 노인복지 및 소득보장정책 전문가 및 관련부처 담당자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과제는 우리 원의 石才恩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金泰完 주임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저자들은 원고를 읽고 귀중한 논평을 해 준 본원의 윤병식 연구위원, 강혜규 책임연구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0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鄭 敬 培

# 目次

要約	13
第1章 序論	22
第2章 老人의 所得實態와 所得源 分析	26
第1節 概念定義와 分析資料	26
第2節 先行研究 檢討	30
第3節 老人 所得源 構成의 國際比較	32
第4節 老人의 對象特性別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39
第5節 老人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決定要因	49
第6節 要約 및 示唆點	55
第3章 老人의 消費實態와 必要所得 分析	58
第1節 概念定義와 分析資料	58
第2節 先行研究 檢討	59
第3節 老人의 家計消費支出 分析	64
第4節 老人의 適正 必要所得 分析	79
第5節 要約 및 示唆點	98

第4章 老人의 貧困規模 推定 및 貧困老人의 特性 .....	100
第1節 老人의 貧困規模 推定方法 .....	100
第2節 老人의 貧困規模 分析 .....	108
第3節 貧困老人의 特性 .....	112
第5章 老人 所得保障制度의 現況과 保障實態 分析 .....	120
第1節 現行 老人 所得保障制度의 構成 .....	120
第2節 公的年金制度 .....	123
第3節 敬老年金制度 .....	141
第4節 公共扶助制度 .....	144
第5節 要約 및 示唆點 .....	148
第6章 安定的 老人 所得保障을 위한 所得保障制度 改善方案 .....	154
第1節 老人 所得保障의 政策課題 .....	154
第2節 安定的 老人 所得保障의 基本方向 .....	157
第3節 段階別 老人 所得保障 方案 .....	164
第4節 老人 所得保障制度別 改善方案 .....	177
參考文獻 .....	184
附 錄 .....	187
I. 老人의 對象特性別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	189
II. 老人의 消費支出 特性 .....	204

## 表目次

〈表 2- 1〉 老人의 所得源 類型 .....	27
〈表 2- 2〉 家口均等化指數 比較 .....	29
〈表 2- 3〉 老人 所得源 關聯 主要 先行研究 .....	31
〈表 2- 4〉 老後 生活費 調達 意識의 國際的 推移比較 .....	34
〈表 2- 5〉 老人의 主所得源 國際比較 .....	35
〈表 2- 6〉 老人의 性別 主所得源 國際比較 .....	36
〈表 2- 7〉 老人의 年齡階層別 主所得源 國際比較 .....	37
〈表 2- 8〉 老人의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	40
〈表 2- 9〉 老人의 年齡階層別 所得水準 및 所得源 構成 .....	41
〈表 2-10〉 老人의 所得階層別 所得源 構成 .....	44
〈表 2-11〉 老人의 性別 所得源 構成 .....	45
〈表 2-12〉 老人의 地域別 所得源 構成 .....	46
〈表 2-13〉 老人의 職域別 所得源 構成 .....	48
〈表 2-14〉 變數說明 및 記述統計 .....	49
〈表 2-15〉 變數間 相關關係分析 .....	50
〈表 2-16〉 老人의 所得源別 決定要因 分析 .....	52
〈表 2-17〉 老人의 私的移轉所得과 公的移轉所得의 關係 .....	54
〈表 3- 1〉 권문일의 適正所得代替率 推定(1) .....	61
〈表 3- 2〉 권문일의 所得階層別 適正所得代替率 推定(2) .....	62
〈表 3- 3〉 원종욱의 適正所得代替率 推定 .....	63
〈表 3- 4〉 老齡階層과 勤勞年齡階層間 消費支出 差異 T-test .....	65
〈表 3- 5〉 性別 消費支出 比較 .....	71

〈表 3- 6〉	地域別 消費支出 比較 .....	73
〈表 3- 7〉	變數說明 및 記述統計 .....	74
〈表 3- 8〉	變數間 相關關係分析 .....	75
〈表 3- 9〉	老人의 消費支出項目別 決定要因 分析 .....	77
〈表 3-10〉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	85
〈表 3-11〉	要約: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	87
〈表 3-12〉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	89
〈表 3-13〉	要約: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	91
〈表 3-14〉	所得效果統制下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	92
〈表 3-15〉	所得效果統制下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	94
〈表 3-16〉	年齡階層別 所得分位別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	95
〈表 3-17〉	年齡階層別 所得分位別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	97
〈表 4- 1〉	家口員 規模別 最低生計費 .....	104
〈表 4- 2〉	老人家口 比率 .....	105
〈表 4- 3〉	家口形態別 老人同居家口의 貧困率 및 빈指數 .....	109
〈表 4- 4〉	家口形態別 老人同居家口의 貧困집 規模 .....	111
〈表 4- 5〉	家口形態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	113
〈表 4- 6〉	年齡階層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	116
〈表 4- 7〉	性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	117
〈表 4- 8〉	地域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	119

〈表 5- 1〉	우리 나라 公的年金制度 .....	125
〈表 5- 2〉	國民年金의 加入者 .....	126
〈表 5- 3〉	國民年金의 給與種類別 給與支給 現況 .....	127
〈表 5- 4〉	年齡階層別, 性別 特例老齡年金 受給者 .....	128
〈表 5- 5〉	公務員年金의 年金受給者 推移 .....	129
〈表 5- 6〉	公務員年金의 年齡階層別 退職年金 受給者 .....	130
〈表 5- 7〉	私學年金의 年金受給者 推移 .....	131
〈表 5- 8〉	私學年金의 年齡階層別 退職年金 受給者 .....	131
〈表 5- 9〉	우리 나라의 公的年金制度 .....	132
〈表 5-10〉	國民年金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	133
〈表 5-11〉	國民年金의 給與額 및 給與率 .....	135
〈表 5-12〉	國民年金 老齡年金 月平均 年金支給額 現況 .....	136
〈表 5-13〉	特殊職域年金 種類와 支給要件 .....	137
〈表 5-14〉	特殊職域年金의 給與率 .....	138
〈表 5-15〉	職域年金의 給與額 및 給與率 .....	139
〈表 5-16〉	公務員年金 月平均 年金支給額 現況 .....	139
〈表 5-17〉	私學年金 月平均 年金支給額 現況 .....	140
〈表 5-18〉	우리 나라 公的年金制度의 比較 .....	140
〈表 5-19〉	都市勤勞者家口 所得·消費 對比 公的年金 水準 .....	141
〈表 5-20〉	敬老年金의 選定基準 .....	142
〈表 5-21〉	敬老年金 受給者 現況 .....	143
〈表 5-22〉	敬老年金 給與水準 및 豫算 .....	144
〈表 5-23〉	老齡階層의 生活保護對象者 現況 .....	146
〈表 5-24〉	生計保護費 給與基準 .....	147
〈表 5-25〉	生計保護對象者 1人當 保護水準과 勤勞者所得 比較 .....	148
〈表 5-26〉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受給者 現況 .....	150

〈表 5-27〉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受給水準(1999) .....	152
〈表 5-28〉	國民年金의 最低保障水準과 基礎生活保障·敬老年金의 保障水準 比較 .....	153
〈表 6- 1〉	年齡階層別·所得階層別 老人集團 類型 .....	165
〈表 6- 2〉	年齡階層別·所得階層別 老人數 및 構成比 .....	166
〈表 6- 3〉	老齡人口 및 扶養率(2001~2010) .....	167
〈表 6- 4〉	公的年金 受給者 및 受給率(2001~2010) .....	168
〈表 6- 5〉	老齡人口 및 扶養率(2011~2020) .....	171
〈表 6- 6〉	公的年金 受給者 및 受給率(2011~2020) .....	172
〈表 6- 7〉	老齡人口 및 扶養率(2021~2030) .....	174
〈表 6- 8〉	公的年金 受給者 및 受給率(2021~2030) .....	175
〈附表 1〉	老人家口의 所得水準 分布 .....	189
〈附表 2〉	老人의 經濟狀況에 대한 主觀的 認識 .....	189
〈附表 3〉	우리 나라 老人의 所得源 構成 .....	191
〈附表 4〉	우리 나라 老人의 家口類型別 所得源 構成 .....	192
〈附表 5〉	우리 나라 老人의 年齡階層別 所得源 構成 .....	193
〈附表 6〉	우리 나라 老人의 所得階層別 所得源 構成 .....	194
〈附表 7〉	우리 나라 老人의 性別 所得源 構成 .....	195
〈附表 8〉	우리 나라 老人의 地域別 所得源 構成 .....	196
〈附表 9〉	變數說明 및 記述統計 .....	198
〈附表 10〉	變數間 相關關係分析 .....	199
〈附表 11〉	老人의 所得源別 決定要因 分析 .....	201
〈附表 12〉	老人의 私的移轉所得과 公的移轉所得의 關係 .....	202
〈附表 13〉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 .....	204
〈附表 14〉	65歲 以上 老人의 所得分位別 消費支出 變化 .....	205

## 圖目次

[圖 1-1]	研究의 構成	25
[圖 2-1]	老人의 生活困難認識 國際比較(1995)	33
[圖 3-1]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1)	66
[圖 3-2]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2)	66
[圖 3-3]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3)	67
[圖 3-4]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4)	68
[圖 3-5]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1)	68
[圖 3-6]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2)	69
[圖 3-7]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3)	70
[圖 3-8]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4)	70
[圖 5-1]	現行 우리 나라 老人所得保障制度의 構成	122
[圖 5-2]	就業者 對比 公的年金 加入者 比率	149
[圖 5-3]	65歲 以上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受給者 比率	151

# 要 約

## 1. 序 論

- 우리 나라는 한편으로는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소득보장체계를 새로이 정비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공적연금의 재정비를 요구받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부담수준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대상특성별로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을 분석(제2장)
  - 소비지출 분석을 통하여 필요소득수준을 도출(제3장)
  - 소득·소비지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의 빈곤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지원 필요규모를 도출(제4장)
  - 현행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경로연금, 공공부조제도의 보장실태를 보장 범위와 수준의 측면에서 분석(제5장)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의 적정 역할분담 방안,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방안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공적 소득보장제도별로 개선방안을 재정리(제6장)

## 2. 老人의 所得實態와 所得源 分析

-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을 통계청의 1996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
- 노인의 소득수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1만 8천원이며, 그 구성은 근로소득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나타나고 있음.
  - 즉,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별 비중은 勤勞(work): 市場(market): 家族(family): 國家(state)의 역할이 4: 2.5: 2.5: 1의 비중임.
  - 이를 공·사로 이분하여 정리하여 보면, 私的으로 조달한 비중이 전체 노인소득 중 90%에 달하는 반면, 公的으로 조달한 비중은 10%로 미미한 역할에 머물고 있음.
- 소득원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역사적 비교에 의하면 주소득원이 사적이전소득인 비율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인 비율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상특성별로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 구성의 특징을 보면,
  - 연령계층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감소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중심에서 사적이전소득 중심으로의 전환이 명확
  - 소득계층별 평균소득수준은 1분위 14만 6천원~5분위 151만 6천원으로 나타나며, 약 40%에 달하는 소득 1분위 및 2분위 계층은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그 절대액과 비중이 증가하고, 사

적이전소득은 절대액 수준으로는 3계층이 가장 높지만 그 의존도는 1계층 및 2계층의 저소득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평균소득수준은 남성 81만 7천원, 여성 42만 8천원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소득수준이 약 2배 가량 높으며, 소득원 구성에서 남성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49.2%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4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평균소득수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72만 8천원, 농어촌지역의 경우 38만 7천원으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며, 소득원 구성에서는 도시지역은 근로소득이, 농어촌지역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역별로는 소득수준 및 소득원 구성보다는 근로자의 수가 자영자의 수에 비하여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이는 자영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줌.

### 3. 老人의 消費實態와 必要所得 分析

- 노인의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이며,
  - 소득항목별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등에서 현격히 감소된 소비지출을 보인 반면, 보건의료비에서는 근로계층보다 훨씬 높은 소비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근로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 인생주기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각각 所得效果, 家口規模效果, 年齡效果로 명명

-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소득의 제약 없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스런 지출변화를 감안한 노인의 필요소득이 적정필요소득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 적정필요소득을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와 가구규모효과만을 감안하여 노인의 필요소득을 산출

□ 그 결과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마이너스(-)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플러스(+ )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임을 발견

- 또한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임.

□ 이와 같이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50대 근로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은 70~80%로 나타남.

- 한편, 소득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근로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은 평균 50.8%이며, 소득계층별로는 45~100% 수준으로 나타남.

#### 4. 老人의 貧困規模 推定과 貧困老人의 特性

-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빈곤율은 9.3%이며, 노인가구는 빈곤율이 31%인 반면 자녀동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단지 4.6%로, 노인들만의 가구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빈곤율이 6.7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를 보면, 공적이전보다는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율 완화효과는 4.2%포인트에 그치는 반면,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율 완화효과는 23.1%포인트로, 공적이전의 5.5배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임.
- 1996년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貧困갭 규모는 875억원이며, 이를 2000년으로 환산할 경우 약 10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5. 老人 所得保障制度의 現況과 保障實態

- 1999년 기준 취업자 대비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59.2%로, 취업자중 공적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율이 40.8%에 이르고 있음.
  - 그 구성은 국민연금가입자가 53%인 1074만 9천명, 공무원연금 4.5%, 사학연금 1%, 군인연금 0.7%로 나타남.
- 1999년 현재 공적 노인 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23% 정도임.
  - 공적연금 수급자수는 60세 이상 노인 중 4.94%, 65세 이상 노인의 2.53%이며, 경로연금과 생활보호에 의한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각각 20.6%와 7.53%로 나타나고 있음.

- 생활보호의 生計支援額인 17만 8천원을 100으로 하여 급여액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평균연금액은 80%, 敬老年金은 11.2%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연금제도가 성숙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6~7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6. 安定的 老人 所得保障을 위한 所得保障制度 改善方案

-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세대별로 소득보장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적연금의 성숙을 주요 변수로 하여 세대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여성의 소득실태 및 소득보장 실태가 남성노인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여성 소득보장 문제는 세대별 소득보장과 달리 시간적으로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
- 자영자는 근로자와는 생애주기상 소득 필요곡선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보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
- 전세계적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노령기에도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과 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분담이 필요

-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역할분담: 우리 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삼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

이동을 하는 동시에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공적보장의 부담을 적절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즉, 1차적으로 공적보장을 통하여 노령계층에게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장수준에 있어서는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통하여 1차적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최종적인 안전망을 구성하며, 경로연금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계층을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공적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현단계에서는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도 공적연금의 성숙단계에 맞추어 변화되어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중심에서 공적연금 중심으로 전환
-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전략: 年齡階層別로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창업 등의 지원에 주력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은 공적·사적 소득원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所得階層別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경로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일반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및 사적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 性別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임의가입의 확대, 개인적 소득보장 노력에 대한 세제혜택, 기초연금의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職域別로는 자영자의 저부담-저급여를 선호하는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 연금제도로 재설계

□ 단계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

- 단기(공적연금 미성숙기): 사적부양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사적 부양의 역할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부양공제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가족부양을 지원하며, 공적부양의 핵심인 공적연금의 성숙을 준비하면서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 등의 공적부양이 사적부양을 보완
- 중기(공적연금 성숙기):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나, 후기노령계층은 여전히 사적부양에 의존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극빈층의 경우에는 공적 최종 안전망인 공공부조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져야 함.
- 장기(공적연금 완숙기): 사적부양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전체 노령계층에 대하여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으로 기능하는 시기이므로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이 완성되고, 동시에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보장과 사적연금에 의한 사적보장의 혼합이 본격화되는 시기임.

□ 노인 소득보장제도별 개선방안

- 공적연금제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차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미납자 축소,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 권을 확보 위한 임의가입 촉진
  - 공적연금의 보험료 면제 크레딧 제도의 도입: 육아 혹은 간호수발을 위하여 휴직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보험료 각출기록으로 그 기간의 1/3정도를 인정해 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급-부담구조 균형화: 균등(기초)부분 20%, 소득비례부분 20%로 총 40% 정도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 하한선 22만원을 평균소득의 1/3 수준인 4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경로연금제도
  - 경로연금에 혼합된 노령수당과 무각출연금 성격을 분리
  - 경로연금을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계속적 존치 검토
  -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 경로연금 급여수준을 특례노령연금 수준을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자체의 교통수당 예산을 재편하는 방안 검토
- 공공부조제도
  - 부양의무자 규정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포괄적 보장범위 보장
  - 추정소득의 합리적 부과로 실질적인 최저수준 생활의 보장

## 第 1 章 序 論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OECD 고위장관회의에서도 인구고령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전세계 공통의 핵심쟁점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노령인구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새로워지고 증대하는 복지욕구에 대비하여 어떻게 적절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한 측면이다. 여기에는 거동불편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의 마련과 같은 이슈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어떻게 경제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와 관련한 측면이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담가능한 연금보험료율 수준에 따른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 및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더 나아가 연금민영화 등의 연금개혁 조치들이 포함된다.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이미 전자의 과제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해결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더 이상 빈곤문제의 핵심이 노인빈곤의 문제가 아닌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선진국은 후자의 과제인 사회적 부양부담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연금개혁을 통한 노인 소득보장에서의 공적 역할의 축소 및 공·사 역할분담의 재구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인구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유례없이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전자의 과제를 마치고 후자의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고령화가 우리에게 던져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보다 신속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노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한편으로는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소득보장체계를 새로이 정비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공적연금의 재정비를 요구받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노령계층은 급변하는 가족구조 및 부양의식하에서 자녀로부터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고, 자신들 스스로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과도기적 계층이다.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이 공적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체계의 적용에서도 제외된 계층으로, 공적소득보장의 수혜율도 극히 미미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노인 소득보장체계의 재정비를 통하여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개혁은 우리의 공적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과제이다. 우리 나라는 연금은 도입역사가 짧아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수급-부담의 불균형으로 미래세대에의 과도한 부담전가가 내재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나라는 많은 노인들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하며, 아직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금제도는

고급여-저부담의 수급-부담 불균형으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여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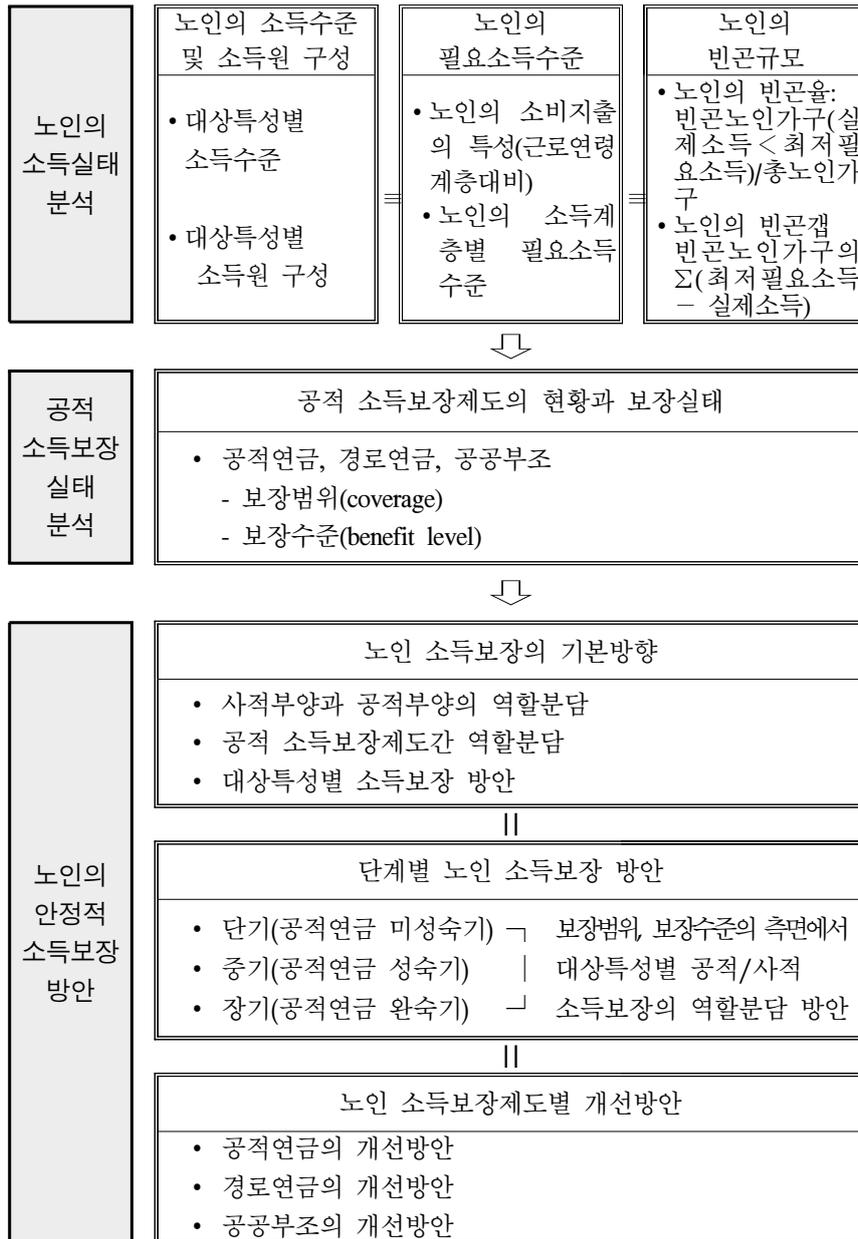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측면의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부담수준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노인의 소득보장에서의 공적 및 사적보장의 역할분담, 공적 소득보장제도간의 역할분담,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인의 소득실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 소득보장 방안 구상의 준거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상특성별로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을 분석하였다(제2장). 연령계층별·소득계층별·성별 소득원 구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대상범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득보장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영·적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재구축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코자 하였다. 또한 제3장에서는 소비지출 분석을 통하여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소득·소비지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의 빈곤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지원 필요규모를 도출하였다.

또한 제5장에서는 현행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경로연금, 공공부조제도의 보장실태를 보장 범위(coverage)와 수준(level)의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소득 및 소득보장 실태분석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의 적정 역할분담 방안,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방안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공적 소득보장제도별로 개선방안을 재정리하였다.

[圖 1-1] 研究의 構成



## 第 2 章 老人의 所得實態와 所得源 分析

### 第 1 節 概念定義와 分析資料

#### 1. 概念定義

본 장에서는 실제 노인들의 소득수준과 어떠한 성격(공적 혹은 사적)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노인소득에서 공적 및 사적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공적연금이 성숙하여 노인소득보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공적연금이 노인소득보장에 중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우리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노인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적정한 공·사 역할분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노인 소득원 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노인 소득원 구성의 변화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인 소득에 있어서의 적정한 공·사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정급여수준 등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셋째, 노인의 연령계층별, 가구형태별, 소득계층별, 성별, 지역별로 노인 소득원의 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특성 범주별로 어떤 소득대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정책기초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노인의 소득원 구성의 특수성을 살펴보았으며, 노인의 대상특성별로 실제 소득수준 및 소득원 구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공·사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公的 所得源과 私的 所得源으로 구분할 수 있다. 公的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公的移轉所得으로 구성되며, 私的 소득원은 다시 근로를 통한 勤勞所得, 저축·임대·이자소득·사적연금 등에 의한 資產所得, 그리고 자녀 등으로부터의 私的移轉所得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소득원천의 영역에 따라 재정리하면, 근로(work)를 통한 勤勞所得, 시장(market)을 통한 資產所得, 가족(family)을 통한 私的移轉所得, 혹은 국가(state)를 통한 公的移轉所得으로 노인 소득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Rainwater, Rein & Schwartz, 1986; Rein & Turner, 1999).

〈表 2-1〉 老人의 所得源 類型

소득원 유형	소득원	구성내용
근로소득	근로 (work)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시장 (market)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저축, 개인연금, 퇴직금 등
사적이전소득	가족 (family)	자녀, 친척 등 비공식 지지망으로부터의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 (state)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활보호수당 등

## 2. 分析資料

### 가. 家口消費實態調査

우리 나라의 노인 소득실태 및 소득원 분석자료는 통계청이 1996년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 전국적 조사자료 중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소득·소비조사자료로는 통계청의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가 있으나, 도시가계조사에는 1인가구, 농어촌가구, 자영업자 등의 자료가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인가구는 특히 1인 단독가구가 많고, 농어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조사에 의하여 분석할 경우 노인가구의 주요한 특성을 담고 있는 1인 가구 및 농어촌가구, 자영업자가 등이 제외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신자료는 아니지만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 자영업자 등의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1996년도 가계소비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자료로, 총조사 가구는 전국의 약 30,000가구로 원자료에 제공되는 표본수는 48,800가구이며,<sup>1)</sup> 이 중 노인가구 표본수는 3,400개 정도이다. 본 조사자료에서는 노인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소득원 파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家口均等化 指數

노인가구들에 대한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가구원수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소득과 소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원수별로 소득 및 소비가 차이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기존 외국의 연구들과 OECD의 연구들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에 대

1) 이는 조사대상완료가구인 24,400가구를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확대한 결과이다.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장현준(1984), 김진욱(1996) 등의 연구가 있으며, 하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家口均等化指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 1994년, 1999년에 산출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자료는 지출을 가지고 추정된 것이므로 동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소득과 지출에 동시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였다.

〈表 2-2〉 家口均等化指數 比較

	OECD	장현준 (1984)	김진욱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1994	1999
1인	1.000	-	-	-	-	-
2인	1.414	1.00	1.00	1.00	1.00	1.00
3인	1.732	1.31	1.18	1.33	1.53	1.37
4인	2.000	1.63	1.36	1.64	1.87	1.73
5인	2.236	1.90	1.63	1.93	2.15	1.97
6인	2.449	2.31	1.77	2.20	2.36	2.22
7인	2.646	-	-	-	-	-

資料: 박찬용 외,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W_{ij} = \frac{Y_i}{S_i^\epsilon}$$

여기서  $Y_i$ 는  $i$  가구의 所得을 나타내며,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수,  $W_{ij}$ 는  $i$  가구의 각 가구원  $j$ 의 조정된 소득 및 지출을 나타낸다.  $\epsilon$ 은 均等 彈力性(equivalence elasticity)을 나타내는데 만일  $\epsilon=0$ 이면 해당가구에 가구원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지출) 없이  $i$  가구의 전과 같은 福祉水準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epsilon=1$ 인 경우 해당가구에 가구원이 증가할 때 規模의 經濟 效果가 전혀 없이 소득이 증가한 가

구원수 만큼 산술적으로 증가되어야 전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OECD의 경우  $\varepsilon=0.5$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가구균등화 규모 탄력성을 중간 정도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 第 2 節 先行研究 檢討

노인 소득원의 공·사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미국의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1982)의 연구는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연령별, 결혼상태별, 성별, 소득수준별 변이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의 변화 추이를 추적한 연구범주이다. Rein & Turner(1999)는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를 복지국가 출현기, 국가적 지배기, 다원화기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의 가족의 역할 중심기, 국가역할 강화기, 시장역할의 강화와 역할분담의 다원화기로 특징지워지는 역사적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셋째, 국가간에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이 상이한 점에 착목한 연구범주이다. 복지국가유형별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역할분담을 다루었던 Esping-Andersen(1990)의 연구가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노인 소득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으나, Reinwater, Rein, and Schwartz(1986)는 국가간 가구의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의 공·사 역할분담의 상이성을 실증적인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表 2-3〉 老人 所得源 關聯 主要 先行研究

연구자	연구목적	변수	주요 연구결과
Cox & Jakuben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소득간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속변수: 사적이전의 양</li> <li>독립변수: 공적이전의 양</li> <li>통제변수: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 연령, 인종, 결혼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보완관계를 주장</li> <li>미국의 AFDC가 사적이전의 양에 정 영향을 주고 OASDI가 사적이전의 양에 대하여 정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대체관계를 부정</li> </ul>
손병돈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변수: 순이전제공량(자녀→부모)</li> <li>종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변수: 경제적 계층</li> <li>수혜자의 자원변수: 부모의 재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자녀에게 제공한 비물질적도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수준</li> <li>수혜자의 욕구변수: 부모의 소득,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입원여부, 부모의 연령, 부모의 가구형태, 부모의 근로활동유무, 애경사유무</li> <li>제공자의 자원변수: 자녀의 소득, 자녀의 재산</li> <li>제공자의 욕구변수: 제공자의 미혼자녀수</li> <li>통제변수: 제공자의 기혼형제수, 제공자의 장남여부, 부모에 대한 증여여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연락빈도, 부모에 대한 도움시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변수: 유의미한 영향</li> <li>부모 자원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재산변수, 증여변수(-), 교육투자변수(+)는 유의미한 영향, 자녀에 대한 부모의 비물질적 도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li> </ul> </li> <li>부모의 욕구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의소득, 입원유무, 근로활동유무, 애경사유무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 부모의 가구형태, 연령, 일상적 건강상태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li> </ul> </li> <li>통제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남여부, 부모에 대한 증여여부, 연락빈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li> </ul>
진재문	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대체 혹은 보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속변수: 사적이전액, 서비스이전시간</li> <li>독립변수: 사회보장이전의 수급유무, 사회보장이전액</li> <li>통제변수: 수혜자 소득수준, 수혜자 건강상태, 수혜자 재산수준, 수혜자의 자녀에 대한 이전, 가족의식변수, 효의 기대치 및 객관적 효, 연줄망의 크기, 부모의 연령, 부모 및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경제수준, 자녀와의 거리, 수혜자의 가구형태, 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이전 수급유무는 사적이전액에 부의 영향을 주어 양자가 대체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사적이전시간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음.</li> <li>사학연금수급자 및 생활보호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이전액이 사적이전액과 사적시간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li> <li>사회문화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사적 사회보장수급유무가 사적이전액 및 사적이전시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Shi, Leiyu	중국노인과 성인자녀간의 재정적 도움과 가정적 도움의 형태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움형태의 차이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속변수: 부모와 자녀간의 도움의 양, 재정적 도움의 양</li> <li>독립변수: 건강, 수입, 교육, 사회적지지망</li> <li>통제변수: 연령, 성, 퇴직전직업거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여성노인의 경우 재정적 도움 증가</li> </ul>

넷째,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노인의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Cox(1987), McGarry & Scheni(1995), 손병돈(1998)의 연구가 있다.

다섯째, 노인 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가 대체적인지 혹은 보완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Barro(1974)와 Becker(1974) 등 이타주의적 이전동기에 의하여 사적이전을 분석한 연구는 대체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Cox & Jakubson(1995)은 교환이론의 맥락에서 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보완관계를 주장하고 있다(진재문, 1999). 또한 진재문(1999)은 사학연금수급자와 생활보호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타주의적 대체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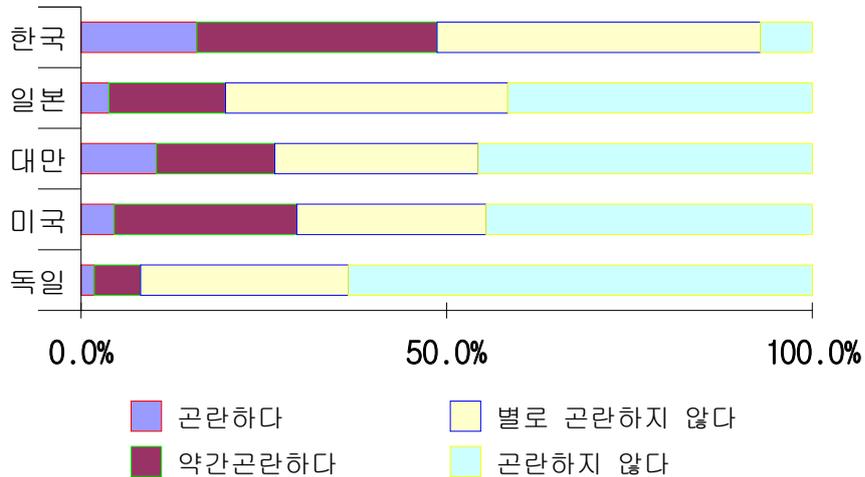
### 第 3 節 老人 所得源 構成의 國際比較

본 절에서는 외국과 우리 나라 노인 소득원 구성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노인 소득원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의 노인 소득원 구성에 대한 조사자료는 日本의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주요국의 老人生活實態를 조사한 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1995년으로, 日本, 韓國, 臺灣, 美國, 獨逸 등 5개국의 60세 이상 노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동일설문지로 조사한 결과이다.

노인의 主觀的 生活困難感에 대한 조사결과, 韓國의 경우 곤란하다 15.8%, 약간 곤란하다 32.8%로 무려 48.6%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이 곤

란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조사대상 5개국 중 한국이 가장 노후의 경제적 생활곤란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獨逸은 곤란하다 및 약간 곤란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총 8.1%에 그치고 있으며, 곤란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절반을 훨씬 넘는 63%에 이르고 있어 가장 풍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圖 2-1 참조).

[圖 2-1] 老人(60歲 以上)의 生活困難認識 國際比較(1995)



原資料: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高齡者の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1997, 中央法規. 제구성

또한 노인의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활동기에 저축 등을 통하여 스스로 노후생활에 대비하겠다는 自立型은 미국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家族依存型은 대만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社會保障依存型은 독일이 압도적으로 높은 59.3%로 나타났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1980년과 1995년

의 조사결과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각 국가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추이의 특징은 家族依存型이 감소하는 반면, 社會保障依存型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韓國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에는 노후 생활비 조달을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家族依存型이 가장 높은 49.4%를 보였으나, 1995년 조사당시에는 동비율이 28.2%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社會保障依存型이 1980년의 8.2%에서 1995년에는 29.2%로 대폭 높게 나타나고 있어 老人意識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表 2-4 참조).

〈表 2-4〉 老後 生活費 調達 意識의 國際的 推移比較(1980~1995)

소득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0	1995
자립형(근로기에 준비)	40.3	41.9	55.0	46.6	24.7	41.2	60.7	62.1	45.2	32.2
가족의존형	49.4	28.2	18.8	12.8	61.4	41.9	0.6	0.8	6.0	3.8
사회보장의존형	8.2	29.2	21.8	37.7	10.6	16.1	29.1	25.7	45.6	59.3

原資料: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高齡者の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1997, 中央法規. 재구성

한편, 실제로 노인의 主所得源의 구성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韓國과 臺灣은 자녀 등에 의한 私的移轉所得을 주소득원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56.6%,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형적인 私的移轉所得 依存型 국가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반면, 獨逸을 비롯하여 日本과 美國은 공적연금에 의한 公的所得移轉이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대답한 노인이 각각 77.6%, 57.4%,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에서 公的年金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美國의 경우, 私的年金을 주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3.3%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타 복지영역에서도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미국이 노후소득보장에서도 기업 등 市場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勤勞所得을 노후의 주소득원으로 답한 노인이 韓國, 日本, 臺灣에서는 비교적 높은 22~27%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15.5%, 독일은 훨씬 낮은 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5〉 老人(60歲 以上)의 主所得源 國際比較(1980~1995)

소득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근로소득	16.2	26.6	31.3	21.6	29.9	26.9	15.2	15.5	4.6
자산소득 소계	5.5	9.9	11.2	6.6	6.7	8.8	26.2	23.3	13.7
재산소득	3.3	4.5	5.3	2.5	3.8	4.8	14.5	8.5	2.0
예금인출	2.2	4.9	2.1	2.4	1.7	1.9	1.7	1.5	1.6
사적연금	0.0	0.5	3.8	1.7	0.2	2.1	10.0	13.3	10.1
사적이전 소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1.9
자녀지원	72.4	56.3	15.6	4.2	58.2	52.9	0.3	0.0	0.2
기타	3.2	0.3	3.1	2.4	3.4	3.6	3.5	1.6	1.7
공적이전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77.6
공적연금	0.8	2.9	34.9	57.1	2.2	7.3	53.9	55.5	77.0
생활보호	1.2	3.7	1.2	0.3	0.1	0.3	0.7	0.3	0.6

原資料: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高齡者의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查結果 報告書, 1997, 中央法規. 재구성

또한, 노인의 主所得源의 變化推移에서, 각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자녀 등에 의한 私的移轉所得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하고, 公的移轉所得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韓國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 私的移轉所得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75.6%에 달하였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56.6%로 약 2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공적연금 등 公的移轉所得을 주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6.6%로 여전히 절대비중은 낮으나

1980년의 2.0%에 비하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후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현상으로, 실제 老人의 經濟的 扶養의 책임이 家族으로부터 社會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表 2-5 참조).

性別 主所得源을 비교하면, 각국이 공통적으로 勤勞所得은 남성이, 私的移轉所得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公的移轉所得의 경우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주소득원으로 지목한 경우가 더 많았다(表 2-6 참조).

〈表 2-6〉 老人(60歲 以上)의 性別 主所得源 國際比較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근로소득		38.5	17.5	28.2	16.1	31.6	22.5	17.7	13.9	6.3	3.5
자산소득	소계	16.1	5.2	6.0	7.1	7.8	9.8	28.6	19.5	15.0	12.9
	재산소득	7.1	2.5	2.6	2.5	3.4	6.0	9.6	7.7	2.1	1.9
	예금인출	8.3	2.3	1.5	3.1	2.4	1.5	2.2	1.0	1.3	1.8
	사적연금	0.7	0.4	1.9	1.5	2.0	2.3	16.8	10.8	11.6	9.2
사적이전		40.1	68.6	1.9	6.1	45.0	60.4	0.0	0.0	0.0	0.3
공적이전	소계	4.6	8.1	54.5	59.8	12.8	2.7	50.1	59.9	74.7	79.4
	공적연금	2.5	3.2	54.3	59.3	12.6	2.3	50.1	59.4	73.9	78.9
	생활보호	2.1	4.9	0.2	0.5	0.2	0.4	0.0	0.5	0.8	0.5

原資料: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高齡者の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1997, 中央法規. 재구성

또한, 年齡階層別 主所得源을 비교해보면, 각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는 현상은 年齡이 높아질수록 주소득원으로서의 勤勞所得 비중은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자녀 등으로부터의 私的移轉所得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의 가족의존도가 낮은 독일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年齡이 높아질수록 私的移轉所得에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

이 관찰된다. 예컨대, 韓國의 경우에는 60~64세 연령층에서는 26.8%에서, 80세 이상 연령층이 되면 77.7%로 증가하고, 臺灣의 경우에도 60~64세 연령층에서는 35.1%에서 80세 이상 연령층이 되면 79.8%로 증가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그 절대적 비중은 크게 높지 않지만, 60~64세 연령층에서는 2.1%에서 80세 이상 연령층이 되면 7.2%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7〉 老人(60歲 以上)의 年齡階層別 主所得源 國際比較(1995)

국가	소득원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한국	근로소득	57.4	30.7	19.8	13.4	5.0
	자산소득 소계	10.5	8.6	11.5	7.7	10.8
	재산소득	2.6	5.3	6.9	3.7	1.7
	예금인출	6.8	2.5	4.6	3.7	9.1
	사적연금	1.1	0.8	0.0	0.5	0.0
	사적이전	26.8	51.6	63.4	68.4	77.7
	공적이전 소계	5.3	7.8	4.6	9.6	5.8
	공적연금	3.2	3.7	1.9	3.2	2.5
	생활보호	2.1	4.1	2.7	6.4	3.3
	근로소득	37.8	20.4	15.3	8.3	5.3
일본	자산소득 소계	5.6	5.8	5.9	7.0	11.2
	재산소득	2.4	2.4	1.5	3.2	3.9
	예금인출	1.9	1.7	3.4	1.9	3.9
	사적연금	1.3	1.7	1.0	1.9	3.3
	사적이전	2.1	3.4	3.9	8.3	7.2
	공적이전 소계	41.3	61.6	67.0	69.2	65.8
	공적연금	41.0	61.6	67.0	68.6	63.2
	생활보호	0.3	0.0	0.0	0.6	2.6
	근로소득	44.0	26.6	15.8	9.1	5.1
	자산소득 소계	8.9	11.4	6.9	6.3	8.1
대만	재산소득	4.3	5.7	3.7	4.5	6.1
	예금인출	2.4	1.5	2.1	1.8	1.0
	사적연금	2.2	4.2	1.1	0.0	1.0
	사적이전	35.1	47.9	68.9	72.7	79.8
	공적이전 소계	6.8	11.4	4.7	10.0	3.0
	공적연금	6.8	10.6	4.7	10.0	2.0
	생활보호	0.0	0.8	0.0	0.0	1.0

〈表 2-7〉 계속

국가	소득원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미국	근로소득	36.8	14.3	11.4	2.9	3.4
	자산소득	20.1	24.5	25.0	27.1	20.1
	재산소득	6.1	8.6	6.8	14.3	9.4
	예금인출	0.4	1.6	1.3	0.7	4.0
	사적연금	13.6	14.3	16.9	12.1	6.7
	사적이전	0.0	0.0	0.0	0.0	0.0
	공적이전	39.5	54.9	57.8	66.4	69.2
	공적연금	38.6	54.9	57.8	66.4	68.5
	생활보호	0.9	0.0	0.0	0.0	0.7
	근로소득	12.9	1.7	0.5	1.6	3.3
독일	자산소득	13.0	14.4	13.6	12.0	15.2
	재산소득	2.4	1.3	0.5	2.4	3.8
	예금인출	2.4	0.4	1.5	0.8	2.7
	사적연금	8.2	12.7	11.6	8.8	8.7
	사적이전	8.2	12.7	11.6	8.8	8.7
	공적이전	68.3	80.1	82.4	81.6	79.3
	공적연금	66.7	79.7	81.9	81.6	79.3
	생활보호	1.6	0.4	0.5	0.0	0.0

原資料: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齢社會對策室, 「高齢者の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1997, 中央法規. 재구성

또한 公的移轉所得의 경우, 公的年金 도입역사가 오래되어 연금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獨逸, 美國, 日本의 경우에는 年齡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적연금 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아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급여수준이 미미한 韓國<sup>2)</sup>이나 臺灣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연령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表 2-7 참조).

2) 우리 나라는 1999년 말 현재 60세 이상 공적 노령연금 수급자는 24.6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4.9%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수당 및 경로연금수급자는 57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17.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가족 등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 비중이 매우 높다.

## 第 4 節 老人의 對象特性別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sup>3)</sup>

### 1. 老人의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노인의 평균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1만 8천 원이며, 그 구성은 근로소득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나타나고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 소득 중 소득원별 비중은 勤勞(work): 市場(market): 家族(family): 國家(state)의 역할이 4: 2.5: 2.5: 1의 비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공·사로 이분하여 정리하여 보면, 노인 스스로 근로를 통하여, 혹은 근로시에 저축한 자산소득을 통하여, 혹은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통하여 私的으로 조달한 비중이 전체 노인소득 중 90%에 달하는 반면, 公的으로 조달한 비중은 10%로 미미한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82만 8천원으로, 그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60.7%에 이르며, 자산소득 17.8%, 사적이전소득 15.7%, 공적이전소득 5.7%이 구성을 보이고 있다. 즉, 60세 이상 노인 소득 중 소득원별 비중은 勤勞(work): 市場(market): 家族(family): 國家(state)의 역할이 6: 2: 1.5: 0.5의 비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5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99만 5천원이며, 그 중 근로소득 비중이 71.4%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위소득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12만 5천원이 전부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13만원과 사적이전소득 5만 9천원이며, 5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48만 9천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노

3) 본 절의 분석자료는 본장의 제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6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령에 접어들면서 소득원의 의존도가 근로소득 의존에서 사적이전소득 의존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表 2-8〉 老人의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1996)

(단위: 원, %)

	소득원	평균소득(mean)		중위소득(median)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55세 이상 (n= 9,450)	근로소득	710,487	71.4	489,156	100.0
	자산소득	135,102	13.6	0	0.0
	사적이전	110,577	11.1	0	0.0
	공적이전	38,503	3.9	0	0.0
	합 계	994,669	100.0	489,156	100.0
60세 이상 (n= 5,892)	근로소득	503,116	60.7	129,875	68.8
	자산소득	147,496	17.8	0	0.0
	사적이전	130,394	15.7	58,934	31.2
	공적이전	47,393	5.7	0	0.0
	합 계	828,399	100.0	188,809	100.0
65세 이상 (n= 3,396)	근로소득	234,239	37.9	0	0.0
	자산소득	165,718	26.8	0	0.0
	사적이전	169,819	27.5	125,000	100.0
	공적이전	48,268	7.8	0	0.0
	합 계	618,044	100.0	125,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2. 老人의 年齡階層別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노인의 年齡階層別 平均所得水準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계층별 평균소득수준을 보면, 55~59세 125만 4천원, 60~64세 110만원, 65~69세 78만 7천원, 70~74세 53만 5천원, 75~79세 39만 7천원, 80세 이상 42만원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中位所得의 연령계층별 변화를 보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중심에서 사적이전소득 중심으로의 전환이 명확하다.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변화를 所得源 구성의 변동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勤勞所得은 55~59세에 103만 4천원, 65~69세 36만원 수준이던 것에서 80세 이상의 경우 2만 6천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젊은 노령계층일수록 그 절대액과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私的移轉所得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그 절대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5~59세 8만원, 65~69세 14만 1천원 수준이던 것이 80세 이상 계층의 경우 26만 6천원으로 전체 소득 중 무려 6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2-9〉 老人의 年齡階層別 所得水準 및 所得源 構成(1996)

(단위: 원, %)

			55~59세 (n=3,558)	60~64세 (n=2,496)	65~69세 (n=1,440)
평균 소득	소득 액	근로소득	1,033,852	849,852	359,549
		자산소득	115,777	123,997	225,691
		사적이전	79,676	79,552	141,451
		공적이전	24,639	46,266	60,094
		합 계	1,253,944	1,099,667	786,785
	구성 비	근로소득	82.4	77.3	45.7
	자산소득	9.2	11.3	28.7	
	사적이전	6.4	7.2	18.0	
	공적이전	2.0	4.2	7.6	
	합 계	100.0	100.0	100.0	
중위 소득	소득 액	근로소득	903,820	596,848	74,167
		자산소득	0	0	0
		사적이전	0	0	83,333
		공적이전	0	0	0
		합 계	903,820	596,848	157,500
	구성 비	근로소득	100.0	100.0	47.1
	자산소득	0.0	0.0	0.0	
	사적이전	0.0	0.0	52.9	
	공적이전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表 2-9〉 계속

			70~74세 (n=1,126)	75~79세 (n=514)	80세 이상 (n=316)
평균 소득	소득액	근로소득	177,403	94,374	26,004
		자산소득	134,142	89,101	99,271
		사적이전	180,288	178,622	266,086
		공적이전	43,149	34,606	28,528
		합계	534,982	396,703	419,889
	구성비	근로소득	33.2	23.8	6.2
		자산소득	25.1	22.5	23.6
		사적이전	33.7	45.0	63.4
		공적이전	8.1	8.7	6.8
		합계	100.0	100.0	100.0
중위 소득	소득액	근로소득	0	0	0
		자산소득	0	0	0
		사적이전	150,000	150,000	127,500
		공적이전	0	0	0
		합계	150,000	150,000	127,500
	구성비	근로소득	0.0	0.0	0.0
		자산소득	0.0	0.0	0.0
		사적이전	100.0	100.0	100.0
		공적이전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또한 資産所得은 65~69세 연령계층에서 절대액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퇴직 직후에 퇴직금 및 근로시기 저축액 등으로 가장 높은 자산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가 노령기에 생활비로 소비하게 되면서 자산소득이 소진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公的移轉所得 역시 65~69세 연령계층을 정점으로 逆 U자의 커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70세 이상의 노령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 3. 老人의 所得階層別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65세 이상 노인을 所得水準別로 5분위로 구분해 보면, 1분위 계층의 경계소득은 20만 8천원, 2분위 계층은 31만 8천원, 4분위 계층은 75만 7천원, 5분위 계층은 75만 7천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999년도 1인 최저생계비가 32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40% 정도에 달하는 소득 1분위 및 2분위 계층까지는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所得階層別 平均所得水準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1분위 계층은 14만 6천원, 2분위 계층은 26만 3천원, 3분위 계층은 38만 3천원, 4분위 계층은 59만 1천원, 5분위 계층은 151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所得源 구성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勤勞所得 및 資産所得은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그 절대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저소득계층에서는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의 의존도가 매우 미미한데 비하여 4계층 및 5계층의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주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私的移轉所得은 절대액 수준으로는 3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소득원에 대한 의존도는 1계층 및 2계층의 저소득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계층에서의 사적이전소득은 18만 4천원으로 1계층의 사적이전소득 규모에 비하여 2배정도 크고, 그 비중도 전체소득계층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私的移轉所得의 비중이 2, 3계층을 정점으로 역 U자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需要의 측면에서 저소득계층일수록 외부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欲求가 높은 계층이라는 점과 供給의 측면에서 저소득계층일수록 비공식 망을 통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資源餘力 역시 제

약된다는 점이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여진다.

소득계층별로 公的移轉所得은 최저소득계층인 1계층에서 그 절대액과 비중이 높았다가, 소득계층이 높아지면서 그 수준이 저하되었다가, 다시 최고소득계층인 5계층에서 그 절대액과 비중이 높아지는 U자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저소득계층은 공공부조를 통하여 공적이전을 받으며, 최고소득계층은 공적연금을 통하여 공적이전을 받기 때문에 양극의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 2-10〉 老人(65歲 以上)의 所得階層別 所得源 構成(1996)

(단위: 원, %)

		1계층 (n=662)	2계층 (n=686)	3계층 (n=682)	4계층 (n=686)	5계층 (n=680)	
		경계소득	207,700	317,500	466,000	757,300	757,300 이상
평균 소득	소득 액	근로소득	15,190	33,649	98,148	205,627	718,606
		자산소득	9,853	31,046	52,453	145,098	517,244
		사적이전	90,926	183,916	218,542	217,113	137,918
		공적이전	30,476	14,720	13,666	23,550	142,004
		합 계	146,445	263,331	382,809	591,388	1,515,772
중위 소득	구 성 비	근로소득	10.4	12.8	25.6	34.8	47.4
		자산소득	6.7	11.8	13.7	24.5	34.1
		사적이전	62.1	69.8	57.1	36.7	9.1
		공적이전	20.8	5.6	3.6	4.0	9.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위 소득	소득 액	근로소득	0	0	0	2,000	606,236
		자산소득	0	0	0	17,680	106,995
		사적이전	99,010	208,333	216,667	141,443	0
		공적이전	3,536	0	0	0	0
		합 계	102,546	208,333	216,667	161,123	713,231
중위 소득	구 성 비	근로소득	0.0	0.0	0.0	1.2	85.0
		자산소득	0.0	0.0	0.0	11.0	15.0
		사적이전	96.6	100.0	100.0	87.8	0.0
		공적이전	3.4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4. 老人의 性別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노인의 性別 平均所得水準을 살펴보면, 남성 81만 7천원, 여성 42만 8천원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소득수준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2-11〉 老人(65歲 以上)의 性別 所得源 構成(1996)

(단위: 원, %)

		남성 (n=1,652)	여성 (n=1,744)
평 액 균	근로소득	402,016	73,866
	소 자산소득	198,467	134,414
	득 사적이전	141,416	196,970
	액 공적이전	75,076	22,643
	합 계	816,975	427,893
소 득 성 비	근로소득	49.2	17.3
	구 자산소득	24.3	31.4
	성 사적이전	17.3	46.0
	비 공적이전	9.2	5.3
	합 계	100.0	100.0
중 위 소 득 성 비	근로소득	0	0
	소 자산소득	0	0
	득 사적이전	88,402	150,000
	중 액 공적이전	0	0
	위 합 계	88,402	150,000
소 득 성 비	근로소득	0	0.0
	구 자산소득	0	0.0
	성 사적이전	100.0	100.0
	비 공적이전	0	0.0
	합 계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所得源 구성에서 비교해 보면, 男性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49.2%로 가장 높은 반면, 女性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4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조적이다. 中位所得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 모두 사적이전소득 의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사적이전소득 절대액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老人의 地域別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노인의 地域別 平均所得水準을 살펴보면, 都市地域의 경우 72만 8천원, 農漁村地域의 경우 38만 7천원으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2-12〉 老人(65歲 以上)의 地域別 所得源 構成(1996)

(단위: 원, %)

		시부 (n=2,282)	군부 (n=1,114)
평 균 액	근로소득	286,448	123,899
	소 자산소득	211,121	69,761
	득 사적이전	176,214	156,304
	액 공적이전	53,741	36,700
	합 계	727,524	386,664
소 득 성 비	근로소득	39.4	32.0
	구 자산소득	29.0	18.0
	성 사적이전	24.2	40.4
	비 공적이전	7.4	9.5
	합 계	100.0	100.0
중 위	근로소득	0	0
	소 자산소득	0	0
	득 사적이전	125,000	125,000
	액 공적이전	0	0
	합 계	125,000	125,000
소 득 성 비	근로소득	0.0	0.0
	구 자산소득	0.0	0.0
	성 사적이전	100.0	100.0
	비 공적이전	0.0	0.0
	합 계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所得源 구성을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 모두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중 각각 39.4% 및 3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私的移轉所得의 비중이 40.4%로 근로소득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位所得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6. 老人의 職域別 所得水準과 所得源 構成

노인의 職域別 平均所得水準을 살펴보면, 55~64세는 근로자가 121만 9천원, 자영자가 116만원으로 근로자가 자영자보다 약간 높으며, 65~74세에서는 근로자가 61만 9천원, 자영자가 69만 9천원으로 자영자가 오히려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75세 이상에서는 근로자가 54만 8천원, 자영자가 39만 7천원으로 다시 근로자가 높은 소득수준을 보인다.

노인의 職域別 所得源 구성을 비교해 보면, 노인이 되어서도 勤勞者로서 일하는 소수 노인의 경우 勤勞所得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데 비하여, 대다수를 차지하는 自營者의 경우 私的移轉所得과 資產所得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職域別 구성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소득수준 및 소득원 구성보다는 勤勞者의 數가 자영자의 수에 비하여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령에도 勤勞者로 일하는 경우는 오히려 특수한 사례이므로 계속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높지만, 대다수의 전직 근로자들은 퇴직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55~64세 근로자들에 비하여 65~74세 근로자들은 15%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自營者는 그 수가 55~64세와 65~74세 연령계층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表 2-13〉 老人의 職域別 所得源 構成(1996)

(단위: 원, %)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근로자	자영자	근로자	자영자	근로자	자영자	
		(n=3,246)	(n=2808)	(n=482)	(n=2,084)	(n=34)	(n=796)	
평균	소	근로소득	1,079,726	826,552	517,186	227,675	455,756	47,433
	득	자산소득	64,428	179,387	36,388	225,331	69,751	94,108
	액	사적이전	59,201	102,142	53,621	182,879	21,287	221,156
		공적이전	15,715	52,897	12,106	63,206	706	34,225
		합 계	1,219,070	1,160,978	619,301	699,091	547,500	396,922
소	구	근로소득	88.6	71.2	83.5	32.6	83.2	12.0
	성	자산소득	5.3	15.5	5.9	32.2	12.7	23.7
	비	사적이전	4.9	8.8	8.7	26.2	3.9	55.7
		공적이전	1.3	4.6	2.0	9.0	1.0	8.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위	근로소득	900,519	577,367	402,500	0	230,000	0
	소	자산소득	0	0	0	0	0	0
	득	사적이전	0	0	3,359	150,000	0	150,000
	액	공적이전	0	0	0	0	0	0
		합 계	900,519	577,367	405,859	150,000	230,000	150,000
소	구	근로소득	100.0	100.0	99.2	0.0	100.0	0.0
	성	자산소득	0.0	0.0	0.0	0.0	0.0	0.0
	비	사적이전	0.0	0.0	0.8	100.0	0.0	100.0
		공적이전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第 5 節 老人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決定要因

### 1. 變數說明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간 관계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치는 <表 2-14> 와 같다.

<表 2-14> 變數說明 및 記述統計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n=3396)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 속 변 수	총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618,045	806,986	0	21,216,407
	근로소득	근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단위: 원)	234,239	654,294	0	21,216,407
	자산소득	재산소득(단위: 원)	165,718	496,239	0	5,869,873
	사적이전소득	자녀이전소득+ 단체보조(단위: 원)	169,819	223,174	0	3,000,000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 국가보조(단위: 원)	48,268	168,688	0	2,389,910
독 립 변 수	연령	노인의 연령	71.19	4.98	65	95
	소득수준	노인소속가구의 소득수준	618,045	806,986	0	21,216,407
	지역	도시=0, 농어촌=1 더미변수	0.48	0.40	0	1
	성별	남=0 여=1 더미변수	0.51	0.47	0	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변수간 單純相關關係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원간에는 勤勞所得은 私的移轉所得 및 公的移轉所得과는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소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資產所得은 사적이전소득과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私的移轉所得은 공적이전소득과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勤勞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성, 지역과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과는 正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資產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성, 지역의 경우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과는 正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私的移轉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성은 正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지역과는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公的移轉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성의 경우에는 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15 참조).

〈表 2-15〉 變數間 相關關係分析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연령	소득 수준	성	지역
근로소득	1.000*							
자산소득	-0.009	1.000*						
사적이전소득	-0.167*	-0.136*	1.000*					
공적이전소득	-0.015	-0.023	-0.125*	1.000*				
연령	-0.186*	-0.098*	0.147*	-0.045*	1.000*			
소득수준	0.756*	0.565*	0.031	0.149*	-0.179*	1.000*		
성	-0.237*	-0.061*	0.117*	-0.147*	0.117*	-0.227*	1.000*	
지역	-0.122*	-0.152*	-0.061*	0.005	0.213*	-0.208*	0.152*	1.000*

註: \* p< 0.001, \*\*p< 0.0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2. 老人의 所得源別 決定要因 分析

노인의 總所得水準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성, 지역이 모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에 의한 총소득수준 결정의 설명력은 24.6% 정도이

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勤勞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소득, 성, 지역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勤勞所得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노인의 경우,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유의미하게 높으며, 그 역의 경우에 근로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資產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소득,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성은 유의미한 자산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資產所得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私的移轉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소득수준, 성, 지역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私的移轉所得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그 역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公的移轉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수준, 성이며, 연령, 지역변수는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公的移轉所得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16〉 老人의 所得源別 決定要因 分析

		$\beta$	SE	t	
총소득	(상수)	9.539*	0.167	57.029	$R^2 = 24.6$
	연령	-0.036*	0.002	-15.083	
	성	-0.494*	0.025	-19.988	
	지역	-0.208*	0.015	-13.815	
근로소득	(상수)	17.437*	0.446	39.057	$R^2 = 42.2$
	연령	-0.056*	0.006	-8.768	
	소득	0.0005*	0.000	17.404	
	성	-0.907*	0.058	-15.512	
자산소득	(상수)	10.391*	0.585	17.754	$R^2 = 27.2$
	연령	0.018***	0.008	2.303	
	소득	0.0008*	0.000	17.698	
	성	0.027	0.075	0.356	
사적이전소득	(상수)	10.779*	0.287	37.604	$R^2 = 2.9$
	연령	0.012*	0.004	3.207	
	소득	0.0003*	0.000	6.493	
	성	0.172*	0.042	4.099	
공적이전소득	(상수)	9.683*	0.792	12.226	$R^2 = 10.9$
	연령	0.008	0.010	0.818	
	소득	0.001*	0.000	8.995	
	성	-0.430*	0.121	-3.547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상수)	8.476*	0.928	9.136	$R^2 = 13.8$
	연령	-0.002	0.015	-0.147	
	소득	0.0005*	0.000	4.763	
	성	-0.342	0.222	-1.544	
공적이전소득 (공공부조)	(상수)	3.316*	0.688	4.819	$R^2 = 6.5$
	연령	0.026**	0.009	2.946	
	소득	-0.0007*	0.000	-5.898	
	성	0.133	0.102	1.303	
	지역	0.084	0.059	1.429	

註: \* p < 0.001, \*\* p < 0.01, \*\*\* p < 0.05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공적이전소득 중 公的年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수준이며, 나머지 연령, 성, 지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이 비교적 안정된 소득집단인 특수지역연금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계층도 비교적 1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였던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 公共扶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소득이며, 성, 지역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부조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며, 그 역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2-16 참조).

### 3. 老人의 私的移轉所得 및 公的移轉所得間 關係 分析: 代替 혹은 補完關係

노인의 私的移轉所得과 公的移轉所得간에는 代替關係가 있는지 혹은 補完關係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 공적이전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령 등 4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또한 그 역으로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변인으로,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을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여 보았을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역의 분석에 있어서도,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소득이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17 참조).

〈表 2-17〉 老人의 私的移轉所得과 公的移轉所得의 關係

		$\beta$	SE	t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n=2,564)	(상수)	10.850*	0.281	38.614	$R^2 = 0.068$
	공적이전소득	-0.000*	0.000	-10.335	
	연령	0.012*	0.004	3.201	
	소득수준	0.000*	0.000	8.371	
	성 지역	0.140* -0.104*	0.041 0.024	3.385 -4.253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n=2,564)	(상수)	10.880*	0.285	38.232	$R^2 = 0.046$
	공적연금	-0.000*	0.000	-6.760	
	연령	0.011**	0.004	2.992	
	소득수준	0.000*	0.000	3.478	
	성 지역	0.146* -0.111*	0.042 0.025	-4.477 7.704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n=2,564)	(상수)	10.574*	0.281	37.659	$R^2 = 0.073$
	공공부조	-0.000*	0.000	-10.985	
	연령	0.015*	0.004	4.064	
	소득수준	0.000*	0.000	6.765	
	성 지역	0.187* -0.099*	0.041 0.024	4.554 -4.049	
종속변수: 공적이전소득 (n=1,240)	(상수)	9.737*	0.739	13.167	$R^2 = 0.223$
	사적이전소득	-0.000*	0.000	-13.522	
	연령	0.0146	0.009	1.503	
	소득수준	0.001*	0.000	9.245	
	성 지역	-0.299** -0.009	0.114 0.065	-2.628 -0.145	

註: \* p &lt; 0.001, \*\* p &lt; 0.0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이와 같이 볼 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는 代替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이 公的所得移轉이 미미한 국가에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私的移轉所得이 주요한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노인 소득 중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 代替關係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적소득보장을 축소하면 사적이전소득을 통하여 보충될 것이므로 공적소득보장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公的役割 縮

小論의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私的移轉所得의 역할과 그 의존도가 높으므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은 그 비중이 작아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간 公的役割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私的移轉所得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되었고, 노인소득의 絶對水準이 必要所得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노인빈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第 6 節 要約 및 示唆點

본 장에서는 노인 所得源 구성에서의 公·私 役割分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 특성범주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國家別로, 歷史的으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공·사 역할분담 형태와 그 결정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適正 老齡所得保障體系를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의 노인 所得源 構成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는 공적연금의 도입역사가 짧은 관계로 노인소득보장에 있어서의 公的役割이 미약하고 家族移轉所得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後期高齡階層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는 극히 미미한 반면, 家族移轉所得에의 의존도는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성숙한 이후의 노인소득보장에서의 공·사 역할분담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女性의 家族移轉所得 의존도가 남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하여 공적소득보장체계는 경제활동참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체계의 보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歴史的으로 어떻게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의 공·사 역할분담이 변화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先進國의 노인 소득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변증법적인 3단계의 발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 단계는 가족 등 사적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私的移轉所得 중심기이며, 둘째 단계는 공적연금 중심의 公的移轉所得 중심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단계는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보다 축소되면서 사적연금 중심의 사적소득보장과의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公·私 所得保障의 協同期라고 규정할 수 있다.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개혁 움직임은 바로 셋째단계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소득보장 중심기인 둘째 단계와 공·사 소득보장 협동기인 셋째단계를 壓縮的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公的年金이 성숙하여 노인소득보장에서 공적역할을 채다지기도 전에 私的所得保障과의 役割分擔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의 所得保障體系를 再構築해야 할 것이다.

셋째, 歴史文化的으로 우리 나라는 儒敎文化圈하에서 오랜 기간동안 家族의 老人扶養을 당연시하여 왔다. 이와 같은 문화적 특수성은 노인의 소득원 중 가족이전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얼마만큼이 社會文化的 特殊性에 기인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발달사적 관점에서의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는 어렵다. 즉, 노인 소득에서 私的移轉所得의 커다란 역할비중은 우리의 유교적 ‘孝’문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여타소득원, 특히 公的移轉所得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더욱 부각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家族移轉所得에의 依存度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公的所得保障에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인 ‘孝’文化가 향후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가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 第 3 章 老人의 消費實態와 必要所得 分析

### 第 1 節 概念定義와 分析資料

#### 1. 概念定義

본 장에서는 노인이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의 소비실태 분석을 통하여 必要所得水準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노인의 적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지출에 필요한 소득이 적정 필요소득수준이라고 할 때, 적정 필요소득수준은 산출하기도 어렵고, 설사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적정 필요소득수준 개념에는 ‘적정’이라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이 들어 있고, ‘필요’라는 개념 또한 확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에서는 65세 혹은 60세 등 일정 연령이상의 계층을 ‘노령 계층’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이들 노령계층은 그 내에서 연령계층, 소득계층, 건강상태, 가구형태, 성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모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소득수준이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필요소득수준이라는 개념은 개별 학자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가능해도 실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노령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저하로 소비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득효과는

통제한 상태에서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 효과 및 생애주기상의 소비 지출 특성의 변화(예, 교육비 및 교통통신비 감소, 보건의료비 증가 등)로 인한 연령효과를 감안한 소비지출수준'으로 정의하고,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 2. 分析資料

소비실태 분석 자료는 제2장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분석과 마찬가지로 1996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OECD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第 2 節 先行研究 檢討

노인의 적정 필요소득수준은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최근에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OECD국가들에서 노인들의 평균가처분소득은 사회전체의 평균가처분소득대비 84.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OECD 국가들에서 노인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전 소득 대비 70~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하여 Disney는 여가에 따른 효용, 근로관련 효용성이란 측면에서 노인의 소득대체율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Munnell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감소 및 퇴직에 따른 생활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퇴직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퇴직전 가처분소득의 72%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사연금 제도개선실무위원회, 2000:71~72 재인용).

김용하(1997)는 적정연금급여 수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수요측면에서 수급자 본인의 종전소득, 현역근로계층의 평균적인 임금 및 급여수준, 고령자의 실제 평균적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부담과의 귀착과 장기적인 연금재정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세대의 부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로세대 부담에 의한 부과방식 급여율은 33~25%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김용하가 제시한 적정 연금급여 수준은 근로계층의 부담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노인의 '필요'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관심과는 약간 상이하다.

윤석명(1998)은 노인의 필요 소득대체율을 최저소득대체율 및 적정 소득대체율의 2가지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최저소득대체율은 한국노동연구원(1998)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적정소득대체율은 한국노총(1999)의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이용하였다.

最低所得代替率은 노동연구원의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24,790원(비소비지출제외)과 1998년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중 50~54세의 가처분소득인 2,210.7천원을 비교하여 51%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適正所得代替率은 한국노총의 3인 가구 표준생계비인 1,615.2천원과 최저소득대체율 추정시 사용된 소득인 2,210.7천원과의 비율인 73%를 적정소득대체율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윤석명의 노인 필요소득 추정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진다. 각각 노동연구원과 한국노총에서 산출한 생계비인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를 필요소득액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노인의 필요소득이라는 점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권문일(2000)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노인의 적정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4인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즉, 2인 가구를 노인의 표준가구로 보고, 4인 가구를 퇴직이전의 표준가구로 가정하여 4인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소득, 소비지출을 분석하여 소득대체율을 72.8%로 추정하였다. 이 방법 역시 노인가구의 가구원수 규모 축소효과만을 감안한 방법으로 노령계층의 특성으로 인한 소비지출 변화 효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表 3-1〉 권문일의 適正所得代替率 推定(1)

(단위: 천원, %)

구분		2인가구	4인가구	소득대체율
가구주 소득		1175.0	1652.7	71.1
가계지출	소비지출	962.9	1370.3	70.3
	비소비지출	214.5	247.0	
	합계	1177.4	1617.3	72.8

註: 공사연금제도의 정책과제, p.73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98.

두 번째는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필요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1998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가구주 소득을 5분위로 나눈 후 노인의 표준가구를 2인 가구로 가정하여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와 비소비지출 중 공적연금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고려한 후 노인들의 퇴직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은 100%의 소득대체율을, 고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은 67.8%의 소

득대체율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권문일의 노인 필요소득 추정방법 역시 노인 가구의 가구규모 축소효과만을 고려한 것으로 너무 단순한 접근으로 보여진다.

〈表 3-2〉 권문일의 所得階層別 適正所得代替率 推定(2)

(단위: 천원, %)

구분	1998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근로소득(a)	1493.2	628.1	1115.0	1388.7	1771.6	2567.6
소비지출(b)	1297.9	760.0	998.4	1203.4	1454.7	2072.3
평균가구원수	3.62	3.21	3.48	3.65	3.8	3.97
OECD균등화지수 <sup>1)</sup> (c)	2.50	2.30	2.45	2.53	2.60	2.70
노인가구소비지출 조정지수(1.7/c)(d) <sup>2)</sup>	0.68	0.74	0.69	0.67	0.65	0.63
조정소비지출(e) b*(c/1.7) <sup>2)</sup>	882.6	561.7	692.8	810.2	951.2	1304.8
조정 비소비지출(f) <sup>3)</sup>	199.1	68.7	108.4	154.2	227.9	436.0
소득대체율(% (e+f)/a	72.4	100.3	71.9	69.4	66.6	67.8

註: 1) OECD 기준 3인 및 4인가구 균등화지수 2.2와 2.7을 보간법에 의해 재구성

2) 1.7은 OECD에서 제시한 성인 1명을 1로 할 때, 노인부부가구의 균등화지수 임.

3)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공적연금보험료 제외

資料: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미발간 보고서), 2000: 73.

원종욱(2000)은 노인 필요소득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적정소득대체율을 53~71%로 추정하였다. 도출방법은 도시근로자가구중 홀벌이가구 중에서 20~59세의 4인가구 평균소득을 생애평균소득 개념으로 대체하고, 60

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 중 평균소득계층의 소비수준을 소득에 의하여 소비제약을 받지 않는 노인의 적정소비수준의 상한점으로 삼았으며, 평균소득이하계층도 포함하는 소비수준을 노인의 적정소비수준의 하한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연금의 평균급여대체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상기 2가지 접근보다는 훨씬 진보한 방법으로 판단되나, 평균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表 3-3〉 원중육의 適正所得代替率 推定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	총소득	총소비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비지출비율
20~29세	184	125	
30~39세	185	145	
40~49세	189	167	
50~59세	190	182	0.71(135/188)
60세 이상	192 (95)	135 (95)	0.53( 95/178)
전체	188 (178)	151 (145)	

註: 1) ( )안은 60세 이상 도시근로자 중 평균소득자외에 평균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포함한 경우임.

資料: 원중육,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6/7.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경우 노인들의 적정소득대체율을 추정함에 있어 사용된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퇴직전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퇴직 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적게는 50%, 높게는 75%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第 3 節 老人의 家計消費支出 分析

#### 1. 老人의 家計消費支出

##### 가. 年齡階層別 消費支出의 變化

노령계층 소비지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균등화 지수의 적용을 통하여 가구균등화를 한 상태에서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T-test를 통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는데, 총소비지출을 비롯하여 모든 소비지출항목에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소비지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 총소비지출의 경우 노령계층은 35만 7천원, 근로연령계층은 59만 9천원으로 무려 24만 2천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은 5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계층은 근로계층에 비하여 식료품 등 대부분의 소비지출항목에서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의 측면에서는 식료품비가 5만 8천원으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기타소비 4만 4천원, 교통통신 4만 3천원, 피복신발 3만 4천원, 교양오락 1만 3천원, 가구집기 1만원, 주거 8천원 순으로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율의 측면에서는 교육비가 14.8%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피복신발 36.0%, 교통통신 38.6%, 교양오락 44.4%, 가구집기 52.4%, 기타소비 63.4%, 식료품 67.8%, 주거 6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의료비와 광열수도비는 노령계층이 근로계층보다 높은 소비지출수준을 보이는 예외적 소비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비는 액수로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비율로는 근로계층에 비하여 노령계층이 24.4% 포인트가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

열수도비는 4.7% 포인트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 老齡階層과 勤勞年齡階層間 消費支出 差異 T-test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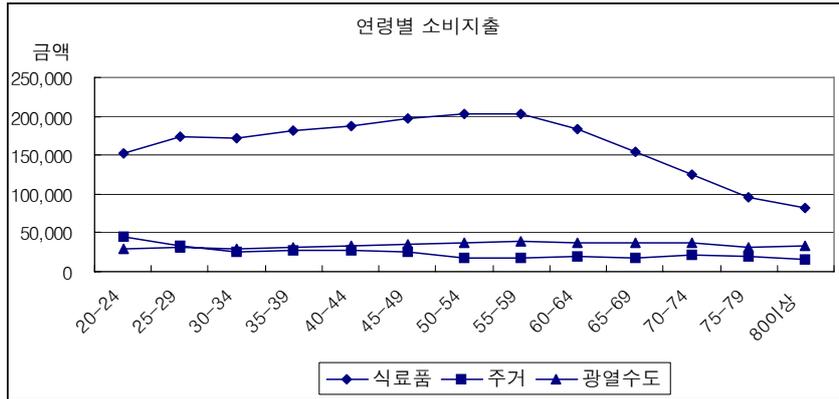
소비지출 항목	평균		두집단간 평균차 (A-B)	두집단간 평균비율 (A/B)	T-value	Prob.
	65세 이상 노령계층 (n=3,180) (A)	20~64세 근로연령계층 (n=41,254) (B)				
식료품	121,377	178,948	-57,571	67.8	-32.813	0.000
주거	17,679	25,335	-7,656	69.8	-8.117	0.000
광열수도	36,296	34,666	1,630	104.7	3.113	0.002
가구집기	11,162	21,315	-10,153	52.4	-11.879	0.000
피복신발	19,332	53,725	-34,393	36.0	-28.113	0.000
보건의료	31,021	24,938	6,083	124.4	7.332	0.000
교육	6,928	46,835	-39,907	14.8	-32.912	0.000
교양오락	10,736	24,154	-13,418	44.4	-17.173	0.000
교통통신	26,845	69,542	-42,697	38.6	-32.868	0.000
기타소비	76,002	119,926	-43,924	63.4	-21.152	0.000
총소비지출	357,383	599,389	-242,006	59.6	-46.508	0.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다음 [圖 3-1] 에서 [圖 3-4] 는 소비지출항목별로 연령계층에 따라 소비지출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sup>4)</sup> 식료품지출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4세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55~59세를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거비와 광열수도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 자료 역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원규모에 따른 소비지출 수준에의 영향을 제거하였으며, 평균값으로부터  $\pm 3\sigma(99.7\%)$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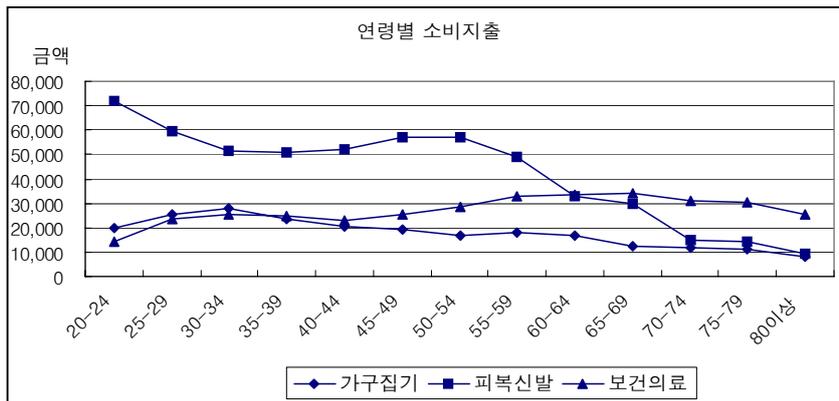
[圖 3-1]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가구집기지출은 60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복신발지출은 연령에 따라 완만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보건의료지출은 연령증가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특히 60~79세 연령대에 최고 지출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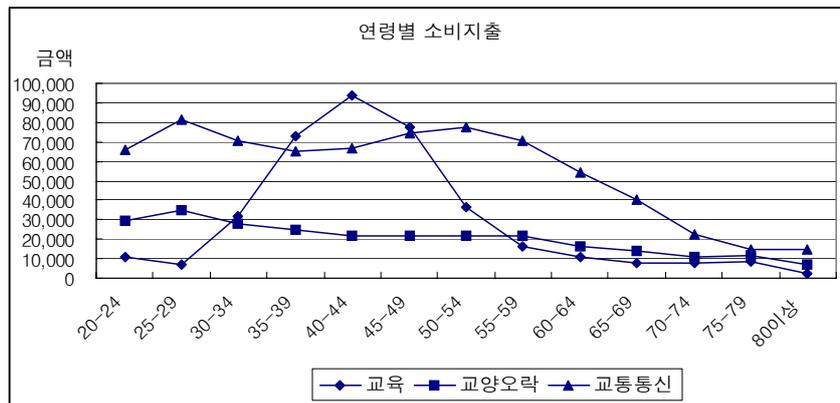
[圖 3-2]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2)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교육지출은 25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40~44세에 정점을 이룬 후에 급격히 감소하여 60세 이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양오락지출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완만히 감소하는 곡선을 보이며, 교통통신지출은 25~29세와 50~54세에 정점을 이루면서 25~59세 사이는 완만한 분지형태를 보이고, 55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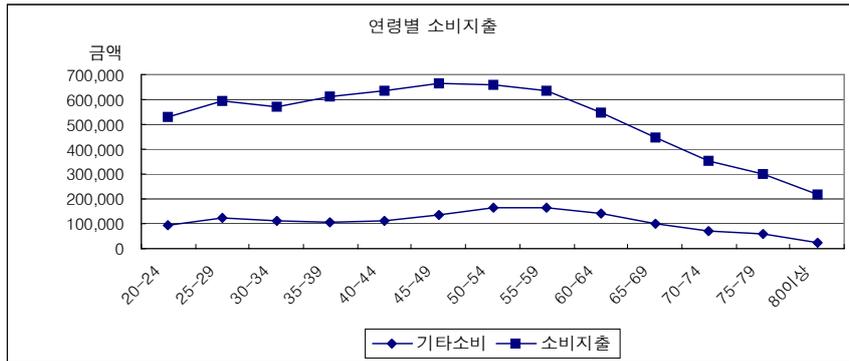
[圖 3-3]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3)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기타소비지출은 55~59세를 정점으로 연령의 증감에 따라 완만한 감소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소비지출은 40~59세를 정점으로 연령의 감소에 따라서는 완만한 감소곡선을 보이는 반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는 급격한 하향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圖 3-4]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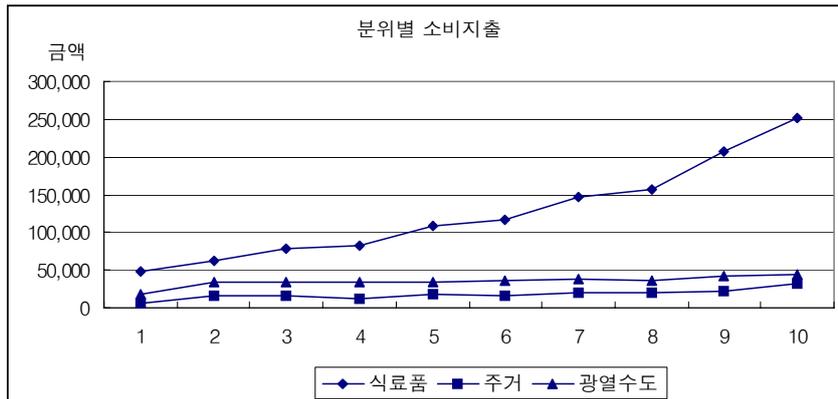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나. 老人의 所得階層別 消費支出의 變化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변화를 보면, 식료품지출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거의 정비례하여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거비와 광열수도는 소득수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계층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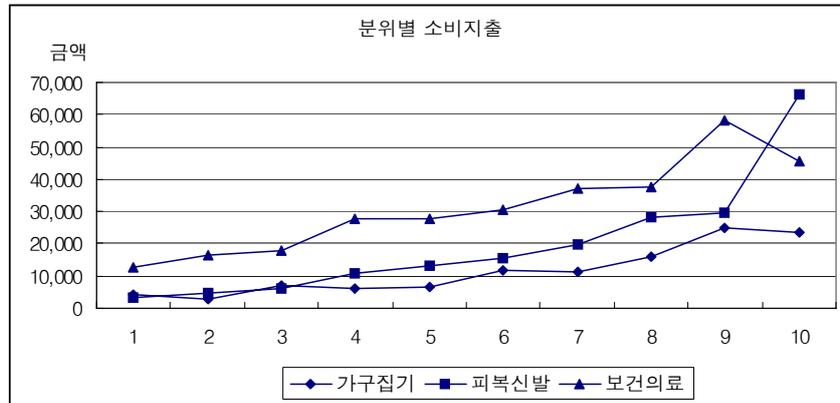
[圖 3-5]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비 지출은 대체로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인 9분위와 10분위간에는 가구집기지출의 경우 지출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나, 피복신발지출은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보건의료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圖 3-6]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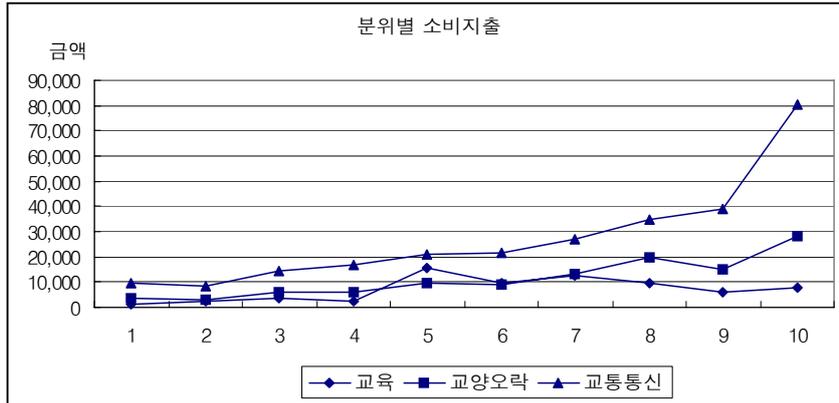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교육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교양 오락지출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교통통신지출은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그 지출수준도 비교적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圖 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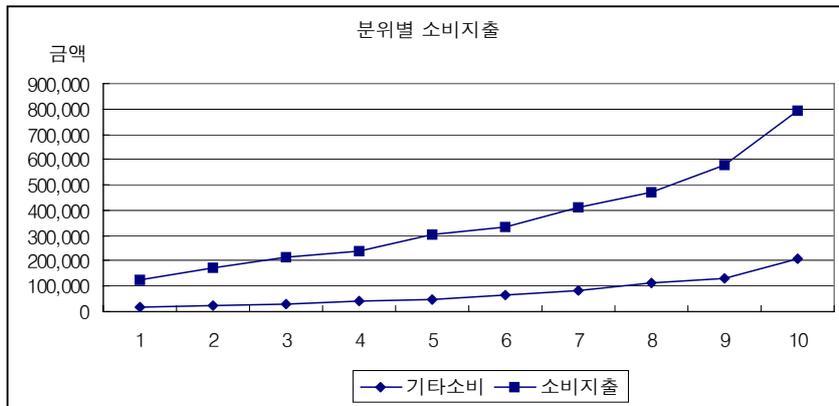
기타소비지출은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매우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며, 총소비지출은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거의 정비례하여 지출수준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圖 3-8 참조).

[圖 3-7]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3)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圖 3-8] 65歲 以上 所得階層別 消費支出 變化(4)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다. 老人의 性別 消費支出의 變化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에 대한 여성 노인의 소비지출 수준은 66.8%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하여, 근로연령계층의 남성 대비

여성의 소비지출수준은 87.4%로 나타나고 있어 노령에 따른 소비지출 제약압박이 여성 노인의 경우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 3-5〉 性別 消費支出 比較: 20~64歲 階層과 65歲 以上 階層  
(단위: 원, %)

	20~64세		B/A
	남성(A)	여성(B)	
식료품	203,031	163,432	80.5
주거	30,825	43,552	141.3
광열수도	34,665	35,579	102.6
가구집기	32,959	26,380	80.0
피복신발	63,030	75,994	120.6
보건의료	33,991	29,477	86.7
교육	62,300	32,400	52.0
교양오락	36,401	32,808	90.1
교통통신	92,048	71,214	77.4
기타소비	149,243	134,328	89.9
총소비지출	738,493	645,165	87.4
	65세 이상		B/A
	남성(A)	여성(B)	
식료품	184,957	107,557	58.2
주거	25,842	30,368	117.5
광열수도	43,960	41,479	94.4
가구집기	33,934	33,879	99.8
피복신발	34,343	19,691	57.3
보건의료	70,164	36,691	52.3
교육	5,259	9,889	188.0
교양오락	28,723	17,942	62.5
교통통신	47,613	26,284	55.2
기타소비	138,768	86,354	62.2
총소비지출	613,564	410,134	66.8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소비지출항목별로는 주거, 교육지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 소비지출의 52.3~99.8%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비(52.2%), 교통통신비(55.2%), 피복신발비(57.3%), 식료품비(58.2%), 기타소비지출(66.2%) 등은 평균소비지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라. 老人의 地域別 消費支出의 變化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별 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해 보면, 노령계층의 도시지역 노인의 소비지출에 대한 농어촌지역 소비지출수준은 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근로연령계층의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지역의 소비지출수준은 86.5%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노령에 따른 소비지출 제약압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지출항목별로는 광열수도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 소비지출의 28.9~69.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구집기비(28.9%), 교양오락비(32.6%), 교육비(34.4%), 피복신발비(35.7%), 기타소비지출(40.0%), 교통통신비(51.1%) 등은 평균소비지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表 3-6〉 地域別 消費支出 比較: 20~64歲 階層과 65歲 以上 階層  
(단위: 원, %)

	20~64세		B/A
	시부(A)	군부(B)	
식료품	200,717	162,242	80.8
주거	34,349	25,276	73.6
광열수도	33,277	45,275	136.1
가구집기	31,461	33,656	106.9
피복신발	67,437	51,897	76.9
보건의료	33,713	29,437	87.3
교육	59,811	36,480	61.0
교양오락	36,954	27,579	74.6
교통통신	90,597	72,155	79.6
기타소비	145,783	151,248	103.7
총소비지출	734,100	635,246	86.5
	65세 이상		B/A
	시부(A)	군부(B)	
식료품	168,732	96,039	56.9
주거	31,369	21,365	68.1
광열수도	42,550	42,992	101.0
가구집기	43,934	12,712	28.9
피복신발	33,842	12,078	35.7
보건의료	58,840	40,812	69.4
교육	9,660	3,326	34.4
교양오락	29,628	9,650	32.6
교통통신	43,553	22,241	51.1
기타소비	138,678	55,523	40.0
총소비지출	600,786	316,738	52.7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2. 老人의 家計消費支出 決定要因 分析

노인의 가계소비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단순통계값은 다음 〈表 3-7〉 과 같다.

〈表 3-7〉 變數說明 및 記述統計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n=3396)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 속 변 수	총소비지출	총소비지출 (단위: 원)	509,554	712,357	10,660	9,755,650
	식료품	식료품 (단위: 원)	145,384	165,369	0	2,638,119
	주거	주거 (단위: 원)	28,156	124,886	0	3,464,203
	광열수도	광열수도 (단위: 원)	42,692	55,920	0	865,880
	가구집기	가구집기 (단위: 원)	33,906	209,133	0	4,375,470
	피복신발	피복신발 (단위: 원)	26,852	71,198	0	1,235,856
	보건의료	보건의료 (단위: 원)	53,050	145,146	0	2,322,598
	교육	교육 (단위: 원)	7,626	31,474	0	404,250
	교양오락	교양오락 (단위: 원)	23,211	112,044	0	2,477,016
	교통통신	교통통신 (단위: 원)	36,708	100,295	0	5,708,297
	기타소비	기타소비 (단위: 원)	111,970	377,662	0	8,042,000
독 립 변 수	연령	노인의 연령	71.19	4.98	65	95
	소득수준	노인소속가구의 소득수준	618,045	806,986	0	21,216,407
	지역	도시=0, 농어촌=1 더미변수	0.48	0.40	0	1
	성별	남=0 여=1 더미변수	0.51	0.47	0	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변수간 單純相關關係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지출항목간에는 總消費支出 및 식료품지출은 교육을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항목과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통통신과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는 가구집기, 교통통신비와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집기비는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와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신발비는 광열수도를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항목과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는 교육과는 유의미한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식료품,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통통신, 교양오락, 기타소비와는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피복신발과는 正의 상관관계, 보건의료와는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비는 식료품, 가

구집기, 피복신발, 교통통신, 기타소비와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교통통신비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항목과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등을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항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8〉 變數間 相關關係分析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소비지출	1.000*							
식료품	0.612*	1.000*						
주거비	0.234*	0.040	1.000*					
광열수도	0.247*	0.181*	0.019	1.000*				
가구집기	0.631*	0.331*	0.061*	0.298*	1.000*			
피복신발	0.427*	0.281*	0.042*	0.005	0.232*	1.000*		
보건의료	0.295*	0.153*	0.005	0.023	0.049**	0.051**	1.000*	
교육	0.032	-0.012	-0.012	-0.033	0.011	0.040***	-0.035***	1.000*
교양오락	0.416*	0.224*	0.025	-0.002	0.241*	0.236*	0.030	0.016
교통통신	0.395*	0.234*	0.075*	0.174*	0.256*	0.176*	0.049**	0.002
기타소비	0.730*	0.252*	0.021	0.015	0.224*	0.212*	0.043**	-0.015
연령	-0.152*	-0.139*	-0.046**	0.029	0.018	-0.161*	-0.047**	-0.017
소득	0.429*	0.488*	0.078*	0.180*	0.237*	0.226*	0.198*	0.007
성	-0.135*	-0.221*	0.017	-0.021	-0.000	-0.097*	-0.109*	0.069*
지역	-0.191*	-0.218*	-0.025	-0.021	-0.076*	-0.132*	-0.063*	-0.076*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연령	소득	성	지역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1.000*							
교통통신	0.085*	1.000*						
기타소비	0.168*	0.108*	1.000*					
연령	-0.084*	-0.112*	-0.119*	1.000*				
소득	0.141*	0.363*	0.154*	-0.179*	1.000*			
성	-0.045**	-0.100*	-0.065*	0.117*	-0.227*	1.000*		
지역	-0.075*	-0.111*	-0.103*	0.213*	-0.208*	0.152*	1.000*	

註: \* p< 0.001, \*\* p< 0.01, \*\*\* p<0.05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또한 消費支出項目과 獨立變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 기타 소비의 경우 연령, 성, 지역과는 유의미한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과는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연령과는 유의미한 負의 상관관계를, 소득과는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는 소득과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가구집기는 소득과는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계를, 지역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성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지역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總消費支出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성, 지역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에 의한 총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은 35.2% 정도이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소비지출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소비지출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消費支出項目別 決定要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食料品支出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방향은 총소비지출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住居費支出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주거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光熱水道支出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家具什器支出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被服支出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의

〈表 3-9〉 老人의 消費支出項目別 決定要因 分析(n=3,396)

		$\beta$	SE	t	
총소비지출	(상수)	15.192*	0.178	85.396	$R^2 = 35.2$
	연령	-0.029*	0.002	-11.719	
	소득	0.000*	0.000	26.395	
	성	-0.351*	0.026	-13.496	
	지역	-0.181*	0.016	-11.469	
식료품	(상수)	13.970*	0.189	73.769	$R^2 = 30.5$
	연령	-0.026*	0.003	-9.947	
	소득	0.000*	0.000	20.870	
	성	-0.429*	0.028	-15.468	
	지역	-0.193*	0.017	-11.466	
주거비	(상수)	7.092*	0.0802	8.843	$R^2 = 3.9$
	연령	0.031**	0.011	2.768	
	소득	0.000***	0.000	2.041	
	성	0.611*	0.102	5.965	
	지역	0.050	0.069	0.714	
광열수도	(상수)	10.908*	0.243	44.814	$R^2 = 5.6$
	연령	-0.007***	0.003	-2.108	
	소득	0.000*	0.000	8.963	
	성	-0.212*	0.035	-5.967	
	지역	-0.070*	0.021	-3.271	
가구집기	(상수)	8.278*	0.422	19.594	$R^2 = 11.1$
	연령	0.008	0.006	1.334	
	소득	0.000*	0.000	13.537	
	성	-0.065	0.060	-1.083	
	지역	-0.282*	0.037	-7.625	
피복신발	(상수)	12.768*	0.470	27.164	$R^2 = 9.9$
	연령	-0.040*	0.007	-6.094	
	소득	0.000*	0.000	9.667	
	성	-0.244*	0.067	-3.675	
	지역	-0.066	0.041	-1.613	
보건의료	(상수)	10.759*	0.432	24.917	$R^2 = 6.1$
	연령	-0.003	0.006	-0.509	
	소득	0.000*	0.000	6.186	
	성	-0.464*	0.062	-7.459	
	지역	-0.189*	0.038	-4.952	

註: \* p <0.001, \*\* p <0.01, \*\*\* p <0.05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表 3-9〉 계속

		$\beta$	SE	t	
교육	(상수)	8.492*	1.606	5.286	$R^2 = 7.9$
	연령	-0.023	0.023	-0.984	
	소득	0.000	0.000	0.783	
	성	1.327*	0.192	6.922	
	지역	0.147	0.128	1.151	
교양오락	(상수)	10.055*	0.327	30.750	$R^2 = 11.6$
	연령	-0.020*	0.005	-4.323	
	소득	0.000*	0.000	15.927	
	성	-0.119**	0.046	-2.567	
	지역	-0.099*	0.028	-3.494	
교통통신	(상수)	13.207*	0.237	55.757	$R^2 = 30.0$
	연령	-0.041*	0.003	-12.598	
	소득	0.000*	0.000	23.391	
	성	-0.396*	0.034	-11.612	
	지역	-0.157*	0.021	-7.585	
기타소비	(상수)	15.583*	0.322	48.349	$R^2 = 26.9$
	연령	-0.055*	0.004	-12.273	
	소득	0.000*	0.000	16.373	
	성	-0.710*	0.046	-15.575	
	지역	-0.232*	0.028	-8.359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保健醫療支出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教育支出의 경우 여성 노인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教養娛樂支出, 交通通信支出, 其他消費支出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비, 광열수도,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지출 등은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10% 미만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 第 4 節 老人의 適正 必要所得 分析

### 1. 老人의 必要所得水準 產出方法

노인의 소비지출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소비지출이 근로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몇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의 소비지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령으로 인한 所得水準의 감소’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수준은 소득수준에 정비례한다는 원칙이 노령기의 수입감소로 인한 소비수준의 제약이라는 공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소비지출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扶養家口員 規模의 축소이다. 근로연령기에는 가족주기가 성장가족이므로 일반적인 가족형태가 부부+자녀, 혹은 부모+부부+자녀로 가족 규모가 비교적 크고 부양가구원수도 많다. 자연히 소비지출수준도 높다. 반면, 노령기에는 가족주기상 자녀의 결혼 등으로 노인부부 혹은 노인단독가구 등 축소가족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가족규모가 작고 부양가구원수도 작다. 따라서 소비지출수준도 근로연령계층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셋째, 노인의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人生週期上 年齡에 따른 欲求의 상이성을 들 수 있다. 즉, 노령기의 욕구 자체가 근로연령계층과 상이함에 따라 소비지출항목별로 필요지출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노인의 경우 누구나 만성질병을 한 두 가지 갖게 되고 거동불편자가 많아짐에 따라 보건의료 욕구는 높은 반면, 신체노화와 함께 필요열량이 작아지면서 식품비 지출수요는 낮아지고, 성장기 학생이 아니므로 교육비 지출수요도 대폭 감소하며, 활동반경도 좁아지면서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등의 지출수요가 낮아지는 등 노령계층의 욕구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지출수준의 변화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필요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所得, 家

口規模, 年齡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출수준에의 영향을 각각 所得效果, 家口規模效果, 年齡效果로 명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제약 없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스런 지출변화를 감안한 노인의 필요소득이 적정필요소득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소득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연령효과와 가구규모효과를 감안하여 노인의 필요소득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노인 필요소득 산출을 위한 기본적 설계는 50~59세 근로연령계층의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소비 대비 65세 이상(혹은 60세 이상) 2인 가구의 소비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설계의 의도는 50~59세가 퇴직직전 가장 소득이 높고 소비지출수준도 높은 계층이므로 이에 대비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며, 가구규모효과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구조로서 실제치에 가까운 모델로 구상하였다.

#### 가. 方法 1: 所得效果의 統制下에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이 방법은 소비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근로계층에서 노령계층으로의 연령변화 및 가구규모 축소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연령계층을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2인가구 소비지출(60~64세 노인 2인가구 소비)과 50~59세 근로연령계층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을 비교한다.

1단계: 전체연령계층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다. 노령계층이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교기준이 되는 50~59세 근로계층과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

의 소득분위를 전체연령계층의 10분위 소득계층 구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2단계: 가구규모 축소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기 10분위 중 65세 이상(60~64세) 2인 가구와 50~59세 2인 이상 가구를 추출하였다.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은 노인부부 가구를 표준가구로 보고, 50~59세 가구는 1인가구만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가구원수는 통제하지 않았다. 근로연령계층 가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많은 가구원들을 부양하고, 노인가구보다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의 지출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소비지출자료 중 정규분포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 및 50~59세 근로계층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항목별로 표준편차 크기의 3배 밖에 있는 데이터, 즉, 평균값으로부터  $\pm 3\sigma(99.7\%)$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토록 하였다.

4단계: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의 총소비지출이 1996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451,310원) 이하에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정해 주었다. 1996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51,310원은 199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의한 2000년도 국가공인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08,086원을 매년도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트하여 1996년 기준으로 전환하고(780,813원) 이를 2인 가구 균등화지수(0.578)를 곱하여 얻은 수준이다.

5단계: 50~59세 근로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100으로 볼 때 4단계에서 보정한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비율을 지출항목별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치는 동일한 소득수준하에서 연령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수준의 변화를 도출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노령계층이 소득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수준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제하고 소비지출의 연령효과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方法 II: 所得效果의 統制下에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支出水準 比較

이 방법 역시 방법 I 과 마찬가지로 소비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계층에서 노령계층으로의 연령변화에 따라 변화된 소비지출수준을 기준으로 50~59세 근로계층의 소득대비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필요소득대체율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연령계층을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소비지출(60~64세 노인 2인 가구 소비)과 50~59세 근로연령계층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다. 이 때,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근로, 사업, 부업소득), 그리고 가구의 총소득을 각각 분모로 하여 비교해 본다.

1단계에서 4단계는 방법 I 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5단계: 50~59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대비 4단계에서 보정한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의 총소비지출수준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치는 노령계층의 적절한 소비지출을 위하여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몇 %정도가 필요한지를 시사하여 준다. 예컨대 1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노령계층의 경우에도 100만원이 주어졌을 때, 실제 소비에 사용한 지출이 그 중의 70%였다면, 노령계층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70% 정도를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0% 정도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소득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 方法 III: 所得階層別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支出水準 比較

노령계층의 적정필요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연령계층

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다가 노령이 되면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는지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종적인 패널데이터가(longitudinal panel data)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조사되고 있는 가계소비지출조사는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아니므로 종적인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로연령계층에서 노령계층의 소득 및 소비변화를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적 상황에서 50~59세 연령계층과 65세 이상(60~64세)연령계층과 해당연령계층내에서 동일한 소득분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50~59세 연령계층내 1분위의 소득과 65세 이상(60~64세) 연령계층내 1분위의 소비를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즉, 50~59세 저소득층은 노령이 되어서도 저소득층으로 유지되고, 50~59세 고소득계층은 노령이 되어서도 고소득계층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50~59세와 65세를 동일한 패널인 것으로 상정하고 비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방법 I, II와 달리 전체연령계층에 걸쳐 동일한 소득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연령계층내 소득분위 구분기준을 사용하여, 각 분위별로 50~59세 근로계층의 소득과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의 소비를 비교함으로써, 노인의 필요소득대체율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소득은 방법II와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근로, 사업, 부업소득), 그리고 가구의 총소득을 각각 분모로 하여 비교해 본다.

1단계: 50~59세 근로계층 중 2인 이상 가구를 추출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하고, 마찬가지로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 중 2인 가구를 추출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한다. 이는 50~59세 근로연령계층은 근로의 퇴직전 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생애기간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이며,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은 노령에 따라 근로소득이 상실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수준이 낮아진다는 현실을 반영코자 한 것이다.

2단계에서 4단계는 방법 I 및 방법 II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5단계: 50~59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대비 4단계에서 보정한 65세 이상(60~64세) 노령계층의 총소비지출수준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적절한 소비지출을 위하여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몇 %정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근로시기에 저소득층이었던 경우에는 노령기에 근로시기 소득의 100% 이상이 필요소비를 위하여 필요하며, 근로시기에 고소득층은 근로시 소득의 50%만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식의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 2. 老人의 必要所得水準

### 가. 方法 I : 所得效果의 統制下에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동일한 소득이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소비수준을 분석하는 방법 I 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효과와 통제하에 5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의 가중평균은 95.3%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항목별로도 근로계층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은 교육비 30.1%, 교통통신비 57.8%, 피복신발비 65.7%, 기타소비지출 72.8%, 식료품비 86.1%로 현저하게 낮은 것을 제외하고,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양오락비는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수준의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비는 근로연령계층 대비 40% 포인트나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0, 3-11 참조).

〈表 3-10〉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65 歲 以上 2人 家口와 50~59歲 2人 以上 比較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경제소득(천원)	623.4	949.7	1,199.4	1,441.4	1,654.0	1,903.0
소비지출	382,143	622,601	783,355	900,995	796,431	1,421,555
식료품	142,880	221,860	222,231	360,007	228,729	376,706
주거	16,646	30,052	49,858	21,157	8,884	98,245
65세 이상 노령 계층(A)	광열수도 47,099	54,960	69,920	65,791	70,172	66,979
가구집기	10,786	15,045	36,644	47,002	18,202	6,871
피복신발	16,414	29,407	48,340	30,885	64,788	41,987
보건의료	45,517	56,118	100,785	77,091	91,832	67,481
교육	10,162	12,688	810	194	79	10,229
교양오락	10,422	26,371	21,510	26,801	38,365	73,524
교통통신	23,400	44,834	58,264	52,914	61,919	145,110
기타소비	58,817	131,267	174,994	219,153	213,461	534,424
50~59세 근로 계층(B)	소비지출 532,789	687,012	860,318	914,264	1,032,471	1,101,041
식료품	185,406	224,399	286,256	303,952	321,950	346,357
주거	18,834	31,582	31,153	22,746	33,076	26,616
광열수도	51,016	52,200	66,743	68,018	67,593	64,754
가구집기	17,266	14,900	19,495	33,174	29,906	18,938
피복신발	24,230	47,064	62,752	70,008	66,876	119,703
보건의료	38,419	38,568	52,424	46,948	48,472	50,602
교육	24,071	32,702	35,378	48,913	43,176	60,336
교양오락	13,651	15,513	26,641	20,516	39,612	29,136
교통통신	47,595	70,066	79,499	91,196	129,962	123,213
기타소비	112,301	160,019	199,979	208,793	251,848	261,388
A/B	소비지출 0.717	0.906	0.911	0.985	0.771	1.291
식료품	0.771	0.989	0.776	1.184	0.710	1.088
주거	0.884	0.952	1.600	0.930	0.269	3.691
광열수도	0.923	1.053	1.048	0.967	1.038	1.034
가구집기	0.625	1.010	1.880	1.417	0.609	0.363
피복신발	0.677	0.625	0.770	0.441	0.969	0.351
보건의료	1.185	1.455	1.923	1.642	1.895	1.334
교육	0.422	0.388	0.023	0.004	0.002	0.170
교양오락	0.763	1.700	0.807	1.306	0.969	2.523
교통통신	0.492	0.640	0.733	0.580	0.476	1.178
기타소비	0.524	0.820	0.875	1.050	0.848	2.045

〈表 3-10〉 계속

(단위: 원, %)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중평균
경제소득(천원)	2,166.4	2,532.0	3,166.5		
소비지출	904,654	1,014,170	1,164,539	1,932,021	688,913
식료품	333,663	278,655	316,420	606,539	210,656
주거	81,954	45,605	95,298	43,190	27,981
65세 이상 노령 계층(A)					
광열수도	49,844	91,745	100,187	78,483	55,808
가구집기	31,419	21,770	13,938	108,446	20,160
피복신발	34,379	77,532	99,416	100,784	30,138
보건의료	68,673	165,365	88,995	88,367	61,113
교육	570	0	444	9,381	8,307
교양오락	27,998	32,450	23,408	96,664	21,364
교통통신	41,731	92,382	79,173	228,985	44,734
기타소비	234,423	208,664	347,260	571,183	134,749
50~59세 근로 계층(B)					
소비지출	1,236,771	1,248,919	1,501,396	1,793,659	1,225,097
식료품	380,071	402,957	465,292	533,605	382,615
주거	30,758	26,380	30,250	34,030	29,452
광열수도	68,416	68,415	67,990	74,408	66,913
가구집기	34,121	29,207	35,393	51,928	32,062
피복신발	99,801	93,026	131,109	165,666	102,499
보건의료	63,564	53,237	66,860	63,532	55,296
교육	69,130	66,819	82,551	76,741	60,566
교양오락	41,707	41,898	52,387	72,363	41,572
교통통신	142,722	151,017	178,529	221,619	142,204
기타소비	306,479	315,962	391,035	499,767	311,918
A/B					
소비지출	0.731	0.812	0.776	1.077	0.953
식료품	0.878	0.692	0.680	1.137	0.861
주거	2.664	1.729	3.150	1.269	1.094
광열수도	0.729	1.341	1.474	1.055	0.986
가구집기	0.921	0.745	0.394	2.088	0.925
피복신발	0.344	0.833	0.758	0.608	0.657
보건의료	1.080	3.106	1.331	1.391	1.402
교육	0.008	0.000	0.005	0.122	0.301
교양오락	0.671	0.775	0.447	1.336	1.058
교통통신	0.292	0.612	0.443	1.033	0.578
기타소비	0.765	0.660	0.888	1.143	0.728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表 3-11〉 要約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경계소득(천원)	623.4	949.7	1,199.4	1,441.4	1,654.0	1,903.0
65세이상 소비지출	382,143	622,601	783,355	900,995	796,431	1,421,555
65세이상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509,907	655,608	799,167	918,817	804,070	1,424,897
50~59세 소비지출(B)	532,789	687,012	860,318	914,264	1,032,471	1,101,041
A/B	0.957	0.954	0.929	1.005	0.779	1.294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중평균	
경계소득	2,166.4	2,532.0	3,166.5			
65세이상 소비지출	904,654	1,014,170	1,164,539	1,932,021	628,033	
65세이상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953,865	1,020,725	1,164,539	1,932,711	688,913	
50~59세 소비지출(B)	1,236,771	1,248,919	1,501,396	1,793,659	1,225,097	
A/B	0.771	0.817	0.776	1.078	0.953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이를 통하여 연령효과에 의하여 마이너스(-)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효과에 의하여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분위별 5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은 77.1~129.4%의 분포가 일정한 방향성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소득수준을 가진 근로연령계층과 노령계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의 상이성이라는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동일한 200만원의 소득수준이라도 50~59세 근로연령계층에게는 중위

소득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노령계층에게는 고위소득계층에 속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60~64세 연령계층의 소비지출 형태도 65세 이상 연령계층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2, 3-13 참조). 소득효과의 통제하에 5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 대비 60~64세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의 가중평균은 90.8%로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비지출항목별로도 교육비 12.1%, 피복신발비 53.5%, 교통통신비 78.3%, 교양오락비 85.5%, 식료품비 86.3%로 현저하게 낮은 것을 제외하고,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지출 등은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수준의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비는 근로연령계층 대비 17.6% 포인트나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2, 3-13 참조).

60~64세 연령계층이 65세 이상 계층은 거의 비슷한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교통통신비와 기타소비지출이 20% 포인트 정도 높고, 보건의료비는 20% 포인트 정도 낮다는 점 정도이다.

〈表 3-12〉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60~64歲 2人 家口와 50~59歲 2人 以上 比較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경제소득(천원)	623.4	949.7	1,199.4	1,441.4	1,654.0	1,903.0
60~64세 노령 계층 (A)						
소비지출	401,299	616,125	688,694	788,259	809,239	1,003,773
식료품	146,654	210,443	243,196	252,008	292,906	289,830
주거	18,176	29,726	28,516	43,501	26,433	73,160
광열수도	43,406	48,888	57,034	72,453	56,306	63,968
가구집기	9,551	16,083	14,699	16,393	30,755	88,327
피복신발	10,953	30,708	31,312	36,458	57,837	26,850
보건의료	34,484	49,770	38,736	68,672	51,364	53,876
교육	8,919	3,003	896	38	2,389	922
교양오락	8,654	13,734	24,874	22,263	14,846	44,416
교통통신	35,049	57,242	61,451	74,545	77,589	85,265
기타소비	85,452	156,527	187,980	201,928	198,814	277,159
50~59세 근로 계층 (B)						
소비지출	532,789	687,012	860,318	914,264	1,032,471	1,101,041
식료품	185,406	224,399	286,256	303,952	321,950	346,357
주거	18,834	31,582	31,153	22,746	33,076	26,616
광열수도	51,016	52,200	66,743	68,018	67,593	64,754
가구집기	17,266	14,900	19,495	33,174	29,906	18,938
피복신발	24,230	47,064	62,752	70,008	66,876	119,703
보건의료	38,419	38,568	52,424	46,948	48,472	50,602
교육	24,071	32,702	35,378	48,913	43,176	60,336
교양오락	13,651	15,513	26,641	20,516	39,612	29,136
교통통신	47,595	70,066	79,499	91,196	129,962	123,213
기타소비	112,301	160,019	199,979	208,793	251,848	261,388
A/B						
소비지출	0.753	0.897	0.801	0.862	0.784	0.912
식료품	0.791	0.938	0.850	0.829	0.910	0.837
주거	0.965	0.941	0.915	1.912	0.799	2.749
광열수도	0.851	0.937	0.855	1.065	0.833	0.988
가구집기	0.553	1.079	0.754	0.494	1.028	4.664
피복신발	0.452	0.652	0.499	0.521	0.865	0.224
보건의료	0.898	1.290	0.739	1.463	1.060	1.065
교육	0.371	0.092	0.025	0.001	0.055	0.015
교양오락	0.634	0.885	0.934	1.085	0.375	1.524
교통통신	0.736	0.817	0.773	0.817	0.597	0.692
기타소비	0.761	0.978	0.940	0.967	0.789	1.06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表 3-12〉 계속

(단위: 원, %)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중평균
경제소득(천원)	2,166.4	2,532.0	3,166.5		
소비지출	1,014,046	1,658,325	1,429,708	1,412,860	792,018
식료품	353,522	378,500	418,558	425,297	246,447
주거	9,524	12,966	50,791	37,127	29,579
60~ 광열수도	76,880	55,129	59,782	58,070	54,693
64세 가구집기	26,827	55,064	40,223	53,490	22,133
노령 피복신발	56,650	37,035	51,465	96,050	34,179
계층 보건의료	121,032	90,361	96,433	104,661	56,791
(A) 교육	75	0	956	1,876	3,334
교양오락	23,587	152,232	38,973	31,946	22,144
교통통신	119,245	274,390	109,444	172,083	73,525
기타소비	226,703	602,647	563,083	432,260	208,423
소비지출	1,236,771	1,248,919	1,501,396	1,793,659	1,225,097
식료품	380,071	402,957	465,292	533,605	382,615
주거	30,758	26,380	30,250	34,030	29,452
50~ 광열수도	68,416	68,415	67,990	74,408	66,913
59세 가구집기	34,121	29,207	35,393	51,928	32,062
근로 피복신발	99,801	93,026	131,109	165,666	102,499
계층 보건의료	63,564	53,237	66,860	63,532	55,296
(B) 교육	69,130	66,819	82,551	76,741	60,566
교양오락	41,707	41,898	52,387	72,363	41,572
교통통신	142,722	151,017	178,529	221,619	142,204
기타소비	306,479	315,962	391,035	499,767	311,918
소비지출	0.820	1.328	0.952	0.788	0.908
식료품	0.930	0.939	0.900	0.797	0.863
주거	0.310	0.491	1.679	1.091	1.098
광열수도	1.124	0.806	0.879	0.780	0.906
가구집기	0.786	1.885	1.136	1.030	0.950
A/B 피복신발	0.568	0.398	0.393	0.580	0.535
보건의료	1.904	1.697	1.442	1.647	1.176
교육	0.001	0.000	0.012	0.024	0.121
교양오락	0.566	3.633	0.744	0.441	0.855
교통통신	0.835	1.817	0.613	0.776	0.783
기타소비	0.740	1.907	1.440	0.865	0.942

〈表 3-13〉 要約: 所得效果統制下 年齡效果에 의한 消費支出水準 變化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경계소득(천원)	623.4	949.7	1,199.4	1,441.4	1,654.0	1,903.0
60~64세 소비지출	401,299	616,125	688,694	788,259	809,239	1,003,773
60~64세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500,298	652,772	724,059	802,065	829,050	1,003,773
50~59세 소비지출(B)	532,789	687,012	860,318	914,264	1,032,471	1,101,041
A/B	0.939	0.950	0.842	0.877	0.803	0.912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중평균	
경계소득	2,166.4	2,532.0	3,166.5			
60~64세 소비지출	1,014,046	1,658,325	1,429,708	1,412,860	747,965	
60~64세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1,017,565	1,658,325	1,429,974	1,413,405	792,018	
50~59세 소비지출(B)	1,236,771	1,248,919	1,501,396	1,793,659	1,225,097	
A/B	0.823	1.328	0.952	0.788	0.908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나. 方法 II: 所得效果의 統制下에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  
齡階層 消費支出水準 比較

방법 I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이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소비수준을 분석하되, 비교 분모를 5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득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가중평균은 가구주소득 대비 151.1%, 가구주+배우자소득 대비 143.6%, 가구 총소득 대비 95.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근로연령계층 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근로연령계층의 경우 1분위에 소수의 무소득자 등이 포진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매우 낮는데 비하여, 노령계층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1분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가중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 연령계층내 상대적 소득계층의 차이로 인한 소비행태의 차이가 필요 소득대체율이 높게 산출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 3-14〉 所得效果統制下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65歲 以上 2人 家口와 50~59歲 2人以上 比較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경제소득(천원)	623.4	949.7	1,199.4	1,441.4	1,654.0	1,903.0
65세이상 소비지출	382,143	622,601	783,355	900,995	796,431	1,421,555
65세이상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509,907	655,608	799,167	918,817	804,070	1,424,897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262,767	541,903	680,443	858,006	1,044,042	1,021,946
가구주및배우자소득(C)	270,039	577,012	747,791	968,238	1,205,038	1,184,201
가구총소득(D)	425,024	779,107	1,075,570	1,308,930	1,545,690	1,768,140
A/B	1.941	1.210	1.174	1.071	0.770	1.394
A/C	1.888	1.136	1.069	0.949	0.667	1.203
A/D	1.200	0.841	0.743	0.702	0.520	0.806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중평균	
65세이상 소비지출	904,654	1,014,170	1,164,539	1,932,021	628,033	
65세이상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953,865	1,020,725	1,164,539	1,932,711	688,913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1,189,787	1,384,645	1,662,522	2,512,942	1,345,953	
가구주및배우자소득(C)	1,381,867	1,591,517	1,885,279	2,886,673	1,536,622	
가구총소득(D)	2,034,290	2,341,810	2,839,480	4,410,490	2,269,220	
A/B	0.802	0.737	0.700	0.769	1.511	
A/C	0.690	0.641	0.618	0.670	1.436	
A/D	0.469	0.436	0.410	0.438	0.957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소득분위별로 보면, 6분위를 제외하면 대체로 저소득분위에서 필요

소득대체율이 높고, 고소득분위에서 소득대체율이 낮게 나타나는 식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근로연령계층의 가구주 소득만을 분모로 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경우 194.1~70.0%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배우자 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88.8~61.8%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20.0~41.0%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교 분모를 5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득으로 하여 60~64세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도 65세 이상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중평균을 산출한 결과 가구주소득 대비 122.5%, 가구주+배우자소득 대비 114.1%, 가구 총소득대비 78.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근로연령계층 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근로연령계층의 경우 1분위에 소수의 무소득자 등이 포진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데 비하여, 노령계층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1분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가중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8분위를 제외하면 대체로 저소득분위에서 필요 소득대체율이 높고, 고소득분위에서 소득대체율이 낮게 나타나는 식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근로연령계층의 가구주 소득만을 분모로 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경우 190.4~56.2%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배우자 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85.3~49.0%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17.7~32.0%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 3-15〉 所得效果統制下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60~64歲 2人 家口와 50~59歲 2人 以上 比較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경제소득(천원)	623.4	949.7	1,199.4	1,441.4	1,654.0	1,903.0
60~64세 소비지출	401,299	616,125	688,694	788,259	809,239	1,003,773
60~64세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500,298	652,772	724,059	802,065	829,050	1,003,773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262,767	541,903	680,443	858,006	1,044,042	1,021,946
가구주및배우자소득(C)	270,039	577,012	747,791	968,238	1,205,038	1,184,201
가구총소득(D)	425,024	779,107	1,075,570	1,308,930	1,545,690	1,768,140
A/B	1.904	1.205	1.064	0.935	0.794	0.982
A/C	1.853	1.131	0.968	0.828	0.688	0.848
A/D	1.177	0.838	0.673	0.613	0.536	0.568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중평균	
경제소득	2,166.4	2,532.0	3,166.5			
60~64세 소비지출	1,014,046	1,658,325	1,429,708	1,412,860	747,965	
60~64세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1,017,565	1,658,325	1,429,974	1,413,405	792,018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1,189,787	1,384,645	1,662,522	2,512,942	1,345,953	
가구주및배우자소득(C)	1,381,867	1,591,517	1,885,279	2,886,673	1,536,622	
가구총소득(D)	2,034,290	2,341,810	2,839,480	4,410,490	2,269,220	
A/B	0.855	1.198	0.860	0.562	1.225	
A/C	0.736	1.042	0.758	0.490	1.141	
A/D	0.500	0.708	0.504	0.320	0.78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다. 方法 III: 所得階層別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支出水準 比較

방법 I, II와 달리 연령계층별 상대적 소득분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50~59세와 소득 대비 65세 이상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구주 소득대비 50.8%, 가구주+배우자 소득 대비 44.5%, 가구총소득 대비 30.1%의 필요 소득대체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6〉 年齡階層別 所得分位別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65歲 以上 2人 家口와 50~59歲 2人 以上 比較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65세이상분위별 경계소득(천원)	272.2	350	441.7	525	634.2	757.2
65세 이상 소비지출	256,275	293,264	383,470	493,222	501,437	557,519
65세 이상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486,532	459,464	496,156	557,325	556,563	601,136
50~59세분위별 경계소득(천원)	674.6	1014.5	1316.5	1614.5	1925	2197.8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288,546	579,924	778,524	996,486	1,029,435	1,196,513
가구주맞배우자소득(C)	300,695	617,745	870,228	1,138,841	1,192,024	1,401,461
가구총소득(D)	470,263	840,508	1,187,760	1,473,640	1,754,750	2,053,690
A/B	1.686	0.792	0.637	0.559	0.541	0.502
A/C	1.618	0.744	0.57	0.489	0.467	0.429
A/D	1.035	0.547	0.418	0.378	0.317	0.293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65세이상분위별 경계소득(천원)	922.4	1150	1533.7			
65세 이상 소비지출	722,632	758,199	858,072	1,405,021	628,033	
65세 이상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743,324	774,019	873,399	1,414,433	700,127	
50~59세분위별 경계소득(천원)	2571.7	3010	3750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1,408,527	1,615,888	1,941,282	2,852,821	1,378,801	
가구주맞배우자소득(C)	1,614,306	1,850,889	2,172,371	3,297,960	1,574,573	
가구총소득(D)	2,378,260	2,797,930	3,330,510	5,033,990	2,328,950	
A/B	0.528	0.479	0.45	0.496	0.508	
A/C	0.46	0.418	0.402	0.429	0.445	
A/D	0.313	0.277	0.262	0.281	0.301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분위에서 소득대체율이 높고 고소득분위에서 소득대체율이 낮은 식으로 대체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계층의 가구주 소득만을 분모로 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경우 168.6~45.0%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배우자 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61.8~40.2%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03.5~26.2%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교 분모를 5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득으로 하여 60~64세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도 65세 이상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평균 가구주소득 대비 57.1%, 가구주+배우자소득 대비 50.0%, 가구 총소득대비 33.8%로 나타났다(表 3-17 참조).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분위에서 필요 소득대체율이 높고, 고소득분위에서 소득대체율이 낮게 나타나는 식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근로연령계층의 가구주 소득만을 분모로 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경우 166.4~49.0%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배우자 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59.6~42.4%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을 분모로 한 경우에는 102.1~27.8%의 소득대체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 3-17〉 年齡階層別 所得分位別 勤勞階層 所得水準 對比 老齡階層 消費水準: 60~64歲 2人 家口와 50~59歲 2人 以上 比較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60~64세 분위별 경계소득(천원)	420	595.5	683.4	825	975	1100
60~64세 소비지출	350,909	437,837	549,116	653,304	589,901	709,716
60~64세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479,998	514,576	603,331	685,192	624,681	735,362
50~59세 분위별 경계소득(천원)	674.6	1014.5	1316.5	1614.5	1925	2197.8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288,546	579,924	778,524	996,486	1,029,435	1,196,513
가구주및배우자소득(C)	300,695	617,745	870,228	1,138,841	1,192,024	1,401,461
가구총소득(D)	470,263	840,508	1,187,760	1,473,640	1,754,750	2,053,690
A/B	1.664	0.887	0.775	0.688	0.607	0.615
A/C	1.596	0.833	0.693	0.602	0.524	0.525
A/D	1.021	0.612	0.508	0.465	0.356	0.358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60~64세 분위별 경계소득(천원)	1300	1787.5	2844.7			
60~64세 소비지출	765,996	841,412	1,259,917	1,396,765	747,965	
60~64세 소비지출 최저생계수준 보정(A)	797,655	852,830	1,261,455	1,397,236	787,426	
50~59세 분위별 계소득(천원)	2571.7	3010	3750			
50~59세 소득수준						
가구주 근로소득(B)	1,408,527	1,615,888	1,941,282	2,852,821	1,378,801	
가구주및배우자소득(C)	1,614,306	1,850,889	2,172,371	3,297,960	1,574,573	
가구총소득(D)	2,378,260	2,797,930	3,330,510	5,033,990	2,328,950	
A/B	0.566	0.528	0.65	0.49	0.571	
A/C	0.494	0.461	0.581	0.424	0.500	
A/D	0.335	0.305	0.379	0.278	0.338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第 5 節 要約 및 示唆點

본 장에서는 노인의 소비실태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필요소득수준 도출을 시도한 몇 안 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노인이라는 인생주기상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한 소비수준의 변화를 감안한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노인의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이며, 소득항목별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등에서 현격히 감소된 소비지출을 보인 반면, 보건의료비에서는 근로계층보다 훨씬 높은 소비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근로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 인생주기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각각 所得效果, 家口規模效果, 年齡效果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소득의 제약 없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스런 지출변화를 감안한 노인의 필요소득이 적정필요소득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적정필요소득을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와 가구규모효과만을 감안하여 노인의 필요소득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마이너스(-)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50대 근로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은 70~80%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근로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은 1분위를 제외하면 5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 시도한 노인의 필요소득수준 도출은 기존의 방법과 차별되게 보다 체계적으로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장의 모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적정’이라는 개념과 ‘필요’라는 개념이 모두 객관화하기 어려운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도한 방법에 의한 추정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또 하나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그 결과치로서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소득분위별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다는 것을 추출하였다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第 4 章 老人의 貧困規模 推定 및 貧困老人의 特性

### 第 1 節 老人의 貧困規模 推定方法

#### 1. 貧困規模 推定方法<sup>5)</sup>

한 국가의 가구(혹은 개인)의 빈곤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빈곤율, 빈곤갭, 센지수 등의 방법이 있다. 여기서 貧困率은 한 국가의 빈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혹은 빈곤층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數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R(x, \pi) = \frac{q}{n} \dots\dots\dots(4-1)$$

(PR : 貧困率, q : 빈곤선 이하의 소득(또는 지출)을 올리는 가구 수, n : 전체 가구수, x : 가구소득,  $\pi$ : 빈곤선 )

貧困率의 의미는 주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내지 지출)을 올리는 가구(또는 개인)가 전체 가구(또는 개인)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빈곤의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빈곤율이 빈곤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면 또 다른 빈곤측정방법으로서 빈곤갭은 빈곤의 深度내지 深刻性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국가가 빈곤가구(혹은 개인)에 지원해 주어야 할 수준을 측정할 수 있

---

5) 본 절에 나오는 수식의 자세한 설명은 박찬용 외,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을 참조.

는 방법이다.

$$PG = \sum_{i=1}^q (\pi - x_i) \dots\dots\dots(4-2)$$

(PG : 貧困갭,  $\pi$  : 빈곤선,  $x_i$  : i 가구의 가구소득)

貧困갭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또는 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내지 개인)를 빈곤선내지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豫算支援水準을 파악할 수 있는 빈곤측정 방법이다.

센지수(Sen Index)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센교수가 1976년에 고안한 빈곤측정 방법으로 貧困率과 貧困갭이 각각 빈곤의 규모 혹은 심도의 한가지만을 측정한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고안한 빈곤측정 방법이다. 즉, Sen指數는 빈곤율, 빈곤갭 그리고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빈곤측정 방법이다.

$$S = PR [ PGR + (1 - PGR) G_i ] \dots\dots\dots(4-3)$$

( S : Sen指數, PR : 빈곤율, PGR : 빈곤갭 비율<sup>6)</sup>,  $G_i$  : 지니계수)

센지수는 한 국가의 가구(혹은 개인)의 所得 및 支出水準이 빈곤선 이상인 경우 빈곤자가 전혀 없는 상태인 빈곤율이 '0'이 되어 센지수도 역시 '0'이 된다. 반면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로서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전국민이 빈곤한 상태인 빈곤율이 '1'이 되는 경우

6) 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貧困線을 곱한 액수로 나눈 것이 빈곤갭 比率(Poverty Gap Ratio)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GR = \frac{\sum_{i=1}^q (\pi - x_i)}{\pi q} \quad (\pi: \text{빈곤선}, q: \text{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수})$$

센지수도 역시 '1'이 된다. 즉, '1'에 가까울수록 한 국가의 빈곤규모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老人家口의 貧困規模 推定方法

### 가. 老人家口의 貧困規模 推定을 위한 一般事項

老人同居家口에 대한 빈곤율 및 빈곤갭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2가지 방향에서 추정을 해 보았다. 첫째, 추정을 위한 대상가구를 분류함에 있어 먼저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후 이들의 빈곤율 및 빈곤갭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65세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중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子女同居老人家口에 대한 빈곤율 및 빈곤갭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방법의 슘을 통해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빈곤율, 빈곤갭 및 센지수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는 노인가구를 기준으로 실제적인 老人家口의 소득수준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소한의 필요소득수준인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빈곤노인의 규모와 심각성을 貧困率과 貧困갭(poverty gap)을 이용해 추정해 보았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첫 번째로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은 個人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貧困갭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우선 빈곤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정에 있어 가구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貧困率을 추정한 후, 이들에 대한 정책을 입안시 개인을 기준으로 한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빈곤갭에 있어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직접적인 정부의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수준

의 파악에 目的이 있다. 두 번째로 가구형태에 있어 노인단독가구인 경우에는 개인을 기준으로 빈곤갭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단독가구보다는 家族을 중심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여러 가구원이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구원들의 所得과 支出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갭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가 개인을 중심으로 된 자료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가구로 환산하여 가구의 빈곤갭을 계산하였다.

두 번째로 貧困率이나 貧困갭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득을 이용하는 것과 지출을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출보다는 所得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빈곤갭을 측정하였다. 지출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율과 빈곤갭을 추정한 이유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最低生計費가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 수급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혹은 OECD국가들 역시 빈곤을 측정하는 데 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빈곤갭을 측정하였다(김미곤 외, 1999).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일반가구의 총소득, 총소득에서 공적·사적 이전소득을 모두 제외한 소득, 그리고 총소득에서 각각 私的移轉과 公的移轉을 제한 경우로 나누어 빈곤율과 빈곤갭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소득을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老人家口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 수준과 개인들에 의한 사적이전수준에 의한 노인가구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나. 貧困率 推定方法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빈곤선의 설정을 통해 빈곤선 이하의 가구와 전체가구수의 비교를 통해

빈곤율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貧困線은 우리 나라에서 매년 발표되는 最低生計費를 이용하였다. 2000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1996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1996년의 最低生計費를 추정한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앞 절의 분석에서 이용한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동 최저생계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9년 추정된 후,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최저생계비로 발표한 정부공식자료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96년의 貧困線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있어서는 2000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9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각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1999년에 추정된 家口均等化指數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위와 같이 구한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1996년의 노인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빈곤율을 추정하였다.<sup>7)</sup>

〈表 4-1〉 家口員 規模別 最低生計費(1996)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272,504	451,310	620,746	780,813	887,784	1,001,783	1,113,439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	1.137	1.283	1.426

資料: 김미곤 외, 『1999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다. 貧困갭 推定方法

노인가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빈곤갭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7) 본 연구의 노인 소득 및 소비실태분석에서는 가구규모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으나, 빈곤율 및 빈곤갭을 계산하기 위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때에는 우리 나라의 공식적 빈곤선 산출방식인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 따른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1996년 「家口消費實態調査」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노인가구를 노인단독가구(1인 가구), 노인부부가구(2인 가구), 노인기타가구(3인 이상 가구)로 분리한 후, 이들 가구들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및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 가구원수별 비율은 <表 4-2> 와 같다. 그리고 65세 이상 가구의 平均家口員數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1996년 노인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統計廳의 1996년 우리 나라 추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파악한 후, 이들을 평균가구원수(=1.85명)로 나누어 1996년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수(=약 150만가구)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노인가구수에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해 구한 가구원수별 비율을 이용, 각 가구원수에 해당되는 老人家口數를 추정하였다(表 4-2참조).

<表 4-2> 老人家口<sup>1)</sup> 比率

(단위: %,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가구비율	44.6	37.9	11.4	3.6	1.9	0.4	0.2
가구수	669,136	568,616	171,035	54,011	28,506	6,001	3,001

註: 1)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85명임.

두 번째는 貧困率에서 이용한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1996년 「가구 소비실태조사」의 노인가구 중 빈곤선 이하 노인가구수 및 개별가구들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貧困線을 이용하여 추정된 빈곤선 이하 가구들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구하였다. 이 폭이 個別家口들의 貧困갭을 의미하며 정부가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하는 수준이다. 이를 式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G_i = PL - HI_i \dots\dots\dots (4-4)$$

(PG<sub>i</sub> = i 가구의 빈곤갭, PL= 빈곤선, HI<sub>i</sub> = 빈곤선 이하 가구 i의 소득)

다음 단계로 빈곤선 이하 각 소득수준에서의 家口數(=NHI<sub>i</sub>)와 「가구 소비실태조사」에서 추정된 65세 이상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TH<sub>n</sub>)를 이용하여, 이들 가구들이 우리 나라 전체 貧困老人家口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추정하였다.

$$RPL_i = \frac{NHI_i}{TH_n} \dots\dots\dots (4-5)$$

(RPL<sub>i</sub> = 빈곤선 이하 i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가구비율,  
NHI<sub>i</sub> = i 소득수준에서의 빈곤선 이하 가구수, TH<sub>n</sub> = 가구소비 실태조사상의 n 가구원수의 총가구수)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빈곤갭은 위에서 구한 家口比率(RPL<sub>i</sub>)과 각 가구원수별 노인가구수(FH<sub>n</sub>) 및 개별가구의 빈곤갭(PG<sub>i</sub>)을 곱하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貧困갭을 추정하였다.

$$TPG = \sum_{i=1} (FH_n \times RPL_i \times PG_i) \dots\dots\dots (4-6)$$

( TPG = 빈곤갭, FH<sub>n</sub> = 1996년도 n 가구원수의 노인가구수  
PG<sub>i</sub> = i가구의 빈곤갭)

자녀가 부양하는 가구들의 貧困갭은 앞의 노인가구의 빈곤갭 추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앞의 가정들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정인 반면에 여기서의 가정들은 一般家口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貧困線 以下の 가구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로 이들 個別家口

들의 빈곤갭을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65세 미만 가구들의 평균가구원수와 각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추정한 후, 1996년 65세 미만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계산하였다. 자세한 방법과 數式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

라. 센指數 推定方法

센지수는 앞에서 측정한 빈곤율 및 빈곤갭을 이용하여 推定하였다. 그러나 식 4-3에서 보듯이 센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빈곤율 및 빈곤갭 이외에 지니계수라는 所得不平等度를 평가하는 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지니계수의 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推定하였다(박찬용 외, 1999).

$$\begin{aligned}
 Gini &= \left[ \frac{2}{\mu n^2} \sum_{k=1}^n k \cdot W_k \right] - \frac{n+1}{n} \quad \dots\dots\dots (4-7) \\
 &= \frac{\frac{2}{n} \sum_{k=1}^n (W_k - \mu) \cdot \left( \frac{k}{n} - \frac{1}{n^2} \sum_{k=1}^n k \right)}{\mu}
 \end{aligned}$$

( $\mu$  = 평균소득,  $n$  = 인구수,  $k$  = 순위(rank),  $W$  = 재산(소득) )

지니계수는 所得不平等度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그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完全不平等을 '0'에 가까울수록 完全平等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구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센指數를 추정하였다. 센지수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0에 가까울수록 빈곤규모 및 정도가 약한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빈곤규모 및 정도가 심한 것이다.

## 第 2 節 老人의 貧困規模 分析

### 1. 貧困率 및 센指數를 利用한 貧困規模

노인동거가구의 빈곤율 및 센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表 4-3〉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노인들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는 자녀동거 노인가구에 비해 빈곤율 및 센지수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總所得 기준으로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빈곤율은 9.3%로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의 10가구 중 1가구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비동거가구의 빈곤율 수준 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동거가구의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4.6%인 반면, 순수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가구인 셈이다. 이는 순수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자녀동거 노인가구보다 무려 6.7배 가량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빈곤노인의 상당수가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가구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센지수 역시 총소득기준으로 순수노인가구는 0.198인데 비하여 자녀동거가구는 0.022로 순수노인가구의 빈곤규모 및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총소득에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을 제했을 경우에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가구들을 추출해보면, 분석1의 결과와 같다. 빈곤율의 경우 노인가구는 무려 58%로 총소득 기준보다 1.87배인 27%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 완화효과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녀동거가구 역시 빈곤율이 9.4%로 총소득 기준보다 약 2.04배인 4.8%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동거가구 역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 家口形態別 老人同居家口의 貧困率 및 센指數

(단위: %)

구분		총소득	분석1 (총소득-공적 사적이전소득)	분석2 (총소득- 사적이전)	분석3 (총소득- 공적이전)
노인 동거 가구	노인 가구	빈곤율 31.0	빈곤율 58.0	빈곤율 54.1	빈곤율 35.2
		센지수 0.198	센지수 0.545	센지수 0.497	센지수 0.246
	자녀 동거	빈곤율 4.6	빈곤율 9.4	빈곤율 8.3	빈곤율 5.7
		센지수 0.022	센지수 0.067	센지수 0.057	센지수 0.030
노인동거가구 빈곤율		9.3	18.1	16.5	11.0
노인비동거가구		9.7	20.8	20.0	10.4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또한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제했을 경우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 노인동거가구는 16.5%에 이르고 있어 총소득기준 보다 7.2% 포인트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54.1%로 총소득 기준보다 무려 1.74배인 23.1% 포인트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율이 8.3%로 총소득기준보다 1.80배인 3.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지수도 사적이전소득을 제한 경우 총소득기준 0.198에서 0.497로 무려 30%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이전소득이 없을 경우 빈곤규모 및 정도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적이전소득이 없었을 경우에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가 그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빈곤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했을 경우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빈곤율은 11.0%로 총소득기준과 비교하여 1.7%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가구형 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35.2%로 총소득기준보다 4.2% 포인트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도 5.7%로 1.1% 포인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센지수도 공적이전소득을 제한 경우 총소득기준 0.198에서 0.246으로 5% 포인트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미미하여 공적이전소득이 없을 경우 빈곤규모 및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적이전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이 없었을 경우에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가 사적이전소득이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보다는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의존도가 높으며, 사적이전소득에 의하여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생활하는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역할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는 노인비동거가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노인가구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는 노인가구에서보다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를 막론하고 공적이전소득보다는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크고 상당한 빈곤완화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貧困갭을 利用한 貧困規模

노인동거가구에 대한 貧困갭을 분석한 결과는 <表 4-4> 와 같다. 총소득 기준으로 1996년 현재 노인동거가구의 貧困갭 규모는 875억원이며, 이를 2000년으로 換算하기 위해 동 금액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을 단순 적용하여 2000년의 빈곤갭을 추정할 경우, 약 10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총소득에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을 제하여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996년 현재 노인가구의 빈곤갭은 4009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2000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4674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2000년도 경로연금 예산 약 2000억원의 약 2.7배 정도이며, 전체 노인복지예산인 2770억원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表 4-4> 家口形態別 老人同居家口의 貧困갭 規模

(단위: 억원)

구분	총소득	분석1 (총소득-공적 사적이전소득)	분석2 (총소득-사 적이전소득)	분석3 (총소득-공 적이전소득)	분석4 (총소득-공 공부조이전)
노인가구	702	3,066	2,694	997	898
자녀동거가구	173	943	802	303	206
합계	875	4,009	3,496	1,300	1,104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또한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제했을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갭이 2,694억원, 자녀동거노인가구의 빈곤갭이 802억원으로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빈곤갭은 34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소득 기준 노인동거가구의 빈곤갭보다 무려 4배 가까이 큰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율 및 센지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 축소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했을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갭은 997억원, 자녀동거노인가구의 빈곤갭은 303억원으로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빈곤갭은 1300억원 정도이다. 이는 총소득 기준 노인동거가구의 빈곤갭보다 약 1.5배 정도가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율 및 센지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 축소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총소득에서 공공부조 이전소득만을 제했을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갭은 898억원, 자녀동거노인가구의 빈곤갭은 206억원으로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빈곤갭은 1104억원 정도로, 총소득기준 노인동거가구의 빈곤갭보다 약 300억원 정도 많은 정도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재정에 의한 빈곤완화 역할이 300억원 정도의 빈곤갭 축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第 3 節 貧困老人의 特性

본 절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분석결과 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家口形態別 貧困老人 分布

가구형태별 빈곤노인의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동거 빈곤가구 2,628가구 중에서 노인가구는 46.3%로 1,216가구이며, 자녀동거노인가구는 53.7%인 1,412가구로 나타났다. 다시 노인가구를 세분하여 보면, 노인 단독가구가 27.0%인 709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가 14.1%인 371가구,

노인기타가구가 5.2%인 136가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동거 빈곤가구의 분포를 전체 노인동거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빈곤노인가구 비율이 20% 포인트 낮은 반면, 노인가구는 20%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구성비보다 빈곤노인가구의 비중이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녀동거노인가구보다는 노인가구에 빈곤노인이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단독가구에 빈곤노인의 편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5〉 家口形態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단위: 명, 원, %)

		노인단독가구 (n=709)	노인부부가구 (n=371)	노인기타가구 (n=136)	자녀동거가구 (n=1,412)
소득 원 유 무	근로소득	150 (21.2)	115 (31.0)	43 (31.6)	1030 (72.9)
	자산소득	140 (19.7)	95 (25.6)	46 (33.8)	215 (15.2)
	사적이전	600 (84.6)	323 (87.1)	118 (86.8)	733 (51.9)
	공적이전	368 (51.9)	136 (36.7)	48 (35.3)	106 (7.5)
	공적연금	0 (0.0)	2 (0.5)	0 (0.0)	8 (0.6)
	공공부조	368 (51.9)	136 (36.7)	48 (35.3)	100 (7.1)
평 균 소 득 액	근로소득	20,879	36,912	110,179	323,766
	자산소득	17,298	27,543	43,128	22,273
	사적이전	111,304	219,012	313,752	103,998
	공적이전	31,320	21,963	18,342	8,932
	공적연금	(0)	(2,477)	(0)	(1,643)
	공공부조	(31,320)	(19,486)	(18,342)	(7,289)
합 계		180,801	305,430	485,400	458,969
구 성 비	근로소득	11.5	12.1	22.7	70.5
	자산소득	9.6	9.0	8.9	4.9
	사적이전	61.6	71.7	64.6	22.7
	공적이전	17.3	7.2	3.8	1.9
	공적연금	(0.0)	(11.3)	(0.0)	(18.4)
	공공부조	(100.0)	(88.7)	(100.0)	(8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또한 가구형태별 빈곤노인의 소득원 구성을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노인단독가구 84.6%, 노인부부가구 87.1%, 노인기타가구 8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에 있어서도 공적연금보다는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공적연금 수급자는 노인부부가구에서 0.5%, 자녀동거가구에서 단지 0.6%가 있을 뿐인 반면, 公共扶助에 대한 수급률은 노인단독가구는 51.9%, 노인부부가구는 36.7%, 노인기타가구는 35.3%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와 관계없이 공적연금 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빈곤가구는 매우 낮았다.

노인동거 빈곤가구의 평균소득액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가 18만 1천원, 노인부부가구가 30만 5천원, 노인기타가구가 48만 5천원, 자녀동거가구가 45만 9천원으로 노인단독가구의 평균소득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소득원 비중을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2~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의존도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원 유무와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사적이전소득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순으로 나타나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가족부양 우선, 국가개입 최소화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 2. 年齡階層別 貧困老人 分布

연령계층별 빈곤노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60~64세가구가 14.7%, 65~74세 가구가 53.1%, 75세 이상의 가구가 32.2%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노인의 연령계층별 분포는 전체 노인가구의 연령계층별 구성과 비교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연령계층별 빈곤노인의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계층을 망라하여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60~64세 78.9%, 65~74세 83.5%, 75세 이상 89.1%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약간씩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60~64세 10.5%, 65~74세 42.7%, 75세 이상 49.8%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근로소득은 60~64세는 49.8%가 소득원으로 삼고 있으나, 65~74세는 29.9%, 75세 이상은 17.8%만이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평균소득액을 살펴보면, 60~64세는 32만원, 65~74세는 26만 4천원, 75세 이상은 22만 7천원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원별 비중을 보면, 역시 사적이전소득이 전 연령계층에 걸쳐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60~64세는 전체소득의 48.5%를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었고, 65~69세는 64.5%, 75세 이상은 그 비중이 무려 69.4%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연령계층별 공공부조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64세는 3.5%, 65~74세는 9.1%, 75세 이상은 13.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64세의 젊은 노인계층의 경우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원 비중이 40.1%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65~74세의 경우 동 비중이 17.4%,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6.5%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6〉 年齡階層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단위: 명, 원, %)

		60~64세 (n=209)	65~74세 (n=756)	75세 이상 (n=460)
소득원유무	근로소득	104 (49.8)	226 (29.9)	82 (17.8)
	자산소득	42 (20.1)	175 (23.1)	106 (23.0)
	사적이전	165 (78.9)	631 (83.5)	410 (89.1)
	공적이전	24 (11.5)	325 (43.0)	229 (49.8)
	공적연금	2 (1.0)	2 (0.3)	0 (0.0)
	공공부조	22 (10.5)	323 (42.7)	229 (49.8)
평균소득액	근로소득	128,397	46,112	14,805
	자산소득	22,970	22,459	24,601
	사적이전	155,247	170,602	158,165
	공적이전	13,284	25,272	30,291
	공적연금	(2,040)	(1,200)	(0)
	공공부조	(11,244)	(24,072)	(30,291)
합 계		319,898	264,445	227,861
구성비	근로소득	40.1	17.4	6.5
	자산소득	7.2	8.5	10.8
	사적이전	48.5	64.5	69.4
	공적이전	4.2	9.6	13.3
	공적연금	(15.4)	(4.7)	(0)
	공공부조	(84.6)	(95.3)	(100)
합 계		100.0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3. 性別 貧困老人 分布

빈곤노인가구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가구비율이 전체의 67.4%로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생활 실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빈곤노인가구의 성별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남녀 공히 사적이전 소득을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각각 86.9%, 8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부조 수급자는 남성이 36.3%, 여성이 49.8%로 여성이 약 1.7배정도 더 많았다. 이는 우리 나라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정부에 대한 依存率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表 4-7〉 性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단위: 명, 원, %)

		남성 (n=397)	여성 (n=819)
소득원유무	근로소득	100 (25.2)	208 (25.4)
	자산소득	123 (31.0)	158 (19.3)
	사적이전	345 (86.9)	696 (85.0)
	공적이전	146 (36.8)	408 (49.8)
	공적연금	2 (0.5)	0 (0.0)
	공공부조	144 (36.3)	408 (49.8)
평균소득액	근로소득	47,718	29,291
	자산소득	36,654	16,877
	사적이전	219,519	141,197
	공적이전	18,655	30,962
	공적연금	(2,442)	(0)
	공공부조	(16,213)	(30,962)
합 계		322,546	218,327
구성비	근로소득	14.8	13.4
	자산소득	11.4	7.7
	사적이전	68.1	64.7
	공적이전	5.8	14.2
	공적연금	(13.1)	(0)
	공공부조	(86.9)	(100)
합 계		100.1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성별 평균소득액은 남성이 32만 3천원, 여성이 21만 8천원으로 남

성의 67.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가장 높아 각각 68.1%, 64.7%로 나타났으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남성은 5.8%인데 비하여 여성은 14.2%로 2.4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地域別 貧困老人 分布

地域別 빈곤노인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가 53.3%, 농어촌은 46.7%로 도시가 6.6%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는 도시, 농어촌 공히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비율이 각각 87%,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27.5%로 4%포인트 높게 나타난 반면 자산소득과 사적이전은 도시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노인가구의 소득원 구성에 있어 지역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별 平均所得額은 도시가 27만 4천원, 농어촌이 22만 7천원으로 도시가 4만 7천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원별로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은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모두 1.4배 높으며, 사적이전은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공적이전에 비해 사적이전에 대한 노인가구의 의존율이 각각 66.3%, 65.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表 4-8〉 地域別 貧困老人의 分布와 所得源 構成

(단위: 명, 원, %)

		도시 (n=648)	농어촌 (n=568)
소득원유무	근로소득	152 (23.5)	156 (27.5)
	자산소득	163 (25.2)	118 (20.8)
	사적이전	564 (87.0)	477 (84.0)
	공적이전	283 (43.7)	269 (47.4)
	공적연금	0 (0.0)	2 (0.4)
	공공부조	283 (43.7)	269 (47.4)
	합계		
평균소득액	근로소득	40,523	29,241
	자산소득	26,925	19,060
	사적이전	181,846	148,885
	공적이전	24,799	29,503
	공적연금	0	1,653
	공공부조	24,799	27,850
	합계	274,093	226,689
구성비	근로소득	14.8	12.9
	자산소득	9.8	8.4
	사적이전	66.3	65.7
	공적이전	9.0	13.0
	공적연금	0.0	5.6
	공공부조	100.0	94.4
	합계	100.0	100.0

原資料: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6.

## 第 5 章 老人 所得保障制度의 現況과 保障實態 分析

### 第 1 節 現行 老人 所得保障制度의 構成

所得保障(Income Maintenance)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所得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所得의 一部 혹은 全部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석재은, 1998).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의 형태를 가진다. 소득보장제도로서의 社會保險制度는 예측되는 소득상실 위험(노령, 실업,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여 놓았다가 사회구성원 누군가에게 위험이 발생하면 사회연대적으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위험을 分散하는 제도로서, 근로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公共扶助制度는 소득수준 등의 이유로 각출 기록이 없어 사회보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탈락자에게 정부의 재정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社會手當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속한 인구계층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 수당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정부 재정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제도 중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노령’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총칭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노인

소득보장제도로써 대표적인 제도가 연금제도(pension scheme)이며,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노령계층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scheme), 그리고 국가에 따라 노령수당제도(the aged allowance scheme)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公的 老人 所得保障制度에는 사회보험 형태로서는 公的 年金制度가 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가 도입·실시되고 있다. 공공부조의 형태로는 2000년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에서 명칭이 개정된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는데, 경로연금은 노령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노령계층을 위한 무각출연금의 성격과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노령계층의 추가생활비소요에 대한 부가급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 65세 이상 노령계층에게 월 4,800~12,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私的 所得保障制度로는 각 기업의 관장하에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저축·보험상품이 있다. 그러나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의 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圖 5-1] 은 현행 우리 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다. 기본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피용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연금제도내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추가적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圖 5-1] 現行 우리 나라 老人所得保障制度의 構成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추가 보장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 (기업연금)				
1차 안전망	1층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연금		
최종 (빈곤선)					경로연금	
안전망	0층				기초 생활보장 제도	

이와 같은 빈틈없는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설계 의도와 달리 실질적인 노인 소득보장의 실태는 구멍이 많다. 국민연금만 해도 제도적으로는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의 경우 60%의 급여율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적용에서 제외된 노령계층이 대부분이며, 연금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5년남짓 가입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므로 연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실제로는 적용범위의 측면에서도 1차 안전망에서 탈락한 모든 대상자가 최종안전망에서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급여수준의 측면에서도 연금수급자라 하더라도 적정수준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시 말하면, 현행 우리 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적용범위 측면에서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이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장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된 적용범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실제 현재 노인들이 그 제도들을 통하여 얼마나 보장(coverage)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benefit level)은 어떠한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第 2 節 公的年金制度

### 1. 公的年金制度의 概要

우리 나라의 公的年金制度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의 3가지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공적연금제도인 國民年金制度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12년전인 1988년에 도입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종사자인 440만명을 적용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종사자, 1995년 농어촌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계속하여, 만 11년만인 1999년 4월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포괄하는 전국민 연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위험에 대비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표 5-10 참조). 노령연금에는 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이 있으며, 도입역사가 짧은 관계로 지급권을 최대한 확대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시적으로 5년 이상 가입자에게 특례노령연금<sup>8)</sup>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公務員年金은 196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사망 및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종류로는 장기급여로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단기급여로는 공무상의 요양비 등을 두고 있다(表 5-13 참조).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관할하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軍人年金制度는 1960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비롯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도입되었으나, 1963년 군인의 신분과 복무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교 및 장기복무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로 분리 운영되어 왔으며, 급여종류, 급여산식, 부담률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군인연금은 국방부의 연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私學年金은 1973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된 국·공립학교교직원과 그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보험료부담방법을 제외한 제도내용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사학연금은 교육부 관할하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8)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최초시행(1988년 1월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 및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5년만 되면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되어 지급하게 되어있다

공적직역연금간에는 連繫制度가 마련되어 있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타 직역연금의 적용대상으로 임용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의해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表 5-1〉 우리 나라 公的年金制度

구 분	근거법	적용대상	급여내용	관장기관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1986.12.31) ※당초법률 :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타연금제도 적용자제외)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1960. 1.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군인과 선거에 의한 공무원 제외)	· 장기급여(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 단기급여(공무상의 요양비)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1973.12.30)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임시직, 조건부임용직, 무보수근무자제외)	※공무원연금의 급여와 같음	교육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1963. 1.28)	장기복무하사관 및 장교	· 퇴직연금·상이연금 · 유족급여·재해보상금	국방부

資料: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미발간).

## 2. 公的年金의 適用範圍

### 가. 國民年金

#### 1) 適用對象

국민연금의 適用對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먼저 事業場加入者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이며(단, 공무원·군인·사립학

교직원 연금을 적용 받는 자는 제외), 地域加入者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써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단, 퇴직연금 수급권자, 별도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은 제외).

2000년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총 1715만 5천명이며, 이 중 미가입자가 42만 8천명으로 총가입자는 1672만 4천명이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559만 8천명, 지역가입자는 1099만 6천명, 임의가입자 3만 8천명, 임의계속가입자 9만 2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자 중 514만 4천명이 납부예외자로 실질적인 국민연금가입자는 1158만명이다. 납부예외자는 납부유예자와 납부불능자로 구분되는데, 납부유예자는 391만 9천명으로 실직, 사업중단, 생활곤란 등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한 자이며, 납부불능자는 122만 2천명으로 병역, 재학, 수감 등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表 5-2〉 國民年金의 加入者(2000. 8)

(단위: 천명, %)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자(A)	16,262	5,598	10,996	38	92
납부예외자(B)	5,144	0	5,144	-	-
납부예외율(B/A)	31.6	0	46.8	-	-

資料: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내부자료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실질적 국민연금 가입자 1158만명은 총 가입 대상의 67.5%이며, 가입자의 69.2%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70~8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연금수급자격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0~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年金受給者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부분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999년말 현재 17만 6천명으로, 이는 1997년 8만 3천명, 1998년 11만 3천명에 비하여 연평균 45.6%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노령연금수급자의 비중은 1997년 8.4%, 1998년 8.9%의 완만한 상승에서 1999년에는 14%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sup>9)</sup>.

〈表 5-3〉 國民年金의 給與種類別 給與支給 現況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특례노령연금 <sup>1)</sup>		장애연금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1997	987,888	1,485,529,758	83,222	109,721,553	11,804	26,848,051
1998	1,268,984	2,439,728,567	112,946	171,424,527	14,870	38,095,257
1999	1,254,621	3,871,969,097	175,572	299,592,241	18,850	57,627,148

구분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1997	58,217	72,200,387	830,755	1,274,013,915	3,890	2,745,854
1998	74,334	100,134,390	1,062,305	2,126,220,936	4,529	3,853,458
1999	93,184	132,018,371	962,923	3,378,751,585	4,092	3,979,753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0.

연령계층별로는 60~64세가 11만 5천명이며, 65세 이상은 3만 4천명이다. 60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 149천명은 1999년 기준 60세 이상

9) 동 대상자수의 증가는 1995년 농어촌지역으로 가입자가 확대된 이후, 5년이 경과된 해가 1999년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노인대상자가 노령연금의 수급자로 포함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인구의 3.0%이며, 65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 3만 4천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극히 소수만이 국민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평균 특례노령연금급여액이 1999년 기준 142,198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表 5-4〉 年齡階層別, 性別 特例老齡年金 受給者(1999)

(단위: 명, 억원)

구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수급자수	26,766	21,671	5,095	114,711	91,646	23,065	34,095	28,432	5,663
수급액	457	396	61	2,080	1,786	294	4,583	4,042	541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0.

한편,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60~64세의 경우 남자가 9만 2천명, 여자가 2만 3천명으로, 여성은 남성의 25% 정도만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남자가 28,432명, 여자가 5,663명으로 여자가 남자의 20% 정도만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이를 1999년 기준 인구통계와 비교해보면, 60~64세의 총수급자는 추계인구대비 6.5%이며, 남자는 11%, 여자는 2.4%로 역시 여성의 受給率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수급률이 1.1% 밖에 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대비로 보면, 연금수급률은 3%수준이며, 여자는 남자의 25% 정도만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연금수급률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우리 나라 연금제도가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오다가 취업여성의 경우 남성세대주의 가입만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의 연금가입률은 매우 낮아오는데 반하여,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자

보다 7~8년 더 길어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긴 기간 동안 노령기를 보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연금수급권 확보가 어렵고,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特殊職域年金

공무원연금제도의 總加入者는 1999년 기준 91만 4천명으로 도입 당시인 1960년의 23만명에 비해 약 4배정도 증가하였다. 수급자수에 있어서도 1997년 7만 3천명, 1998년 8만 9천명, 1999년에는 약 12만 9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12만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의 93.3%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 장해연금이 608명(0.5%), 유족연금이 8,027명(6.2%)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의 구성비가 높은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공무원연금이 성숙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表 5-5〉 公務員年金의 年金受給者 推移

(단위: 명)

구분	계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1997	72,889	66,482	425	5,982(109)
1998	89,322	81,991	486	6,845(113)
1999	128,940	120,305	608	8,027(120)

註: 1) 연금수급권자 수는 증·감을 감안한 누계임.

2) ( )는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으로 인한 유족승계자로 유족연금에 포함된 것임.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2000.

퇴직연금 수급자중 61세 이상의 노인계층의 수급자는 전체수급자 대비 1997년 64.0%, 1998년 61.5%, 1999년 55.8%로 그 비율은 점차 축

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자수의 측면에서는 1998~1999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66세 이상의 퇴직연금 수급자는 26,913명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22.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受惠率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이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5-6〉 公務員年金의 年齡階層別 退職年金 受給者(1999)

(단위: 명)

구분	계	55세 이하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 이상
1997	66,482	8,661	15,216	24,140	13,209	5,256
1998	81,991	10,861	20,680	27,865	15,679	6,906
1999	120,305	20,360	32,819	40,213	18,129	8,784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학연금의 가입자는 1975년 초기 약 4만여 명에서 1999년은 208천 명으로 약 5배정도 증가하였다. 사학연금의 수급자를 급여종류별로 보면, 退職年金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1997년 91.6%, 1998년 91.5%, 1999년은 9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제도의 성숙으로 퇴직연금이 사립학교교원의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表 5-7〉 私學年金의 年金受給者 推移

(단위: 명)

구분	계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1997	5,457	5,000	10	447
1998	6,412	5,869	13	530
1999	10,687	10,037	18	632

資料: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0.

1999년 기준 사학연금수급자의 平均年齡은 64세이며, 퇴직연금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는 4,286명으로 전체수급자 대비 42.7%로 나타나고 있다.

性別로는 남성수급자가 8,746명으로 87.1%이며, 여성수급자는 1,291명으로 12.9% 이다. 이와 같이 사학연금에서도 국민연금에서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6.8배정도 수급자가 많다.

〈表 5-8〉 私學年金의 年齡階層別 退職年金 受給者(1999)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55세 미만	1,108	550	558
55~64세	4,643	4,112	531
65~69세	2,570	2,417	153
70~74세	1,222	1,160	62
75~79세	427	406	21
80세 이상	67	62	4
전체수급자	10,037	8,746	1,291
평균연령(세)	64	64	64

資料: 사립학교교직원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0.

다. 要約: 公的年金의 適用範圍

우리 나라 4대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2000년 기준 총 1202만 9

천명이며, 수급자는 483천명이다. 각 공적연금제도별 연금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국민연금이 가장 낮은 1.8%이고, 사학연금 5.3%, 공무원연금 14.1%, 군인연금 34.0% 순이다.

〈表 5-9〉 우리 나라의 公的年金制度(1999)

(단위: 천명)

		가입자 (A)	연금수급자 (B)	B/A (%)	기여 및 급여구조
국민연금		10,749 <sup>1)</sup>	288	2.7	기여: 소득의 9% (자영자는 4%) 급여: 소득재분배형
직 역 연 금	공무원	914	129	14.1	기여: 소득의 15% 급여: 완전소득비례형
	군인	158	55	34.0	
	사립교원	208	11	5.3	

註: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실질 가입자 기준임.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0); 사학연금관리공단(2000); 국방부 연금과(2000).

### 3. 公的年金의 給與水準

#### 가. 國民年金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表 5-10〉과 같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주어 지지만, 감액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요건은 10년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의 60~100%를 수급할 수 있다.

〈表 5-10〉 國民年金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급여유형	수급요건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	급여수준
노령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단 광부, 선원은 55세)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로 60세에 달한 때	가입기간 10~19년 60세이상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단,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연령 60~64세 수급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0% (가급연금 해당없음)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연령 55~59세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 × 수급연령에 따라 75~95%를 곱한 금액 + 가급연금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장애등급 1~4급	1~3급: 기본연금액의 100, 80, 60% + 가급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가입중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 지급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특수직역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 때	-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가입자 혹은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	-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급여율은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의 경우 60% 수준이다. 즉, 가입기간에 정비례하여 가입기간 1년당 1.5%씩의 급여율이 더해지는 구조이다.<sup>10)</sup>

$$\text{국민연금급여} = 1.8 \times (A+B) \times (1+0.05n)$$

(A = 수급전 3년간 전가입자 평균소득, B=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  
n=20년 초과연수)

국민연금은 급여산식에서 보여지듯이 한편으로는 전가입자 평균소득(A)을 급여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체 가입자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을 급여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근로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5-11〉은 국민연금 가입연도에 따른 급여율을 소득계층별, 가입기간별로 계산해 놓은 것이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부분은 1998년말 법개정 이전 급여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가입연도에 따라 급여율이 달라진다.

1988년 가입자의 경우 2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는 42만 2천원으로 32.8%의 급여율을 보이며, 최저소득계층은 100%, 최고소득계층은 21.4%의 급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9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2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는 38만 7천원으로 30.0%의 급여율을, 최저소득계층은 100.0%, 최고소득계층은 20.4%의 급여율을 보이고 있다.

10) 1998년 12월 국민연금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급여산식 개정 이전에는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의 경우 70%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구조였다. 개정 이전의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국민연금급여} = 2.4 \times (A+0.75B) \times (1+0.05n)$$

(A = 수급전년도 전가입자 평균소득, B=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  
n=20년 초과연수)

〈表 5-11〉 國民年金의 給與額 및 給與率

(단위: 원, %)

		가입기간				
소득계층		10년	20년	30년	40년	
1988년 가입자	최저소득계층	145,500	220,000	220,000	220,000	
	월연 금액	평균소득 50%	177,375	325,725	470,850	615,975
		평균소득	225,750	422,475	615,975	809,475
	평균소득 200%	322,500	615,975	906,225	1,196,475	
	최고소득계층	399,000	768,975	1,135,725	1,502,475	
	급 여 율	최저소득계층	66.1	100.0	100.0	100.0
		평균소득 50%	27.5	50.5	73.0	95.5
		평균소득	17.5	32.8	47.8	62.8
		평균소득 200%	12.5	23.9	35.1	46.4
		최고소득계층	11.1	21.4	31.5	41.7
1992년 가입자	최저소득계층	135,825	220,000	220,000	220,000	
	월연 금액	평균소득 50%	167,700	312,825	457,950	603,075
		평균소득	216,075	409,575	603,075	796,575
	평균소득 200%	312,825	603,075	893,325	1,183,575	
	최고소득계층	389,325	756,075	1,122,825	1,489,575	
	급 여 율	최저소득계층	61.7	100.0	100.0	100.0
		평균소득 50%	26.0	48.5	71.0	93.5
		평균소득	16.8	31.8	46.8	61.8
		평균소득 200%	12.1	23.4	34.6	45.9
		최고소득계층	10.8	21.0	31.2	41.4
1995년 가입자	최저소득계층	124,538	220,000	220,000	220,000	
	월연 금액	평균소득 50%	156,413	301,538	446,663	591,788
		평균소득	204,788	398,288	591,788	785,288
	평균소득 200%	301,538	591,788	882,038	1,172,288	
	최고소득계층	378,038	744,788	1,111,538	1,478,288	
	급 여 율	최저소득계층	56.6	100.0	100.0	100.0
		평균소득 50%	24.3	46.8	69.3	91.8
		평균소득	15.9	30.9	45.9	60.9
		평균소득 200%	11.7	22.9	34.2	45.4
		최고소득계층	10.5	20.7	30.9	41.1
1999년 가입자	최저소득계층	113,250	220,000	220,000	220,000	
	월연 금액	평균소득 50%	145,125	290,250	435,375	580,500
		평균소득	193,500	387,000	580,500	774,000
	평균소득 200%	290,250	580,500	870,750	1,161,000	
	최고소득계층	366,750	733,500	1,100,250	1,467,000	
	급 여 율	최저소득계층	51.5	100.0	100.0	100.0
		평균소득 50%	22.5	45.0	67.5	90.0
		평균소득	15.0	30.0	45.0	60.0
		평균소득 200%	11.3	22.5	33.8	45.0
		최고소득계층	10.2	20.4	30.6	40.8

註: 평균소득 129천원으로 설정. 가급연금액 월12,500원을 더하면, 홀벌이가구 부부기준 연금액임.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의 제도구조상 급여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민연금의 제도성숙 기간이 부족하여 급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례노령연금수급액을 연금수급자로 나누어 1인당 노령연금수준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月平均 老齡年金給與額은 1999년 현재 14만 2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 11만원, 1998년 12만 6천원에 비하면 그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제도성숙과 함께 급여수준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기준으로 年齡別로 보면, 55~59세는 14만 2천원, 60~64세가 15만 1천원, 65세 이상은 11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表 5-12〉 國民年金 老齡年金 月平均 年金支給額 現況

(단위: 천원, 명)

구분	연지급액	수급권자	1인 월평균(원) <sup>1)</sup>
1997	109,721,553	83,222	109,868
1998	171,424,527	112,946	126,480
1999	299,592,241	175,572	142,198
55~59세	45,729,915	26,766	142,376
1999 60~64세	208,024,314	114,711	151,122
65세 이상	45,838,011	34,095	112,035

註: 1) 1인 월평균연금액 = (연지급액/수급권자)/12개월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국민연금통계연보』, 2000.

#### 나. 特殊職域年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개 특수직역연금은 급여종류, 급여산식, 수급요건이 거의 동일하다. 특수직역연금은 연금수급요건이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이며, 1995년도 특수직역연금법 개정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60세에 도달한 경우라는 연령요건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表 5-13〉 特殊職域年金 種類와 支給要件

종류		지급요건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퇴직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퇴직일시금	•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연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재직중 사망한 때 지급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70%가 지급
		유족연금부가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25% 지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지급
		유족연금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액지급
		유족일시금	•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액지급
		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지급
	장해급여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할 때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연액의 80~15% 지급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액의 5배 지급
		퇴직수당	•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1년 이상 재직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
단기급여	공상급여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
		공무상요양일시금	• 공무상 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지급
	부조급여	재해보조금	•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 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사학교원, 군인) 또는 공무원(사학교원, 군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지급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산식은 〈表 5-14〉에서 보듯이, 가입기간과 가입자 소득에 정비례하여 급여가 산정되는 소득비례적 급여이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20년까지는 가입기간 1년당 2.5%씩 급여율이 증가되는 구조이나,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1년당 2.0%씩의 급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입한도가 3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급여율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表 5-14〉 特殊職域年金の 給與率

급여종류	급여내용 및 급여율	비고
퇴직연금	최종보수월액에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급여율은 재직연수(20년~33년)에 따라 최종보수월액의 50~76% 즉, 퇴직연금액=최종보수월액*(0.5+0.02n) 단, n은 20년 초과 재직연수(n≤13)	◦ 보수월액 =(봉급연액+기말수당연액+장기근속수당연액)/12
유족연금	퇴직(장해)연금액의 70% + (특별)부가금	◦ 급여산정기준시점은 급여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
장해연금	최종보수월액에 질환등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급여율은 폐질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종보수월액의 15%~80%	◦ 퇴직 및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이의 병급 인정

給與率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소득에 정비례하여 20년 가입인 경우에는 50%, 25년 가입시는 60%, 30년 가입시는 70%, 최고 33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76%를 받게 되어 있다(表 5-15 참조).

〈表 5-15〉 職域年金의 給與額 및 給與率

(단위: 원, %)

소득수준		가입기간			
		20년	25년	30년	33년
월 연 금 액	500,000원	250,000	300,000	350,000	380,000
	1,000,000원	500,000	600,000	700,000	760,000
	2,000,000원	1,000,000	1,200,000	1,400,000	1,520,000
	3,000,000원	1,500,000	1,800,000	2,100,000	2,280,000
	4,000,000원	2,000,000	2,400,000	2,800,000	3,040,000
급 여 율	500,000원	50.0	60.0	70.0	76.0
	1,000,000원	50.0	60.0	70.0	76.0
	2,000,000원	50.0	60.0	70.0	76.0
	3,000,000원	50.0	60.0	70.0	76.0
	4,000,000원	50.0	60.0	70.0	76.0

한편, 실제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999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의 1인당 月平均年金額은 114만 6천원이며, 이 중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은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表 5-16〉 公務員年金 月平均 年金支給額 現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퇴직연금		
	월평균 지급액	월평균 수급권자	1인 월평균 (천원)	월평균 지급액	월평균 수급권자	1인 월평균 (천원)
1999	129,191	113,461	1,146	122,552	105,449	1,170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2000.

또한, 사학연금의 月平均年金額은 134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는 143만 8천원, 사무직원의 경우는 110만 1천원으로, 교원이 사무직원에 비해 약 1.3배정도 연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階層別로 보면, 66~70세는 144만 8천원, 71~75세는 152만 2천원, 76~80세는 148만 2천원, 80세 이상은 144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表 5-17〉 私學年金 月平均 年金支給額 現況

(단위 : 원)

구 분	평균연금액	연령			
		66~70	71~75	76~80	80세 이상
계	1,342,074	1,447,888	1,522,424	1,482,406	1,445,948
교 원	1,437,738	1,509,981	1,565,876	1,500,718	1,462,669
사무직원	1,101,302	1,160,793	1,238,112	1,160,744	1,165,861

資料: 사립학교교직원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0.

## 다. 要約: 公的年金의 給與水準

제도상으로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20년 가입기준 30%의 급여율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수직역연금은 50%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表 5-18〉 우리 나라 公的年金制度의 比較

	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
시행연도	1988년	1960년(공무원연금), 1963년(군인연금), 1975년(사립학교교원)
적용대상	일반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보험료 부담	9%(가입자 4.5%, 사용자 4.5%)	15%(가입자 7.5%, 국가 및 사용자 7.5%)
소득상한선	360만원/월	없음
급여종류	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이상, 장애연금·유족연금-가입기간 1개월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 20~33년 재해 및 조기사망시 단기급여지급
노령(퇴직)연금	$1.8 \times (A+B)(1+0.05n)$ (소득재분배 기능)	$12 \times W \times [0.5+0.02n]$ (소득비례형)
급여산정기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 가입자 평균소득(B) 기준	최종소득(W) 기준
연금액 조정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동	재직자 보수 기준 연동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직후
지급방식	연금	연금과 일시금 선택가능

資料: 윤병식외, 『사회보험 관리운영 평가지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실제 급여수준의 경우, 1999년 현재 국민연금은 14만 2천원이며, 공무원연금은 117만원, 사학연금은 134만 2천원이다. 이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222만 5천원 비교해보면,<sup>11)</sup>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4%이며, 도시근로자가계지출의 8.2%, 소비지출의 9.7%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2.6% 수준이며, 사학연금은 60.3% 수준이다.

〈表 5-19〉 都市勤勞者家口 所得·消費 對比 公的年金 水準(1999)

(단위: 천원, %)

구분	소득	가계지출		
		계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전 체(A)	2,224.7	1,730.5	1,473.5	257.0
노인가구 <sup>1)</sup>	2,174.5	1,744.2	1,526.1	218.1
국민연금/A	6.4	8.2	9.7	-
공무원연금/A	52.6	67.6	79.4	-
사학연금/A	60.3	77.5	91.0	-

註: 1) 1999년의 노인가구는 도시근로자가구중 가구내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임.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 第 3 節 敬老年金制度

경로연금제도는 기존에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에 노령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령계층 중 저소득층인 노인에게 대한 보완적인 무작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혼합하여 1998년 7월부터 도입, 실행되었다. 따라서

11) 연금은 1인당 개념이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가구개념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3.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1. 敬老年金의 受給範圍

경로연금의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이다. 즉,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과 67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 노인이 그 대상이다.

경로연금의 수급자는 所得基準 및 財産基準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본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所得基準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65%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의 14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2000년 현재 소득은 1인당 월 40만 3천원 이하이며 재산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이다.

〈表 5-20〉 敬老年金의 選定基準(2000)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동일	40만 3천원 이하(월 1인당)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 이하
재산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동일	4천만원 이하(가구당)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의 100분의 140 이하

註: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경로연금 수급자는 2000년 기준 584,976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7.3% 정도이다. 그 구성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전체 경로연금 수급자의 53.2%이며, 저소득 노인이 46.8%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중 80세 미만 노인이 248천명으로, 경로연금 수급자의 42.4%, 65세 이상 노인의 7.3%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은 63천명으로 경로연금 수급자의 10.8%, 65세 이상 노인의 1.9%이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중 전액지급자는 231천명으로 경로연금 수급자의 39.4%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6.8%이며, 감액지급자는 43천명으로 경로연금 수급자의 7.4%, 65세 이상 노인의 1.3%이다.

〈表 5-21〉 敬老年金 受給者 現況(2000)

(단위: 명, %)

구분	수급자(A)	A/65+
국민기초생활 보장노인	247,995( 42.4)	7.3
80세 미만		
80세 이상	63,272( 10.8)	1.9
저소득노인	230,564( 39.4)	6.8
전액지급자		
감액지급자	43,145( 7.4)	1.3
총계	584,976(100.0)	17.3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 2. 敬老年金의 給與水準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65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은 1인당 월 4만원이 지급되며,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2000년부터 월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며, 부부가 모두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중 1인은 22,500원으로 감액지급하고 있다. 2000년도 경로연금의 예산은 약 210억원 규모이다.

敬老年金의 급여수준을 현재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급여액과 비

교시 35.2~15.8% 수준이며, 근로자가구 중 노인소속가구와 비교에서도 2.3~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表 5-22〉 敬老年金 給與水準 및 豫算(2000)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저소득노인		총계	
	80세 미만	80세 이상	전액지급자	감액지급자		
지급액(1인당)	4만원	5만원	3만원	2만 2.5천원	-	
소요예산	99.2억원 (47.3%)	31.6억원 (15.1%)	69.2억원 (33.0%)	9.7억원 (4.6%)	209.7억원 (100.0%)	
비교 <sup>1)</sup>	국민연금	28.1%	35.2%	21.1%	15.8%	-
	근로자소득	1.8%	2.3%	1.4%	1.0%	-

註: 1) 1999년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142,198원과 1999년 노인가구 소득인 2,174,477원을 비교한 것임.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 第 4 節 公共扶助制度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公共扶助制度가 2000년 10월부터 生活保護制度에서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가장 큰 내용은 급여수급자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급여수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거택과 자활로 구분된 보호종류를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노인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변경으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1. 公共扶助制度의 老齡階層 受給者

1999년말 기준으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117만명이며<sup>12)</sup>, 이 중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은 24만 1천명으로 전체 보호대상자의 20.5%에 이르고 있다<sup>13)</sup>. 이 중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거택보호 노인은 12만 9천명으로 전체대상자 대비 11%이며, 자활보호노인은 11만 2천명으로 전체대상자 대비 9.5%에 이른다. 생활보호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199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320만 3천명 중 7.5%수준이다.

연령별로 세분하여 보면, 1999년의 경우 65~69세는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11.4%이며, 70세 이상은 수급률이 1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69세 사이의 노인은 10명중 1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은 10명 중 약 2명의 노인이 생활보호제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997년에 비해 약 2배씩 증가한 수준으로 經濟危機에 의한 영향이 노인계층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과 1999년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의 하나로 限時的 生活保護制度가 시행되었던 해로 실질적인 노령계층에 대한 보호범위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性別에 따른 분포를 보면, 1999년 기준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남성수급자에 비해 여성수급자가 현저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居宅保護對象者 중 65~69세 사이의 노인 중 여성이 3.5%로 남성의 1.6%보다 2배 이상 높으며,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남성이 2.6%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이보다 약 3.2배 높은 8.3%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8년의 거택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男女老人의 차이가 2.3배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12)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보호인원은 193만 5천명에 이른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구하지 못해 여기서는 본래 보호인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3)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됨에 따라 본 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2000년말 기준으로 약 151만명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대상자에 대한 본격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본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아 본 자료에서는 1999년 대상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經濟危機의 영향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비교하면, 남성이 2.2%, 여성이 6.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受惠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60세 이상의 비교에서는 남성이 1.6%, 여성이 4.8%로 약 2.5배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自活保護對象者의 경우 거택보호대상자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즉, 1999년 65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남성이 3.1%, 여성이 3.7%로 0.6%포인트 정도의 차이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保護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수급자가 많은 것은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 여성 노인의 절대수가 많고, 여성이 근로연령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자구적인 노후소득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表 5-23〉 老齡階層의 生活保護對象者 現況

(단위: 명, %)

구분		60~64세 (A)	65~69세 (B)	70세 이상 (C)	(A+B+C)/60+	(B+C)/65+	B/65~69	C/70+	
1997	거택	18,747	33,155	86,952	7.5	9.4	6.8	9.4	
	자활	48,560	45,411	77,146					
1998	거택	남	6,513	7,926	17,028	1.6	2.2	1.5	2.7
		여	11,829	25,555	73,945	3.9	5.2	3.6	6.2
	자활	남	17,181	14,756	25,246	2.9	3.5	2.9	3.9
		여	27,815	29,031	48,934	3.8	4.1	4.1	4.1
1999	거택	남	7,036	8,690	17,680	1.6	2.2	1.6	2.6
		여	12,609	25,890	103,074	4.8	6.5	3.5	8.3
	자활	남	15,462	14,199	23,525	2.6	3.1	2.6	3.5
		여	25,318	27,450	46,685	3.4	3.7	3.7	3.7

註: 1) 각년도 통계청 추계인구와의 비율임.

2) 1998년과 1999년 전체대상자는 1,175,187명으로, 본 분석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였음.

資料: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각 연도.

2. 公共扶助制度의 給與水準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 및 가구규모에 의한 차등생계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1, 2, 3등급은 給與充足率((급여액+자가소득+타법지원액)/ 최저생계비))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2~6인가구간 차등은 최저생계비계측조사 결과 도출된 家口均等化指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급여수준은 23,000원~193,000원(인·월)이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의 個人別 給與額에 대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다.

〈表 5-24〉 生計保護費 給與基準

(단위: 원)

가구규모 소득등급 <sup>1)</sup>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	24만원 초과 ~ 상한	30,000 30,000	50,000 25,000	69,000 23,000	-	-	-
6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80,000 80,000	155,000 77,500	211,000 70,333	258,000 64,500	296,000 59,200	-
5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90,000 90,000	175,000 87,500	241,000 80,333	303,000 75,750	344,000 68,800	388,000 64,667
4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00,000 100,000	185,000 92,500	254,000 84,667	320,000 80,000	364,000 72,800	411,000 68,500
3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113,000 113,000	205,000 102,500	282,000 94,000	355,000 88,750	403,000 80,600	455,000 75,833
2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153,000 153,000	235,000 117,500	323,000 107,667	407,000 101,750	462,000 92,400	522,000 87,000
1	4만원 이하	193,000 193,000	275,000 137,500	378,000 126,000	476,000 119,000	541,000 108,200	610,000 101,667
가구균등화지수		0.634	1.000	1.375	1.730	1.967	2.220

註: 1) 가구원 1인당 월소득 기준  
 2)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은 6인가구 1인당 급여액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백원단위에서 반올림)  
 3) 상단: 월 가구별 총 급여액, 하단: 월 개인별 급여액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로 나누어 生計給與를 지급할 경우 1인당 월지급 수준은 〈表 5-25〉와 같다. 生活保護對象者の 급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분석으로써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 보았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자료는 1인당 소득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을 위해 근로자가구의 平均所得을 平均家口員數로 나누어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表 5-25〉 生計保護對象者 1人當 保護水準과 勤勞者所得 比較

(단위: 천원)

구분	1998	1999	2000	A	B	C
거택보호	162	178	188	26.1	30.2	28.1
시설보호	125	136	147	20.2	23.1	22.0

註: 1) A는 1998년 근로자 1인당 환산 평균소득 619,706원과의 비율임. 다음의 B 및 C 역시 1999년과 2000년(1~3분기 평균임)의 근로자 1인당 환산 평균소득인 589,258원, 2000년은 669,444원과의 비율임.

2) 1인환산소득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눈 수치임.

이를 통해 거택보호 1인당 월 보호수준은 근로자 1인당 환산소득의 26.1~30.2% 수준이다. 1999년의 경우에는 經濟危機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생계보호 금액은 인상되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근로자가구의 26.1~28.1% 수준 정도로, 약 4분의 1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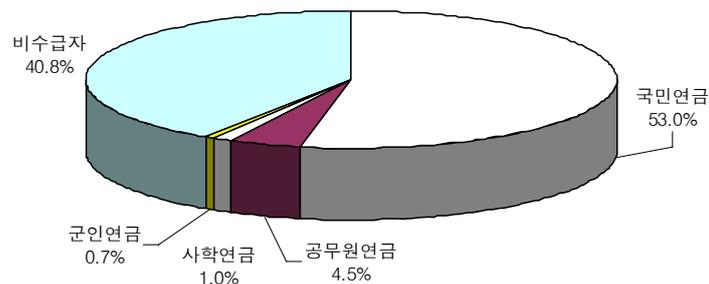
## 第 5 節 要約 및 示唆點

이상과 같은 노인 소득보장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매우 미흡하며, 대다수의 노인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며, 설사 받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기준 就業者 對比 公的年金 加入者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 總就業者가 2028만 1천명으로 이 중 국민연금가입자가 53%, 공무원연금가입자가 4.5%, 사학연금가입자가 1%, 군인연금가입자가 0.7%로 취업자 대비 총 59.2%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就業者 比率이 4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圖 5-2] 就業者 對比 公的年金 加入者 比率



한편, 우리 나라 65세 노인 중 어떤 제도로든 공적으로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규모는 74.1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대비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자도 약 90.6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 대비 18.2%에 불과한 수준이다(表 5-26, 圖 5-3참조).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수급률은 60세 이상 노인 대비 약 5%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

우는 2.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노령계층 중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인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60세 이상 노인대비 수급률은 약 3%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대비 수급률은 약 1%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60세 이상의 수급자는 60세 이상 노인 대비 약 2% 수준이며, 65세 이상 수급자의 65세 이상 노인 대비 수급률은 약 1.5% 수준이다.

또한 경로연금 혹은 생활보호수당 및 경로연금에 의한 수혜율 역시 65세 이상 노인 대비 각각 20.6%와 7.5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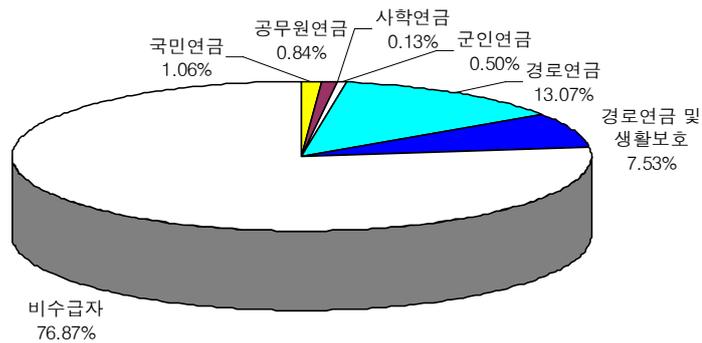
〈表 5-26〉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受給者 現況(1999)

(단위: 명, %)

구 분		60+ 수급자(A)	65+ 수급자(B)	A/60+ 노인	B/65+ 노인
공적 연금	소 계	246,305	81,151	4.94	2.53
	국민연금	148,188	34,095	2.98	1.06
	공무원연금	67,126	26,913	1.35	0.84
	사학연금	7,320	4,286	0.15	0.13
	군인연금	23,671	15,857	0.48	0.50
경로연금		660,108		13.3	20.6
생활보호 <sup>1)</sup>		301,728	241,303	4.84	7.53
총 계		906,413	741,259	18.2	23.1

註: 1)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은 연령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여기에서는 제외함. 동 수치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가 함께 포함됨.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연금과 내부자료.

[圖 5-3] 65歲 以上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受給者 比率



한편, 저조한 공적연금 수급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여성노인의 연금수급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각 연금마다 배우자로부터 파생되는 유족연금을 두고 있지만 그 급여수준이 불충분한 수준이다<sup>14)</sup>. 결과적으로 절대다수인 專業主婦로서만 생활해 온 여성노인들에 대한 보호가 현행 연금제도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차 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의 적용에서 여성의 대다수가 제외됨으로써, 결국 사후적 빈곤대책인 공공부조의 여성수급자를 배가하는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1999년 거택보호대상자 중 65~69세의 경우 여성수급자가 남성수급자의 3배 수준이며, 70세 이상의 경우는 격차가 더 벌어져 약 6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현행 공적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액, 최저생계비 및 도시근로자 2인 가구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보았다. 생활보호의 거택보호대상자 生計支援額인

14)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기초연금액의 40~60%로, 실제 급여율은 12~18%에 불과하며, 특수지역연금의 경우는 기초연금액의 35% 수준이다.

17만 8천원을 100으로 한 경우 국민연금은 80%, 敬老年金은 11.2%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6~7배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액 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운 수급자가 발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수직역연금 급여수준은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5-27〉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受給水準(1999)

(단위: 원, %)

	1인당 월평균수급액	생활보호급여 =100	A/최저생계비	A/도시근로자 2인가구소득
국민연금	142,198 <sup>1)</sup>	79.9	45.2	8.0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1,146,000	644	364.3	64.5
사학연금	1,342,074	754	426.6	75.5
군인연금	-	-	-	-
경로연금	20,000 <sup>2)</sup>	11.2	6.4	2.0 <sup>4)</sup>
생활보호	178,000 <sup>3)</sup>	100.0	56.6	17.6 <sup>4)</sup>

註: 1) 노령연금수급자를 노령연금지급액으로 나눈 금액임.

2) 경로연금 지급액중 차상위 저소득층 급여를 기준으로 함.

3)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임.

4) 2인 기준으로 산정: 경로연금은 1.75배, 생계보호비는 1.755배

1999년 기준 1인 最低生計費와의 비교에서도 국민연금이 45.2%, 경로연금 6.4%, 생계보호수당 56.6%로 공무원·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생계비에 대폭 미달하는 급여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근로자 2인 가구 평균소득과의 비교에서도 국민연금은 8%, 경로연금은 2.0%, 생활보호급여액은 17.6%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사학연금은 65~75% 수준으로 연금만으로도 노후의

적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행 公的年金制度和 公共扶助制度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노인세대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上向調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중 특례노령연금 최저액은 독신의 경우 5만 6천원, 부부의 경우 6만 8천원이며,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上的 수급자는 독신의 경우 1인 가구 最低生計費인 32.4만원을, 부부(=2인 가구)인 경우에는 53.7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敬老年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독신은 4~5만원을 저소득노인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목표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에서 적정한 위상설정과 역할분담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다.

〈表 5-28〉 國民年金의 最低保障水準과 基礎生活保障·敬老年金の 保障水準 比較(2000)

(단위: 원)

	국민연금		기초생활 보장급여 (최저생계비)	경로연금	
	특례노령 연금 최저액	기본연금 최저액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노인
독신	55,934	134,244	324,000	40,000(65~79세) 50,000(80세+)	30,000
부부	68,434	146,744	537,000	80,000(65~79세) 100,000(80세+)	52,500원

- 註: 1)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국민연금 계산시 가입자평균소득(A)는 2000년도 연금수급자에게 적용되는 1,271,595원이며, 배우자 가급연금은 연15만원(월 1만2500원).  
 3) 특례노령연금 최저액은 5년동안 가입한 최저등급계층(22만원)의 연금액이며, 기본연금액 최저액은 1988~1999년 12년동안 가입하고 2000년에 수급받는 최저등급계층(22만원)의 연금액임.

資料: 공사연금제도개선기획단 자료집(2000)

## 第 6 章 安定的 老人 所得保障을 위한 所得保障制度 改善方案

### 第 1 節 老人 所得保障의 政策課題

본 절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노인 소득 및 소득보장 실태를 기반으로, 노인 소득보장의 정책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출생한 연도에 따른 世代別로 노인 소득보장 과제가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한 소득보장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에 의하면, 현 노령계층의 50% 가량이 경제적 궁핍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인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 노령계층은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세대이다. 이미 意識은 공적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고 사적부양의 책임감이 약화된 반면, 制度는 공적부양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과 제도의 시간적 갭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현 노령계층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公的年金의 성숙으로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개시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공적부양이 노인 소득보장의 중심축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상별로 가입시점이 1988년에서 1999년까지 상이하므로 2020년 이전까지는 연금수급권을 가진 노령계층의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불충분으로 그 급여액이 안정된 생활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급여가 주소득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세대별로 소득보장 상황이 상이하므로, 公的年金의 成熟을 주요 변수로 하여 世代別 老人 所得保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女性老人에 대한 특별한 소득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 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보장 실태에서 남성노인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7~8년 길기 때문에 남성보다 긴 노령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적으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老人貧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대부분의 여성이 노인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적 보장제도인 공적연금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어, 공적 연금이 성숙한다 하더라도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연금체계에서 여성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모두 派生的 受給權으로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권과 이혼시 연금분할권 신청이 가능한 정도이다. 그러나 유족연금 수준은 기본연금의 40~60%로 급여율이 12~18% 수준에 불과하며, 이혼시 연금분할권도 재혼시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등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여성 소득보장 문제는 세대별 소득보장과 달리 시간적으로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構造的인 所得保障體系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셋째, 自營者에 대한 차별적 소득보장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 가입자 중 절반정도가 납부예외자이며, 보험료 납부율은 농어촌 자영자 및 도시자영자가 모두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상황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만, 자영자의 특수한 속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노인 소득실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영세자영자는 근로시에는 현금유동성에 제약을 받고, 노령기에는 고령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정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근로자와는 生涯週期上 외부로부터의 必要所得 곡선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보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전세계적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노령기에도 勤勞活動을 계속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勤勞誘引을 제공하기 위한 소득보장체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在職者 老齡年金은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데, 근로유인을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연금제도의 適正負擔-適正給與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적정 부담수준을 고려한 적정 급여수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담규모를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급여 부족분은 사적 소득보장을 통하여 충족하는 방식으로 공적 소득보장과 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도인 敬老年金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경로연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조달하는 무각출 제도인만큼 각출에 기반한 연금제도보다는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로연금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政策課題들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과 構造的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별하여 노령계층의 所得保障體系를 再整備하여야 할 것이다.

## 第 2 節 安定的 老人 所得保障의 基本方向

### 1. 公的扶養과 私的扶養의 役割分擔

생산력의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서 사회적 부양부담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人口高齡化’는 인류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미 경제호황기에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先進國들은 노령계층에게 비교적 관대한 복지수준을 보장해 왔었으나, 경제도 침체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노령계층에 대한 관대한 복지수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노령계층의 보장수준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노령계층 소득보장의 발전과정을 도식화하면, 1단계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의한 私的保障 中心期이며, 2단계는 공적연금의 확충에 의한 公的保障 中心期이며, 3단계는 공적연금에 의한 公的保障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私的保障의 混合期로 구분할 수 있고, 현 단계는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노령계층의 부양책임의 중심이 개별적인 家族에서 집합적인 社會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이며, 現段階에서 핵심적 정책과제는 이미 집합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놓여진 노령계층의 부양문제를 어떻게 사적인 企業 및 個人과 分擔하여 부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공적연금만으로 노령계층의 증대하는 복지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과 기업과의 적절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하여 노령계층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公·私 役割分擔을 재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은 국가와

개인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공적보장과 사적보장과의 혼합(mix)을 통하여 노인소득보장 주체의 다원화(pluralism)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는 현재 전통적인 자녀에 의한 私的扶養 중심에서 사회적 연대에 의한 公的扶養 중심으로 전환되는 過渡期에 있다. 서구 선진국의 노령계층 소득보장 발전단계에 비추어 말한다면, 1 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인 보편적인 공적연금의 도입역사가 짧아 노령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령계층의 절반 이상이 궁핍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빈곤층의 주요 구성원이 노령계층인 실정이다. 현 노령계층이 누릴 수 있는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약 20% 남짓의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로연금과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극빈층 노인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생계보호비가 주어질 뿐이며, 80% 정도의 노령계층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개인적인 준비 혹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50% 정도의 노인이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어떤 형태로든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하므로 약 30% 정도의 노인은 생활의 궁핍감속에서도 별다른 소득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死角地帶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경제의 低成長時期에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급속도로 인구고령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훨씬 더 과중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삼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 이동을 하는 동시에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공적보장의 부담을 적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여진다. 즉, 1차적으로 公的保障을 통하여 노령계층에게 普遍的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保障水準에 있어서는 公的保障과 私的保障의 混合을 통하여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욕구에 따른 공적보장 수준 이상의 부분은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보장과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사적보장이 保障期間의 측면에서 혹은 保障水準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保障期間의 측면에서 공·사간의 역할 분담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그 보장기간을 달리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기간에 사적연금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다.<sup>15)</sup> 즉, 공적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되고, 향후에는 65세로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50대의 조기퇴직자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있어 공적보장의 사각지대에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보장을 통하여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保障水準의 측면에서 공·사간의 역할분담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근로시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치 못하므로 부족한 급여수준을 사적연금을 통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급여율이 현재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기준 60% 수준인데, 수급-부담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더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적연금 급여율을 삭감

15) 보장기간의 공·사 제도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구상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모형 제3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하는 대신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등을 통하여 사적연금에 의하여 노령 소득보장 수준을 보충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私的扶養 중심에서 公的扶養 중심으로의 段階的 轉換이 필요하다. 1단계는 公的年金 未成熟期로, 전통적인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이 아직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공적연금이 1차적인 노인 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 역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사적부양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사적부양의 역할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부양공제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가족부양을 지원하여야 하며, 공적부양의 핵심인 공적연금의 성숙을 준비하면서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 등의 공적부양이 사적부양을 보완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公的年金 成熟期로, 전통적인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이 점차로 낮아지고, 공적연금이 성숙하여 완전연금수급자가 상당수 발생함으로써 공적연금이 전기 노령계층(60~74세)의 주소득원으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후기노령계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으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사적부양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극빈층의 경우에는 공적 최종안정망인 공공부조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단계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단계는 公的年金 完熟期로, 이제 사적부양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전체 노령계층에 대하여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으로 기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

이 완성되고, 동시에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보장과 사적연금에 의한 사적보장의 혼합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적 노인 소득보장 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사적연금이 보충적인 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 公的 所得保障制度間 役割分擔

한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에서의 커다란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普遍主義와 選別主義간의 선택이다. 물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공존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더 비중을 싣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보편주의의 대표적 제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대상을 포괄하는 公的 年金이며, 선별주의의 대표적 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에게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제공되는 公共扶助이다. 따라서 소득보장 정책의 안전망을 公的年金 중심으로 깔 것인지, 혹은 公共扶助 중심으로 깔 것인지는 중요한 선택이다.

베버리지(Beveridge)는 1942년 세계의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의 보고서에서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을 소득보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그 아래로는 사회보험에서 포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공부조를 보완책으로 깔고, 그 위로는 사적연금을 통하여 부족한 급여수준을 보충토록 권고하고 있다.

둘째, 소득보장제도의 설계와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선택은 財源調達方法에 있어서 保險方式과 租稅方式의 선택이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보험방식은 대상의 보편주의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방식은 대상의 선별주의와 결합되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방식은 실제로 대상의 보편주의를 가능케 한 혁신적 고안물로 여겨지고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택은 保障水準과 관련한 것이다. 공적 노인 소득보장 수준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노인의 貧困을 해소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시 生活水準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貧困線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에 있는 노인의 생활수준을 빈곤선으로 끌어올려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빈곤계층인 노인 소득보장의 핵심목표 중 하나이다. 후자는 노인의 勤勞時期 生活水準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연령기의 노인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상대적인 소득보장 개념인 適正 所得代替率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성숙에 따른 노인 소득보장의 또 다른 핵심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노령계층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 및 3개 특수직역연금 등 公的年金,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령계층을 위한 敬老年金, 최종안전망으로서 극빈층을 위한 公共扶助制度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령계층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간에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선별적인 대상에 대하여 공공부조 중심으로 갈 것인지, 혹은 보편적인 대상에 대하여 공적연금 중심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公的年金을 통하여 노령소득보장의 1次的 安全網을 구축하고, 公共扶助를 통하여 最終的인 安全網을 구성하며, 敬老年金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계층을 위한 補完的 制度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공적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실제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공적 연금이 보편적인 1차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도 공적연금의 성숙단계에 맞추어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段階인 공적연금의 미성숙 단계에서는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적연금을 통한 1차적 소득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노령계층은 여전히 빈곤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공공부조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노령계층이 현재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지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공부조의 지급자격기준에도 부적합하여 배제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이 완전히 성숙하기도 전에 소멸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段階인 공적연금의 성숙기에는 공적연금이 1차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후기노령계층의 경우 공적연금의 지급률이 저조할 것이므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이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3段階인 공적연금의 완숙기에는 공적연금이 전 노령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1차적 안전망으로 완전히 정착되고,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은 본래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3. 老人 對象特性別 所得保障 戰略

노인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年齡階層別로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창업 등의 지원에 주력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은 공적·사적 소득원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所得階層別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경로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일반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및 사적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토록 한다.

性別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그 수도 많고 낮은 소득수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소득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 소득자 중심의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의 임의가입을 적극 권장하거나 개인연금에의 세제혜택을 통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職域別로는 피용자와 자영자를 구분하여 소득보장 전략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용자는 근로정년이 확실한 반면, 자영자는 정해진 정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용자는 조기퇴직 및 정년에 대비하여 기업연금 등을 공적연금 개시전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생애주기상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장수준에 있어서도 자영자는 건강이 지탱하는 한 근로소득을 병행하여 가질 수 있으므로 보장수준에 있어서도 피용자보다 낮아도 된다. 또한, 자영자는 근로활동기에도 현금 유동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저부담-저급여를 선호할 것이고, 피용자는 자영자보다는 높은 부담이 가능하고 노후에 보다 높은 급여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직역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잘 반영하여 연금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第 3 節 段階別 老人 所得保障 方案

단계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短期,

中期, 長期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노인 소득보장의 핵심 축인 公的年金의 成熟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1단계인 2000년대에는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未成熟 단계이며, 2단계인 2010년대에는 공적연금이 成熟段階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시기이나 제도도입 연령상 후기고령인구에게는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단계이다. 3단계인 2020년대에는 공적연금이 完全 成熟되어 모든 연령계층이 제도적으로 연금수급이 가능한 시기로, 公的年金이 노인 소득보장의 실질적인 核心軸으로 역할하도록 기대되는 시기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전략을 감안하되, 단계별 소득보장 전략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연령계층별·소득계층별 노인집단을 유형화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소득보장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연령계층별·소득계층별 유형은 〈表 6-1〉과 같으며, 1996년 가계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연령계층별·소득계층별 노인 분포는 〈表 6-2〉와 같다.

〈表 6-1〉 年齡階層別·所得階層別 老人集團 類型

		연령		
		60~64세	65~74세	75세 이상
소득 수준	저층: 1~2분위	A	B	C
	중층: 3~6분위	D	E	F
	고층: 7~10분위	G	H	I

〈表 6-2〉 年齡階層別·所得階層別 老人數 및 構成比

(단위: 명, %)

			연령			전체
			60~64세	65~74세	75세 이상	
구 성 원	소득 수준	저층: 1~2분위	874	1,708	728	3,310
		중층: 3~6분위	792	534	78	1,404
		고층: 7~10분위	830	324	24	1,178
	전체		2,496	2,566	830	5,892
구 성 비	소득 수준	하층: 1~2분위	14.8	29.0	12.4	56.2
		중층: 3~6분위	13.4	9.1	1.3	23.8
		고층: 7~10분위	14.1	5.5	0.4	20.0
	전체		42.4	43.6	14.1	100.0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계별로 객관적인 사회적 여건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공·사 역할분담에 의한 소득보장 전략을 수립하고, 연령계층별·소득계층별 집단특성별로 소득보장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여건으로는 노령화율, 노인부양률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수요자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공적 소득보장의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적연금 수급률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가족의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구조 및 가족이전소득 변화에 대한 전망자료를 제시코자 하였으나, 자료의 제약상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전소득 의존도의 점차적인 감소 경향이 뚜렷하고, 노인의 의식도 가족부양형에서 사회보장형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공적 연금의 성숙과 함께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1. 短期(2001~2010년) 老人 所得保障 方案

가. 2001~2010년 期間의 特徵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써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1.48에 불과한 저출산율로 인하여 고령화 속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중위인구추계에 따르면, 2001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7.4%이며, 노인부양률은 10.5%로 나타나고, 2005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8.7%이며, 노인부양률은 12.3%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9.9%이며, 노인부양률은 14.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에 근로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2010년에는 근로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변화함으로써 사회적 노령인구 부양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表 6-3〉 老齡人口 및 扶養率(2001~2010)

(단위: 명, %)

	60세이상 노령인구 (A)	65세이상 노령인구 (B)	A/전체 인구	B/전체 인구	A/15~59 근로인구	B/15~64 근로인구
2001	5,412,033	3,543,241	11.4	7.4	16.9	10.5
2002	5,631,685	3,718,408	11.7	7.7	17.5	10.9
2003	5,829,635	3,897,485	12.0	8.0	18.1	11.4
2004	6,000,347	4,076,745	12.3	8.4	18.5	11.9
2005	6,161,611	4,252,919	12.5	8.7	18.9	12.3
2006	6,341,873	4,434,227	12.8	9.0	19.4	12.8
2007	6,554,624	4,615,962	13.2	9.3	19.9	13.3
2008	6,781,462	4,776,175	13.5	9.5	20.5	13.6
2009	6,999,377	4,909,351	13.9	9.8	21.1	13.9
2010	7,200,934	5,032,146	14.2	9.9	21.6	14.2

資料: 통계청, 인터넷 자료, 2000. 12.

2001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72만 3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5만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1만 6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5만 1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93만 9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1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5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57만 5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8만 8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2만 6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5만 7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184만 6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58만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5만 4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4만 1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6만 3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293만 8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40.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6-4〉 公的年金 受給者 및 受給率(2001~2010)

(단위: 명, %)

	국민연금 (천명)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총연금 수급자(A)	A/60+노인 인구
2001	723	149,881	15,606	50,809	939,296	17.4
2002	919	165,068	18,105	52,325	1,154,498	20.5
2003	1,108	171,346	20,714	53,887	1,353,947	23.2
2004	1,283	179,026	23,376	55,495	1,540,897	25.7
2005	1,575	187,789	26,059	57,151	1,845,999	30.0
2006	1,774	197,999	28,827	58,857	2,059,683	32.5
2007	2,006	209,963	31,693	60,613	2,308,269	35.2
2008	2,253	223,375	34,742	62,422	2,573,539	37.9
2009	2,413	237,897	37,905	64,285	2,753,087	39.3
2010	2,580	254,080	41,162	63,391	2,938,633	40.8

資料: 국민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 내부자료』, 2000.

김용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추계자료』, 1999.

#### 나. 所得保障 戰略

1단계는 私的扶養의 역할이 공적부양보다 더 크고 강조되는 시기이다. 과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거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생활비 보조가 노인의 주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적연금이 아직 미성숙하고 노인계층 중 연금수급자수도 아직 미미하고, 그 수준도 주소득원으로 삼기엔 미흡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최종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는 여전히 상당수의 빈곤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로연금은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로 유지된다면 후기고령인구의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사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다. 老人 集團特性別 所得保障 戰略

低所得層: 60~64세의 저소득층(A그룹)은 건강한 경우에는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주소득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건강하지 않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호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B, C그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이 주소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인이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 모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인에게 생활비 보조 등의 사적이전소득도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층 그룹의 주요 소득보장방안이 될 것이다.

中所得層: 60~64세의 중소득층(D그룹) 역시 일자리 알선이 주요한

소득보장 전략이 될 것이며, 65세 이상 중소득층(E, F그룹)은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으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중소득층의 노인계층은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高所得層: 60~64세의 고소득층(G그룹)은 고위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컨설팅, 통역 등 전문직종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며, 65세 이상 고소득층(H, I 그룹)은 자산소득이 주소득원이 될 것이며,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는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이 될 것이다.

## 2. 中期(2011~2020년) 老人 所得保障 方案

### 가. 2011~2020년 期間의 特徵

통계청의 중위인구추계에 따르면, 2011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10.2%이며, 노인부양률은 14.5%로 나타나고, 2015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11.3%이며, 노인부양률은 16.1%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13.2%이며, 노인부양률은 18.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1년에 근로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2020년에는 근로인구 5.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변화함으로써 사회적 노령인구 부양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表 6-5〉 老齡人口 및 扶養率(2011~2020)

(단위: 명, %)

	60세 이상 노령인구 (A)	65세 이상 노령인구 (B)	A/전체 인구	B/전체 인구	A/15~59 근로인구	B/15~64 근로인구
2011	7,405,931	5,171,258	14.6	10.2	22.1	14.5
2012	7,637,203	5,339,810	14.9	10.5	22.7	14.9
2013	7,888,008	5,520,523	15.4	10.8	23.4	15.3
2014	8,173,551	5,691,772	15.9	11.1	24.3	15.7
2015	8,511,622	5,846,461	16.5	11.3	25.3	16.1
2016	8,877,279	6,003,652	17.1	11.6	26.5	16.5
2017	9,256,513	6,185,193	17.8	11.9	27.7	16.9
2018	9,660,147	6,384,824	18.5	12.2	29.0	17.5
2019	10,089,475	6,617,166	19.3	12.7	30.5	18.1
2020	10,527,674	6,899,269	20.1	13.2	32.1	18.9

資料: 통계청, 인터넷 자료, 2000. 12.

2011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75만 7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7만 1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4만 5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6만 3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313만 5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4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351만 8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34만 7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6만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5만 9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398만 4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46.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497만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45만 7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8만 2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5만 5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556만 4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5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6-6〉 公的年金 受給者 및 受給率(2011~2020)

(단위: 명, %)

	국민연금 (천명)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총연금 수급자(A)	A/60+노인 인구
2011	2,757	270,665	44,539	62,510	3,134,714	42.3
2012	2,959	288,009	47,978	61,641	3,356,628	44.0
2013	3,068	306,641	51,639	60,785	3,487,065	44.2
2014	3,269	326,635	55,603	59,940	3,711,178	45.4
2015	3,518	347,363	59,844	59,106	3,984,313	46.8
2016	3,777	367,462	64,412	58,285	4,267,159	48.1
2017	4,058	389,443	68,969	57,475	4,573,887	49.4
2018	4,307	411,442	73,501	56,676	4,848,619	50.2
2019	4,642	435,077	77,975	55,888	5,210,940	51.6
2020	4,970	457,246	82,439	55,162	5,564,847	52.9

資料: 국민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 내부자료』, 2000  
 김용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추계자료』, 1999.

#### 나. 所得保障 戰略

2단계는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 중심이동이 되고 공적부양의 역할이 본격화되고 강조되는 시기이다. 공적연금이 성숙함에 따라 노령계층의 주소득원으로 공적연금이 정착되게 된다. 반면, 후기고령계층은 공적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계층이므로 경로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적연금이 1차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빈곤노인이 감소함으로써 공공부조는 최종안전망으로서의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사적연금 등에 의한 사적보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 다. 老人 集團特性別 所得保障 戰略

低所得層: 저소득층 노인의 규모가 이전 단계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0~64세의 저소득층(A그룹)은 건강한 경우에는 일

자리 알선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주소득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건강하지 않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호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B, C그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이 주소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인이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 모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인에게 생활비 보조 등의 사적이전소득도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층 그룹의 주요 소득보장방안이 될 것이다.

中所得層: 60~64세의 중소득층(D그룹) 역시 일자리 알선이 주요한 소득보장 전략이 될 것이며, 65~74세 중소득층(E 그룹)은 공적연금소득이 주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75세 이상 중소득층은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의 역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후기고령계층은 공적연금이 혜택이 미치지 못하여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모습일 것이지만, 65~74세 중소득층은 공적연금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高所得層: 60~64세의 고소득층(G그룹)은 고위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컨설팅, 통역 등 전문직종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며, 65~74세 고소득층(H, I 그룹)은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이 주소득원이 될 것이며, 75세 이상 고소득층은 자산소득이 주소득원이 될 것이다.

### 3. 長期(2021年 以後) 老人 所得保障 方案

#### 가. 2021 以後 期間의 特徵

통계청의 중위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13.7%이며, 노인부양률은 19.8%로 나타나고, 2025년의 65세 이상 노령

화율은 16.3%이며, 노인부양률은 24.3%로 나타나고 있으며, 2030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19.3%이며, 노인부양률은 26.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21년에 근로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2030년에는 근로인구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변화함으로써 사회적 노령인구 부양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表 6-7〉 老齡人口 및 扶養率(2021~2030)

(단위: 명, %)

	60세이상 노령인구 (A)	65세이상 노령인구 (B)	A/전체 인구	B/전체 인구	A/15~59 근로인구	B/15~64 근로인구
2021	10,952,006	7,207,071	20.9	13.7	33.6	19.8
2022	11,351,519	7,527,084	21.6	14.3	35.1	20.8
2023	11,727,307	7,870,081	22.3	15.0	36.5	21.9
2024	12,080,598	8,237,576	22.9	15.6	37.9	23.1
2025	12,412,276	8,613,115	23.5	16.3	39.2	24.3
2026	12,723,633	8,974,072	24.1	17.0	40.5	25.5
2027	13,020,585	9,309,324	24.7	17.6	41.7	26.7
2028	13,322,156	9,618,792	25.2	18.2	43.0	27.8
2029	13,639,330	9,903,455	25.8	18.8	44.5	28.8
2030	13,962,138	10,164,832	26.5	19.3	46.0	29.8

資料: 통계청, 인터넷 자료, 2000. 12.

2021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532만 9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48만 1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8만 6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5만 4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21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5,951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5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5년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668만 1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7만 3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10만 3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5만 2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740만 8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59.7%를 차지할 것으로

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810만 5천명,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66만 5천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11만 6천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4만 9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30년의 총공적연금 수급자는 893만 4천명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6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6-8〉 公的年金 受給者 및 受給率(2021~2030)

(단위: 명, %)

	국민연금 (천명)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총연금 수급자(A)	A/60+노인 인구
2021	5,329	480,993	86,911	54,446	5,951,350	54.3
2022	5,691	503,448	91,344	53,738	6,339,530	55.8
2023	5,988	528,170	95,582	53,041	6,664,793	56.8
2024	6,369	549,547	99,550	52,352	7,070,449	58.5
2025	6,681	572,550	103,175	51,672	7,408,397	59.7
2026	7,000	592,519	106,459	51,001	7,749,979	60.9
2027	7,313	614,248	109,269	50,338	8,086,855	62.1
2028	7,535	631,061	111,685	49,684	8,327,430	62.5
2029	7,855	650,416	113,844	49,039	8,668,299	63.6
2030	8,105	664,833	115,874	48,782	8,934,489	64.0

資料: 국민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 내부자료』, 2000  
 김용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추계자료』, 1999.

#### 나. 所得保障 戰略

3단계는 공적부양으로 보편적인 전체 노령계층에 대하여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사적연금 등에 의한 사적보장의 활성화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강조되는 단계이다.

전체 노령계층에 있어 공적연금이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게 되며, 추가적인 욕구에 따라 사적연금 등에 의한 사적연금이 부소득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의한 조

밀한 1차적 소득안전망의 구축으로 빈곤노인은 최소화되므로 공공부조는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작은 규모의 노인만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이 성숙하게 됨에 따라 그 역할이 상당부분 감소하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경계선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계층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경로연금은 계속 존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최저보증연금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다. 老人 集團特性別 所得保障 戰略

低所得層: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제 기능을 한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규모 자체가 상당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단계와 마찬가지로 60~64세의 저소득층(A그룹)은 건강한 경우에는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주소득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건강하지 않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호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B, C그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이 주소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中所得層: 60~64세의 중소득층(D그룹) 역시 일자리 알선이 주요한 소득보장 전략이 될 것이며, 65세 이상 중소득층(E, F그룹)은 공적연금이 주소득원으로 역할을 하며, 사적연금 등이 부소득원으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高所得層: 60~64세의 고소득층(G그룹)은 고위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컨설팅, 통역 등 전문직종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며, 65세 이상 고소득층(H, I 그룹) 역시 공적연금, 사적연금, 자산소득이 주소득원이 될 것이다.

## 第 4 節 老人 所得保障制度別 改善方案

### 1. 公的年金制度

#### 가. 保障範圍

##### 1) 公的年金의 1次 社會安全網 役割 強化

공적연금 급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적연금이 명실공히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자를 최소화하여 연금수급자격을 가능한 한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연금제도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도 실업 등의 이유로 400만을 넘는 사람들이 납부유예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며, 도시지역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율은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후소득을 1차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부유예자를 최소화하고, 보험료 납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50% 미만이므로 대다수의 여성이 독자적 연금권을 가지기 어렵다. 1998년 법개정으로 이혼시 연금분할권이 국민연금법내에 도입되었지만, 재혼시 급여권을 상실하는 등 제한적 조치가 있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연금권으로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또한 파생적 연금권인 유족연금도 20년 가입기준 기본연금액의 40~60%이므로 실질적인 급여율은 12~18% 수준으로 미미하다. 또한 세대주 연금으로서 가급연금도 월 12,500원으로 연 15만원에 불과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1인 1연금의 독자적 연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

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보험료가 낮을 때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한 조속히 임의가입을 홍보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2) 公的年金의 保險料 免除 크레딧 制度의 導入

육아 혹은 개호수발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고, 보험료 각출기록으로 그 기간의 1/3정도를 인정해 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 보험료 면제 크레딧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의무병역을 하는 군인 등도 연금크레딧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保障水準

#### 1) 公的年金의 持續可能的 發展을 위한 受給-負擔構造 均衡化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부담구조의 균형을 꾀하여야 한다.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몇 번의 제도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도록 되어 있다.

공적연금이 건실한 제도로 유지되어야 보편적인 1차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적연금제도의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수급-적정부담 구조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2) 國民年金의 標準所得等級 下限線의 上向 調整

현행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은 22만원을 하한선으로, 360만원을 상

한선으로 4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균소득은 130만원 정도이다. 국민연금의 하한선 22만원은 최저임금은 물론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하한선은 평균소득의 17% 수준에 불과한데, 외국의 공적연금 부과소득의 하한선을 평균소득의 50%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소득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므로 가입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적절한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입자에게도 하한선의 상향조정이 유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22만원을 평균소득의 1/3 수준인 4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敬老年金制度

### 가. 保障範圍

#### 1) 敬老年金の 役割 再定立: 老齡手當과 無醜出年金 分離

현행 경로연금은 1997년 7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을 흡수통합하고 그 급여대상을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까지 확대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노인계층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현 노령계층 중에 저소득층이면서 공공부조 수급범위에는 포함되지 못하여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을 위한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경로연금은 공공부조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노령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소요를 충당하도록 하는 부가수당으로서의 노령수당의 성격과 함께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각출연금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어 제도의 운용 및 개선방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경로연금의 성격 중 1997년 경로연금 도입당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 죽게되면 경로연금이 수행하던 공적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역할도 소멸되는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노령수당적 성격만 남게 되고, 그것은 공공부조로 다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로연금의 상이한 성격의 급여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경로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노령수당 성격은 다시 분리하여 공공부조내 부가수당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무각출 노령연금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敬老年金의 繼續的 存置 必要

경로연금은 지적인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제도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공부조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모두 제외되는 대상들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사람들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여 최저보증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적부양부담이 미래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일정정도의 세대간 재분배를 통한 미래세대의 부담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국민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세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한 급여부분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을 미래세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3) 敬老年金の 受給者 選定の 合理化

경로연금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공적연금 수급자가 아니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기존 노인계층을 위한 보완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과 정책우선순위상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수준이 차상위 저소득계층인지를 실제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확한 소득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행정일선에서 대상자 선정 역할을 담당하는 요원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과중으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에 업무노력을 투입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선정기준 자체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차등하지 않고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상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며, 따라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선

정하는 것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2000년에도 원래 배정하려고 한 인원내 훨씬 못미치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주어진 대상자 선정 지침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保障水準: 敬老年金の 給與水準 上向調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예산상의 제약과 본인이 각출을 하는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액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급여수준이 제약을 받고 있다. 본인이 기여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때, 현재 특례노령연금 수준이 5만 6천원 정도이므로 그보다 낮은 5만원정도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조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의 지급대상을 조정하여 그 예산을 경로연금 급여수준 현실화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교통수당 예산의 일부를 경로연금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公共扶助制度

#### 가. 保障範圍: 扶養義務者 規定의 彈力的 適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법적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고려와 탄력적인 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나. 保障水準: 推定所得의 合理化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추정소득의 임의적인 부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깎이고 결과적으로 최저생활수준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정소득의 부과가 객관적 근거와 현실성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미발간보고서), 200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00.
- 국민복지기획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1995.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0.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 개선 자료집』, 1998.
- 국민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 내부자료』, 2000.
- 권문일, 『급여의 적절성』,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미발간보고서), 2000.
- 김미곤, 『1999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김용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추계자료』, 1999.
- 김용하, 『제3안: 일체형 다층모형』, 『한국의 공·사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국제회의 자료집』, 2000.
- 김용하·석재은, 『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pp.89~118.
- 박찬용 외,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석재은, 『소득보장』,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p.89~138.
- \_\_\_\_\_, 『노인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pp.51~78.
- \_\_\_\_\_,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징과 발전방안』,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000, pp.83~116.

- 손병돈,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_\_\_\_\_,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9호, 1999.
- 원종욱,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6/7.
- 윤석명 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윤병식, 『사회보험 관리운영 평가지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진재문,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와 생활보호 수급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통계청, 『1996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1997.
- \_\_\_\_\_, 『1999 도시가계조사자료』, 2000.
-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高齡者の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1997, 中央法規.
- 坂本重雄, 『社會保障改革: 高齡社會의 年金, 醫療, 介護』, 勁草書房, 1997.
- Axel Borsch-Supan, "Retirement Income: Level, Risk, and Substitution among Income Components," *NBER Working Paper*.
- Bengtsson, T and Fridlitzius, "Public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s an Old-Age Pension System: A Historical Interlude?", in J. Ermisch and N. Ogawa(eds.),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pp.198~215
- Cox, Donald and George Jakubson,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7, 1995. pp.129~167.

- Cousins, Chris et al(eds.), *The pensioners' Income Series 1997/8*,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in the United Kingdom, Crown copyright, 2000.
-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Changing Welfare State: Pensioner Incomes*,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in the United Kingdom, Crown copyright, 2000.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Retirement Income Opportunities in an Aging America: Income Level and Adequacy*, 1982.
- Esping-Andersen, Gosta, "Welfare States at the Century: the Impact of Labour Market, Family, and Demographic Change," *Beyond 2000: the New Social Policy Agenda*, OECD, 1996, pp.71~98.
- Farns van Dijk, "Private Support and Social Secur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 pp.345~371.
- Huck-ju, Kwon, "*Income Transfers to Elderly in Korea and Taiwan*", mimeo, 2000.
- OECD, *Aging in OECD Countries: A Critical Policy Challenge*, Social Policy Studies No. 20, 1998.
- \_\_\_\_\_,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ing Society*, 1998.
- Rainwater, Lee, Martin Rein, and Joseph Schwartz, *Income Packaging in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Income*, Clarendon Press, 1986.
- Michell, Deborah,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Avebury, 1991.
- Rein, Martin and John Turner,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52, 1999. 3. pp.93~106.
- Saraceno, Chiara, Family Change, "Family Policies and the Restructuring of Welfare," *Beyond 2000: the New Social Policy Agenda*, OECD, 1996, pp.99~127.

## 附 錄

- I. 老人의 對象特性別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 189
- II. 老人의 消費支出 特性 / 204

## I. 老人의 對象特性別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 1998年 保社研 老人生活實態 調查資料를 中心으로

노인의 소득원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하 보사연)에서 1998년도에 전국적으로 老人生活實態 및 福祉欲求를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한 것이다. 보사연의 1998년 노인생활실태조사는 1994년에 보사연에서 조사한 바 있는 노인생활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서, 1998년 1995년 人口住宅總調查 조사구중 157개 標本調查地域을 추출하여 1998. 4. 13~5. 31에 걸쳐 9,335가구의 家口調查와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의 個人調查가 이루어졌다.

#### 1. 老人의 所得水準

노인이 속한 가구의 所得水準을 살펴보면, 40만원 미만이 31.6%, 40~80만원 이하가 26.2%, 80~150만원이 23.3%, 150~250만원이 13.8%, 250만원 이상이 5.1%으로 나타났다.

〈附表 1〉 老人家口の 所得水準 分布(n=2,197)

전체	40만원미만	40~80만원미만	80~150만원미만	150~250만원미만	250만원이상
100.0	31.6	26.2	23.3	13.8	5.1

또한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主觀的 認識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 혹은 약간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11.2%에 불과한 반면, 약간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49.9%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

〈附表 2〉 老人의 經濟狀況에 대한 主觀的 認識(n=2,219)

전체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0.0	1.7	9.5	38.9	28.4	21.5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의 과반수 이상 노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 노령계층이 家族扶養體系에서 公的扶養體系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충분한 가족부양도, 충분한 공적부양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 老人의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노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所得源에 대하여 複數應答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0.0%가 자녀 등으로부터의 私的移轉所得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公的移轉所得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公的所得保障制度의 역할의 미미함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公的年金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 외 勤勞所得은 전체 응답자의 32.3%가, 자산소득은 전체 응답자의 20.3%가 각각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平均所得은 약 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平均勤勞所得이 12.4만원으로 30.9%, 平均資産所得이 8.2만원으로 20.4%, 平均私的移轉所得이 15.4만원으로 38.4%, 平均公的移轉所得이 4.0만원으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소득 중 소득원별 비중은 勤勞(work): 市場(market): 家族(family): 國家(state)의 역할이 3: 2: 4: 1의 비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공·사로 이분하여 정리하여 보면, 노인 스스로 근로를 통하여, 혹은 근로시에 저축한 자산소득을 통하여, 혹은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통하여 私적으로 조달한 비중이 전체 노인소득 중 90%에 달하는 반면, 公적으로 조달한 비중은 10%로 미미한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소득을 所得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원의 平均所得額을 살펴보면, 資産所得이 50.8만원으로 가장 높고, 勤勞所得이 38.7만원, 公的移轉所得이 37.1만원, 私的移轉所得이 가장 적은 20.4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公的年金을 수급하는 경우(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의 평균액은 98.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附表 3〉 우리 나라 老人(65세 이상)의 所得源 構成(1998)

(단위: %, 만원)

소득원	소득원비율 <sup>1)</sup>	평균소득액 <sup>2)</sup>	평균소득액 <sup>3)</sup>	소득액비중 <sup>4)</sup>
전체소득	100.0	42.0	40.1	100.0
근로소득	32.2	38.7	12.4	30.9
자산소득	소계	20.3	50.8	8.2
	부동산수입	11.1	40.0	4.5
	금융수입	5.7	52.7	3.0
	퇴직금	0.8	135.0	2.6
	개인연금	0.2	43.8	0.7
사적이전	소계	90.0	20.4	15.4
	비동거자녀보조	65.0	18.1	11.8
	동거자녀보조	23.2	14.6	3.4
	친척보조	1.1	9.1	0.1
	단체보조	0.6	16.1	0.1
공적이전	소계	10.9	37.1	4.0
	공적연금	2.6	98.7	2.6
	국가보조	8.3	17.6	1.5

註: 1)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복수응답 비율임(전체대상: 2,372case)  
 2) 평균소득액=해당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균소득액(0원제외)  
 3) 평균소득액=조사대상 모든 사람의 평균소득액(0원 포함)  
 4) 소득액 비중=해당 소득원의 평균소득액 / 전체 평균소득액 × 100

가. 家口類型別 老人의 所得源 構成

가구유형별로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소득액은 子女同居家口가 34.4만원, 老人夫婦家口가 55.3만원, 老人獨身家口가 31.1만원, 其他老人家口가 37.3만원으로 나타났다.

子女同居家口인 경우, 勤勞所得 비중이 자녀비동거가구보다 낮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동거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농어촌지역에 자녀비동거노인가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중 私的移轉所得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附表 4〉 우리 나라 老人(65歲 以上)의 家口類型別 所得源 構成(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자녀동거가구 (n=1153)	노인부부가구 (n=663)	노인독신가구 (n=425)	기타노인가구 (n=131)
전체소득	34.4 (100.0)	56.3 (100.0)	31.1 (100.0)	37.3 (100.0)
근로소득	8.1 (23.5)	21.8 (38.7)	10.6 (34.1)	9.1 (24.4)
자산소득	7.4 (21.5)	12.8 (22.7)	4.0 (12.9)	6.9 (18.5)
부동산수입	3.9	6.6	3.0	3.5
금융수입	2.7	4.8	1.0	3.4
퇴직금	0.5	1.4	0.0	0.0
개인연금	0.2	0.0	0.03	0.0
사적이전	16.3 (47.4)	15.5 (27.5)	12.1 (38.9)	17.3 (46.4)
비동거자녀보조	9.3	15.1	11.7	16.5
동거자녀보조	6.9	0.0	0.0	0.6
친척보조	0.02	0.1	0.4	0.1
단체보조	0.02	0.3	0.07	0.06
공적이전	2.6 (7.6)	6.3 (11.2)	4.3 (13.8)	4.0 (10.7)
공적연금	1.9	5.1	0.6	2.1
국가보조	0.7	1.2	3.7	1.9

## 나. 年齡階層別 老人의 所得源 構成

연령계층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年齡이 높아질수록 소득액의 절대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65~69세 연령층의 평균소득액은 53.8만원, 70~74세 연령층은 40.0만원, 75~79세 연령층은 27.8만원, 80세 이상 연령층은 19.7만원으로 年齡과 정비례하여 所得의 絕對水準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年齡이 높아질수록 소득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각의 소득원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所得의 경우, 年齡이 높아질수록 근로능력이 상실되므로 소득액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公的移轉所得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오히려 낮은 연령계층인 65~69세 연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75세 이상의 고연령 노령계층은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私的移轉所得의 경우에는 絕對額은 年齡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比重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오히려 증가하여 80세 이상 연령계층이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은 50.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附表 5〉 우리 나라 老人(65歲 以上)의 年齡階層別 所得源 構成(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65~69세 (n=903)	70~74세 (n=693)	75~79세 (n=428)	80세 이상 (n=348)
전체소득	53.8 (100.0)	40.0 (100.0)	27.8 (100.0)	19.7 (100.0)
근로소득	21.0 (39.0)	11.0 (27.5)	5.0 (18.0)	2.3 (11.7)
자산소득 소계	10.1 (18.8)	7.2 (18.0)	8.4 (30.2)	5.4 (27.4)
부동산수입	5.4	4.0	4.3	3.1
금융수입	3.6	2.0	4.1	2.4
퇴직금	1.1	0.8	0.0	0.0
개인연금	0.02	0.3	0.0	0.0
사적이전 소계	16.9 (31.4)	17.4 (43.5)	13.3 (47.8)	10.0 (50.8)
비동거자녀보조	12.3	13.5	10.8	8.2
동거자녀보조	4.3	3.7	2.4	1.7
친척보조	0.2	0.1	0.04	0.1
단체보조	0.1	0.1	0.03	0.04
공적이전 소계	5.8 (10.8)	4.5 (11.3)	1.1 (4.0)	2.0 (10.2)
공적연금	4.4	3.1	0.1	0.0
국가보조	1.5	1.4	1.0	2.0

다. 所得階層別 老人의 所得源 構成

소득계층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家口의 所得階層別로 노인의 소득수준도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액은 13.4만원, 소득 2분위계층은 27.7만원, 소득 3분위계층은 43.8만원, 소득 4분위계층은 47.7만원,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계층은 57.2만원으로, 가구의 所得階層에 비례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수준의 차이는 소득원 중 資產所得에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계층은 0.8만원인데 비하여 소득 5분위계층은 21

만원이며, 그 비중도 36.7%에 달하고 있다.

한편 私的移轉所得의 경우 絶對額은 소득 3분위계층이 19.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그 比重에 있어서는 소득 2분위계층이 가장 높은 54.4%로 나타났다. 이는 高所得階層은 노인도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적이전을 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절대액 및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가장 소득이 낮은 低所得階層의 경우에는 노인의 욕구는 크지만 그 가족 역시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여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비교적 가족의 소득수준이 괜찮은 소득 3분위계층의 私的移轉所得額이 가장 높고, 그 依存度는 소득 2분위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진다.

公的移轉所得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 소득 5분위계층이 9.7만원으로 그 絶對額이 가장 높았으나, 그 比重에 있어서는 소득 1분위계층인 저소득층이 23.9%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附表 6〉 우리 나라 老人(65歲 以上)의 所得階層別 所得源 構成(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소득1분위 (n=306)	소득2분위 (n=421)	소득3분위 (n=608)	소득4분위 (n=553)	소득5분위 (n=453)
전체소득	13.4(100.0)	27.7(100.0)	43.8(100.0)	47.7(100.0)	57.2(100.0)
근로소득	3.8 (28.4)	8.6 (31.0)	17.5 (40.0)	15.9 (33.3)	11.5 (20.1)
자산소득	0.8 (6.0)	2.6 (9.4)	5.1 (11.7)	10.2 (21.4)	21.0 (36.7)
부동산수입	0.7	2.1	3.6	5.2	9.7
금융수입	0.07	0.5	0.9	3.7	9.6
퇴직금	0.0	0.03	0.6	1.2	1.2
개인연금	0.0	0.0	0.02	0.0	0.5
사적이전	5.6 (41.8)	15.1 (54.4)	19.2 (43.8)	17.6 (36.9)	14.9 (26.1)
비동거자녀보조	5.2	14.6	16.6	11.3	9.1
동거자녀보조	0.1	0.4	2.5	5.6	6.5
친척보조	0.3	0.1	0.1	0.02	0.03
단체보조	0.1	0.03	0.04	0.3	0.0
공적이전	3.2 (23.9)	1.5 (5.4)	2.0 (4.6)	4.1 (8.6)	9.7 (17.0)
공적연금	3.2	1.5	0.5	3.0	9.1
국가보조	3.2	1.5	1.5	1.2	0.6

라. 性別 老人의 所得源 構成

성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男性은 58.7만원, 女性은 29.2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절대 소득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원별로도 그 絶對額은 모두 男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勤勞所得의 경우에도 남성은 23만원, 여성은 6.3만원으로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資産所得도 각각 12.4만원과 5.8만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公的移轉所得도 각각 6.1만원, 2.8만원으로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私的移轉所得의 경우에는 남성이 17.3만원, 여성이 14.3만원으로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한편, 소득원별 비중에 있어서, 男性은 勤勞所得이 가장 높은 39.2%의 비중을 보인 반면, 女性은 私的移轉所得이 가장 높은 49.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附表 7〉 우리 나라 老人(65세 이상)의 性別 所得源 構成(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남성 (n=874)	여성 (n=1498)
전체소득	58.7 (100.0)	29.2 (100.0)
근로소득	23.0 (39.2)	6.3 (21.6)
자산소득	12.4 (21.1)	5.8 (20.0)
부동산수입	6.3	3.4
금융수입	4.8	2.0
퇴직금	1.3	0.3
개인연금	0.02	0.2
사적이전	17.3 (29.5)	14.3 (49.0)
비동거자녀보조	13.3	10.9
동거자녀보조	3.6	3.3
친척보조	0.1	0.1
단체보조	0.2	0.03
공적이전	6.1 (10.4)	2.8 (9.6)
공적연금	4.8	1.3
국가보조	1.4	1.5

마. 地域別 老人의 所得源 構成

지역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大都市가 45.9만원, 中小都市가 42.6

만원, 農漁村이 32.9만원으로, 도시일수록 그 노인소득수준의 絶對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원별로 勤勞所得의 경우에는 農漁村이 그 절대액과 비중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都市의 노인이 대부분 停年이 있는 賃金勤勞者인데 반하여 農漁村의 경우 정년이 없는 自營業이므로 계속 근로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원의 경우에는 도시가 농어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附表 8〉 우리 나라 老人(65세 이상)의 地域別 所得源 構成(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대도시 (n=960)	중소도시 (n=547)	농어촌 (n=865)
전체소득	45.9 (100.0)	42.6 (100.0)	32.9 (100.0)
근로소득	11.9 (25.9)	7.4 (17.3)	16.2 (49.2)
자산소득	9.4 (20.5)	12.7 (29.8)	4.1 (12.5)
부동산수입	5.3	6.7	2.1
금융수입	2.7	5.9	1.7
퇴직금	1.2	0.1	0.4
개인연금	0.2	0.0	0.0
사적이전	18.2 (39.7)	17.8 (41.8)	10.6 (32.2)
비동거자녀보조	13.4	14.0	8.3
동거자녀보조	4.3	3.5	2.3
친척보조	0.2	0.1	0.02
단체보조	0.04	0.3	0.04
공적이전	5.6 (12.2)	4.7 (11.0)	1.9 (5.8)
공적연금	1.2	2.8	1.9
국가보조	1.3	1.8	1.4

### 3. 老人의 所得源 構成의 公·私 役割分擔 決定要因

#### 가. 研究假說

본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공·사 소득원별로 決定要因을 回歸分析하였으며, 公的移轉所得과 私的移轉所得간의 관계가 代替的 혹은 補完的 特性을 가지

능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노인 근로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근로소득 수준은 노인 근로능력의 측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며, 노인 자원의 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또한 욕구의 측면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회의 측면에서 정년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각각 근로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노인 자산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자산소득 수준은 노인의 자원의 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그러나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노인 사적이전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노인의 욕구측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여성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며, 가족의 자원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전문직 종사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4: 노인 공적이전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수준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수급자 집단에 따라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상이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노인의 자원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노인의 욕구측면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5: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의 관계**

-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공적이전소득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 노인의 공적연금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 노인의 공공부조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간 관계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치는 〈附表 9〉와 같다.

〈附表 9〉 變數說明 및 記述統計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n=2372)	표준편차	
근로소득	근로소득(고용, 자영) (단위: 만원)	12.44	29.19	
종속변수	자산소득 부동산수입+ 금융수입(저축·이자·증권 배당) + 퇴직금 + 개인연금 (단위: 만원)	8.24	36.10	
	사적이전소득 자녀이전소득(동거자녀·비동거자녀) + 친척보조 + 단체보조 (단위: 만원)	15.36	21.86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 국가보조 (단위: 만원)	4.02	20.13	
연령	노인의 연령	72.58	6.18	
자녀동거여부	비동거=0, 동거=1 더미변수	0.49	0.5	
건강상태	매우좋다=1, 좋은편이다=2, 보통이다=3, 약간나쁘다=4, 아주 나쁘다=5	3.85	1.72	
소득수준	노인소속가구의 소득수준	40.06	52.49	
독립변수	지역	도시=0, 농어촌=1 더미변수	0.36	0.48
	성별	남=0 여=1 더미변수	0.63	0.48
교육수준	글자모름=1, 글자해독=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전문대학=6 대 학교=7, 대학원이상=8	2.54	1.48	
전문직 종사여부	최장종사직업 전문직=0, 비전문직=1	0.92	0.28	

변수간 單純相關關係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원간에는 勤勞所得은 資産所得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私的移轉所得 및 公的移轉所得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資産所得은 私的移轉所得과는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私的移轉所得은 公的移轉所得과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勤勞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의 경우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수준, 지역, 교육수준의 경우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資産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건강상태,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

여부의 경우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녀동거여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私的移轉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건강상태,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 경우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의 경우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公的移轉所得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의 경우 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수준, 교육수준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附表 10 참조).

〈附表 10〉 變數間 相關關係分析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연령	자녀 동거 여부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지역	성별	교육 수준	전문직 종사 여부
근로소득	1.000											
자산소득	0.040**	1.000										
사적이전소득	-0.147*	-0.042**	1.000									
공적이전소득	-0.036**	0.003	-0.087*	1.000								
연령	-0.239*	-0.046**	-0.122*	-0.079*	1.000							
자녀동거여부	-0.144*	-0.024	0.040**	-0.069*	0.140*	1.000						
건강상태	-0.159*	-0.088*	-0.082*	-0.063*	0.219*	0.075*	1.000					
소득수준	0.509*	0.694*	0.273*	0.329*	-0.245*	-0.106*	-0.207*	1.000				
지역	0.097*	-0.086*	-0.164*	-0.079*	0.046**	-0.102*	0.045**	-0.104*	1.000			
성별	-0.276*	-0.087*	-0.066*	-0.080*	0.087*	0.119*	0.160*	-0.272*	-0.036**	1.000		
교육수준	0.248*	0.200*	0.196*	0.204*	-0.277*	-0.115*	-0.269*	0.435*	-0.212*	-0.445*	1.000	
전문직종사여부	-0.150*	-0.164*	-0.129*	-0.254*	0.045**	0.076*	0.169*	-0.347*	0.122*	0.288*	-0.545*	1.000

註: \* p< 0.001, \*\*p< 0.05

나. 老人의 所得源別 決定要因 分析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勤勞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은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勤勞所得 수준은 年齡이 낮을수록, 子女와 同居하지 않는 경우,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農漁村地域에 거주하는 경우, 男性일수록, 非專門職에 종사한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근로소득에 健康狀態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教育水準이 유의

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고, 연구가설과 달리 비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근로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근로인구의 상당수가 農漁村地域에서 농사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資産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소득수준, 성별, 교육수준, 전문직종사여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은 자산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資産所得 수준은 年齡이 높을수록,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女性일수록,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연구가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특히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산소득이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私的移轉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지역,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성별, 전문직종사여부는 사적이전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私的移轉所得 수준은 年齡이 낮을수록, 子女와 同居를 하는 경우,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경우, 노인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가설과 비교하여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의 활동반경이 넓고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사적이전소득이 크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 노인을 지원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액이 더 커진다는 점도 부담능력의 차원에서 일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액이 더 크다는 것, 노인의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다는 점은 가설과 상이한 부분이다.

公的移轉所得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수준,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이며,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 교육수준은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公的移轉所得은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女性인 경우, 專門職에 종사한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소득계층이 주수급자인 공적연금과 저소득계층이 주수급자인 국가보조라는 상이한 성격의 급여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당수가 모순된 결과들 속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所得水準이 높고 專門職에 종사한 경우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女性인 경우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附表 11 참조).

〈附表 11〉 老人의 所得源別 決定要因 分析

		β	SE	t	
근로소득	(상수)	49.678*	7.861	6.320	R <sup>2</sup> =0.318 D-W=1.535
	연령	-0.516*	0.087	-5.926	
	자녀동거여부	-2.966**	1.017	-2.917	
	건강상태	-0.473	0.304	-1.552	
	소득수준	0.259*	0.011	23.882	
	지역	8.146*	1.074	7.582	
	성별	-8.512*	1.173	-7.260	
	교육수준	-0.014	0.044	-0.319	
	전문직종사여부	4.775***	2.180	2.190	
자산소득	(상수)	-79.204*	8.202	-9.657	R <sup>2</sup> =0.515 D-W=1.346
	연령	0.704*	0.091	7.758	
	자녀동거여부	1.526	1.061	1.438	
	건강상태	0.310	0.318	0.976	
	소득수준	0.540*	0.011	47.700	
	지역	-1.659	1.121	-1.480	
	성별	5.562*	1.223	4.546	
	교육수준	-0.096***	0.046	-2.080	
	전문직종사여부	7.473*	2.275	3.285	
사적이전소득	(상수)	21.259**	6.750	3.149	R <sup>2</sup> =0.103 D-W=1.347
	연령	-0.177***	0.075	-2.366	
	자녀동거여부	2.878*	0.873	3.296	
	건강상태	-0.095	0.261	-0.363	
	소득수준	0.095*	0.009	10.166	
	지역	-5.176*	0.923	-5.610	
	성별	1.036	1.007	1.029	
	교육수준	0.099**	0.038	2.635	
	전문직종사여부	-0.388	1.872	-0.207	
공적이전소득	(상수)	8.226	6.106	1.354	R <sup>2</sup> =0.135 D-W=1.176
	연령	-0.019	0.068	-0.176	
	자녀동거여부	-1.438	0.790	-1.820	
	건강상태	0.257	0.236	1.088	
	소득수준	0.107*	0.008	12.663	
	지역	-1.311	0.835	-1.571	
	성별	1.914***	0.911	2.102	
	교육수준	0.010	0.034	0.292	
	전문직종사여부	-11.859*	1.694	-7.002	

註: \* p <0.001, \*\* p <0.01, \*\*\* p <0.05

다. 老人의 私的移轉所得 및 公的移轉所得間 關係 分析: 代替 혹은 補完關係

노인의 私的移轉所得과 公的移轉所得간에는 代替關係가 있는지 혹은 補完關係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 공적이전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령 등 8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또한 그 역으로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변인으로,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을 공적연금과 국가보조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여 보았을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는 代替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이 公的所得移轉이 미미한 국가에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私的移轉所得이 주요한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附表 12 참조).

〈附表 12〉 老人의 私的移轉所得과 公的移轉所得의 關係

		$\beta$	SE	t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상수)	23.178*	6.604	3.510	R <sup>2</sup> =0.143 D-W=1.365
	공적이전소득	-0.232*	0.022	-10.438	
	연령	-0.180***	0.073	-2.457	
	자녀동거여부	2.544**	0.855	2.977	
	건강상태	-0.035	0.256	-0.137	
	소득수준	0.119*	0.009	12.691	
	지역	-5.480*	0.903	-6.071	
	성별	1.480	0.986	1.502	
	교육수준	0.102**	0.037	2.757	
	전문직종사여부	-3.141	1.850	-1.698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상수)	23.385*	6.646	3.519	R <sup>2</sup> =0.132 D-W=1.366
	공적연금소득	-0.212*	0.024	-8.897	
	연령	-0.189**	0.074	-2.569	
	자녀동거여부	2.892*	0.859	3.366	
	건강상태	-0.052	0.257	-0.203	
	소득수준	0.115*	0.009	12.160	
	지역	-5.368*	0.908	-5.912	
	성별	1.414	0.992	1.426	
	교육수준	0.107**	0.037	2.863	
	전문직종사여부	-3.016	1.865	-1.617	

〈附表 12〉 계속

		$\beta$	SE	t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상수)	20.736**	6.715	3.088	R <sup>2</sup> =0.113 D-W=1.346
	국가보조소득	-0.299*	0.058	-5.156	
	연령	-0.163***	0.074	-2.195	
	자녀동거여부	2.427**	0.873	2.781	
	건강상태	-0.078	0.260	-0.300	
	소득수준	0.098*	0.009	10.582	
	지역	-5.298*	0.918	-5.771	
	성별	1.076	1.002	1.074	
	교육수준	0.093***	0.038	2.468	
	전문직종사여부	-0.233	1.862	-0.125	
종속변수: 공적이전소득	(상수)	12.305***	5.984	2.056	R <sup>2</sup> =0.173 D-W=1.194
	사적이전소득	-0.190*	0.018	-10.438	
	연령	-0.045	0.066	-0.687	
	자녀동거여부	-0.891	0.774	-1.151	
	건강상태	0.239	0.231	1.035	
	소득수준	0.125*	0.008	14.812	
	지역	-2.294**	0.822	-2.792	
	성별	2.111***	0.891	2.370	
	교육수준	0.029	0.034	0.863	
	전문직종사여부	-11.933*	1.656	-7.205	

註: \* p <0.001, \*\* p <0.01, \*\*\* p <0.05

## 附錄 II. 老人의 消費支出 特性

〈附表 13〉 年齡階層別 消費支出 變化

(단위: 원)

구분	연령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소비지출	530,163	593,588	572,241	609,628	
식료품	152,845	173,432	171,749	182,161	
주거	44,874	32,904	25,277	26,376	
광열수도	28,471	31,410	29,585	31,034	
가구집기	19,586	25,451	28,002	23,863	
피복신발	72,097	59,701	51,199	50,748	
보건의료	14,388	23,793	25,421	24,719	
교육	10,541	6,786	31,888	72,927	
교양오락	29,446	34,845	27,787	25,016	
교통통신	66,108	81,688	70,247	64,827	
기타소비	91,808	123,577	111,085	107,958	
구분	연령별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소비지출	636,162	666,032	660,396	634,431	
식료품	188,105	196,343	203,735	203,506	
주거	26,892	24,993	17,546	17,350	
광열수도	33,243	35,452	36,715	38,726	
가구집기	20,543	19,115	16,865	18,147	
피복신발	52,325	57,110	57,257	48,815	
보건의료	23,181	25,357	28,508	32,747	
교육	93,430	77,787	36,565	16,580	
교양오락	21,475	21,855	21,692	21,607	
교통통신	66,531	74,053	77,139	70,636	
기타소비	110,436	133,967	164,375	166,317	
구분	연령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소비지출	544,387	447,881	352,875	298,863	220,567
식료품	183,302	154,014	124,378	96,571	82,630
주거	20,453	17,126	21,165	19,049	15,942
광열수도	36,632	36,978	36,706	32,118	33,296
가구집기	16,641	12,665	11,667	11,009	8,291
피복신발	32,923	29,994	14,595	14,099	9,138
보건의료	33,601	34,057	31,286	30,422	25,140
교육	11,173	7,428	7,625	8,251	2,309
교양오락	16,609	13,603	10,506	11,845	6,627
교통통신	54,184	40,071	22,434	14,904	14,917
기타소비	138,870	101,943	72,514	60,595	22,277

〈附表 14〉 65歲 以上 老人의 所得分位別 消費支出 變化

(단위: 원)

구분	소득분위				
	1	2	3	4	5
소비지출	122,336	173,788	214,319	240,357	302,083
식료품	48,135	62,064	79,171	82,989	108,709
주거	5,823	15,569	16,665	12,700	17,727
광열수도	17,712	33,943	34,746	35,208	34,157
가구집기	4,205	2,765	7,137	6,073	6,651
피복신발	3,273	4,782	6,323	11,030	12,939
보건의료	12,560	16,633	17,924	27,850	27,500
교육	1,321	2,515	3,681	2,482	15,690
교양오락	3,322	2,728	5,912	5,883	9,735
교통통신	9,337	8,588	14,404	16,650	21,193
기타소비	16,648	24,200	28,357	39,492	47,782

구분	소득분위				
	6	7	8	9	10
소비지출	332,099	409,221	472,418	576,815	790,992
식료품	116,215	147,247	157,329	207,065	251,294
주거	16,244	20,203	21,103	23,091	32,668
광열수도	37,151	37,421	36,136	42,913	44,738
가구집기	11,686	11,054	15,944	24,691	23,389
피복신발	15,392	19,952	28,332	29,538	66,109
보건의료	30,741	37,338	37,382	58,186	45,769
교육	9,674	12,671	9,405	5,720	8,069
교양오락	9,009	13,116	19,950	14,986	28,367
교통통신	21,333	27,099	34,503	38,747	80,386
기타소비	64,654	83,120	112,335	131,877	210,202